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정형곤
이아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연구, 경제안보전략,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정형곤 · 이아라

연구자료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인 쇄 2022년 7월 22일
발 행 2022년 7월 29일
발행인 김흥중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02-6948-9650)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2484-8 94320
978-89-322-2064-2(세트)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
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
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언하고 있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5
2. 선행연구	21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3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3
2. 조세감면제도	25
3. 현금지원제도	27
가.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제도	27
나. 혁신기술기금	28
다. 사이버포트 주관 인센티브	38
라. 스마트교통기금(Smart Traffic Fund)	41
4. 입지지원제도	41
가. 1단계: 아이디어이션 프로그램(Ideation)	42
나. 2단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Incubation programme)	42
다. 3단계: 선도기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LEAP)	43
5. 기타 지원제도	43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45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45
2. 조세감면제도	46
가. 일반적 법인세 인센티브	47

나. 선도산업(PC) 및 개발확장(DEI) 인센티브	47
다. 지식재산개발 인센티브(IDI)	48
라. 재무·재정 관리본부(FTC) 인센티브	49
마. 금융 부문 세금 인센티브 제도 (Financial Sector Tax Incentive Scheme)	49
바. 항공기 임대제도(ALS)	50
사. 해운업 인센티브(MSI)	50
아. Global Trader Programme(GTP)	52
자. Section 13H Tax Incentive(S13H) 및 Fund Management Incentive(FMI)	52
3. 현금지원제도	53
가. Resource Efficiency Grant for Energy(REG(E))	53
나. Energy Efficiency Fund(E2F)	54
다.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LIA)	54
4. 스타트업 제도	55
가. Startup SG Talent	55
나. Startup SG Founder	59
다. Startup SG Tech	59
라. Startup SG Accelerator	60
마. Startup SG Equity	60
바. Startup SG Infrastructure	61
사. Startup SG Loan	62
아. Startup SG Investor	62

5. 기타 지원제도	63
가.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	63
나. Tech.Pass	64
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수상황기금(SSFS)	65
라. 사내기업 론치패드(Corporate Venture Launchpad)	65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66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66
2. 조세감면제도	68
3. 현금지원제도	69
가. 산업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 주관 프로그램(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s)	69
나.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 프로그램	74
4. 입지지원제도	75
가. 자유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s)	75
나.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76
다. 기타 지원제도	76
5. 외국인투자 규제	78
가. 외국인투자규제법	79
나. 심사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81
다.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절차	83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87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87
2. 조세감면제도	89
가. 법인세 감면	89
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	90
다. 지방거점강화세제	91
라. 연구개발세제	93
마. 인재 확보 등 촉진세제	95
바. 중소기업 소득확대촉진세제	95
사. DX 투자촉진세제	96
아.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	97
3. 현금지원제도	98
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 보조금	98
나. 그린이노베이션기금	100
다. SBIR 제도	102
4. 입지지원제도	109
가. 구조개혁특구	109
나. 종합특구	110
다. 국가전략특구	113
라. 부흥특구	116
마.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도시	118
바.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 서포트 프로그램	119
사. 기타 지원제도	120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132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42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142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142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156
4. 입지지원제도	157
가.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157
나.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	159
다. 자유무역항(free port)	160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162
가.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162
나.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범위: 「NSI」법의 적용대상	163
다. 신고 및 허가 절차	165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67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167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173
가. 우리의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현황 비교	173
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필요	176
다.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범위 확대	178

라. 사전신고 및 안보심사 기준	179
마. 신고·허가·관리 과정 개선	181
참고문헌	183
Executive Summary	205



표 차례

표 2-1.	홍콩의 사업소득세	25
표 2-2.	홍콩 지식재산 수익의 사업소득세율	26
표 2-3.	연구인재허브(RTH) 프로그램 지원금	35
표 2-4.	홍콩의 중소기업 대출보장제도	44
표 3-1.	지식재산개발 인센티브(IDI)의 경제기여도 기준	48
표 3-2.	싱가포르 해운업 인센티브(MSI) 선정기준	51
표 3-3.	싱가포르 기업 파이낸싱 제도(EFS)	62
표 4-1.	ITC 건설 시작 연도별 공제율	68
표 4-2.	FIRRMA의 주요 내용	83
표 4-3.	CFIUS 국가안보 평가 11개 기준	86
표 5-1.	일본의 법인세	89
표 5-2.	일본 연구개발세제 법인세 공제 혜택(일반형, 중소기업기반강화형)	94
표 5-3.	일본 연구개발세제 법인세 공제 혜택(오픈 이노베이션형)	94
표 5-4.	일본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규모	99
표 5-5.	일본 SBIR 제도의 지정 보조금 대상 연구의 단계별 기준	103
표 5-6.	일본 SBIR 제도의 특정 신기술 보조금 목록	104
표 5-7.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패키지 예시	119
표 5-8.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공장입지법의 특례	123
표 5-9.	일본의 아시아거점화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준	125
표 5-10.	일본의 외환법상 사전신고대상 업종	126
표 5-11.	일본의 외환법상 상장기업 지분 취득 사전신고면제 제도	133
표 5-12.	일본의 대내 외국인투자 사전신고대상 업종: 코어업종	134
표 5-13.	일본기업의 중국 DJI 드론 배제 주요 내용	137

표 6-1.	영국의 법인세율(링펜스 법인세대상 제외)	143
표 6-2.	영국 벤처캐피탈 제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	145
표 6-3.	영국 벤처캐피탈 제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146
표 6-4.	「NSI」법 도입에 따른 국가안보적 측면의 투자심사제도 변경사항	166
표 7-1.	미·일·영·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비교	174



그림 차례

그림 1-1.	2000~21년 전 세계 및 지역별 평균 법인세 인하 추세	16
그림 1-2.	2009~20년 세계 무역정책 경향	17
그림 5-1.	일본의 종합특구(국제전략, 지역활성화)	111
그림 5-2.	일본의 국제전략특구 및 특구별 주요 사업	113
그림 5-3.	일본의 사전신고 추이	135
그림 6-1.	영국의 창조 클러스터 현황	160

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FDI(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선진국들의 보호주의에 기반을 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통상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글로벌 FDI는 전년대비 35% 감소하여 1조 달러로 하락하였다. 이는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이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20% 낮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FDI는 글로벌 GDP나 무역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득 수준별 FDI 유입 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액이 전년대비 58% 감소했고, 개도국은 8%, 체제전환국은 5.8% 감소하여 선진국으로의 FDI 유입이 훨씬 더 크게 감소하였다.¹⁾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격히 감소했던 글로벌 투자는 2021년 이후 코로나19 대응력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2020년 최저점을 기록한 글로벌 FDI는 점진적인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로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10~15%(1조 1,000억~1조 2,000억 US달러), 2022년에는 약 15~20%(1조 2,000억~1조 5,000억 US달러) 성장이 예상된다.²⁾ 2021년부터 백신 수급력과 재정지원 능력을 보유한 북미, 유럽, 아시아 주도로 글로벌 FDI가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백신 공급, 글로벌 세금 개혁, 무역 전쟁의 향방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발도상국의 그린필드 투자

1) UNCTAD, FDI/MNE database(검색일: 2022. 1. 4).

2) UNCTAD(2021). 2022년 4월 6일 현재 2021년도에 대한 글로벌 FDI에 대한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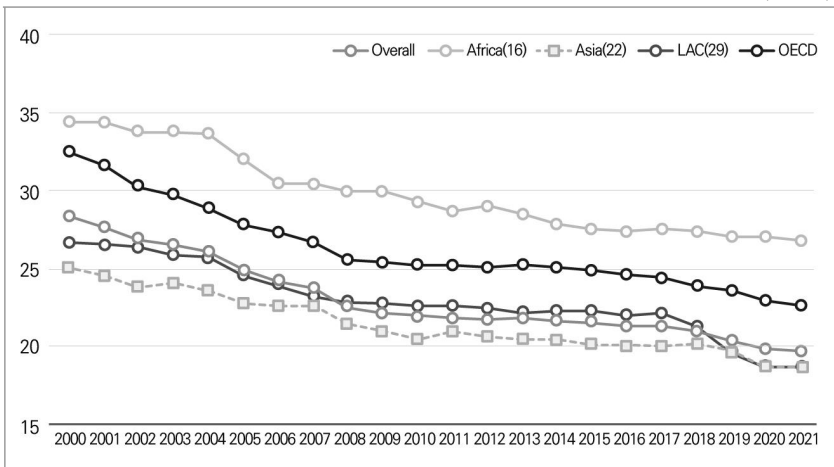
가 대폭 감소하면서 글로벌 그린필드 투자금은 총 33% 감소하고 있다.

높은 코로나19 사망률, 낮은 코로나19 백신접종률 등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미흡한 개발도상국에서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연기되면서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감소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의 투자 총액이 아프리카는 약 63%, 중남미는 약 50%, 체제전환 국가는 약 58% 감소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FDI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법인세 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세계 평균 법인세는 28.3%이었으나 2021년에는 20%까지 하락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0년 32.3%에서 2021년에는 22.9%까지 하락했다. 글로벌 FDI를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는 미국은 15~39%의 법인세를 2018년 회계연도부터 단일세율 21%로 적용하고 있다. 홍콩 역시 법인세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인데, 2018년부터는 17% 단일세율이었던 법인세를 2단계 과세(200만 홍콩달러 기준 8.25%, 16.5%)로 변경하였다.

그림 1-1. 2000~21년 전 세계 및 지역별 평균 법인세 인하 추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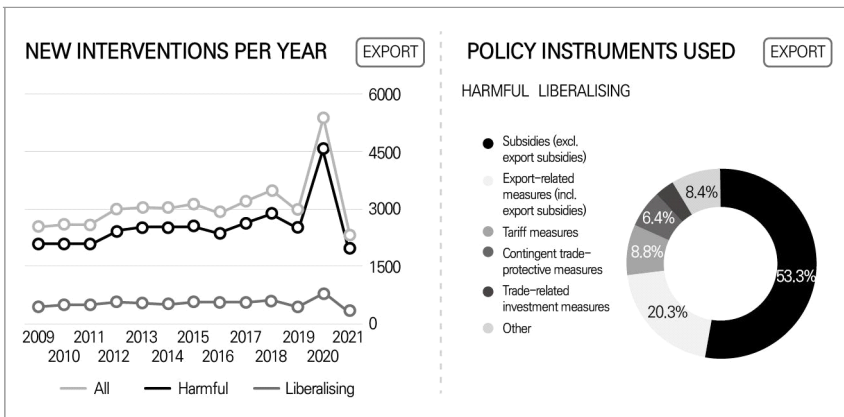


자료: OECD(2021), "Corporate Tax Statistics," p. 13, Figure 6.

투자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추세와 함께 지나친 법인세 인하를 경계하는 이른바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정하고자 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2021년 7월 1일, OECD 회의에서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130개국이 2023년부터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적용에 합의하였다.³⁾ 적용대상은 그룹 총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합의되긴 하였으나 우리로서는 국내 최저법인세율이 이보다 더 높으니 그리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보호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정책 역시 증가세에 있다. 전 세계 신규 보호주의 정책 시행 건수는 약 2배 증가(2009년 1,859건→2020년 4,250건)했다. 2009~20년 보조금 정책이 보호주의 정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51.7%, 수출보조금 제외)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신규 자유화 정책은 신규 보호주의 정책의 약 1/5 수준(776건)에 불과하다.

그림 1-2. 2009~20년 세계 무역정책 경향



자료: Global Trade Alert(검색일: 2021. 11. 4).

3) OECD(2021),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zation of the Economy," pp. 4-5.

최근 들어 선진국들의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발한 리쇼어링 정책은 FDI의 국내 유치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5일 차에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조달에 미국산을 우선하는 'Executive Order 14005'를 발표하여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를 통한 미국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국내 인프라 건설의 연방 지원을 법제화한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H.R. 3684)'가 제117회 의회에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였다.

프랑스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미래기술 투자를 위해 2020년 340억(약 45조 원) 규모 규모의 지원책인 '프랑스 경제 복구 계획(France Relance recovery plan)'을 수립하고 해당 기업에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 중이다.

대만은 첨단기술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해외자금회귀 특별법(外資金匯回專法)」을 시행하여 회귀자금에 대해서 할인세율과 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8월 15일~2020년 8월 14일 동안 회귀한 자금 총액은 NTD 1,390억(약 5조 9,000억 원)이며, 이 중 정보기술 산업의 비율(30.8%)이 가장 높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산업 정책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국내 투자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의 핵심 소재인 반도체의 공급 안정화와 GVC 편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USICA)」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520억 US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상무부 중심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 역시 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GVC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대만 TSMC와 일본기업의 공동 R&D에 5년간 190억 엔(2,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함께 기술패권 확보 및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투자 제한조치 역시 확대하고 있다. 2020년 52개국에 도입된 투자규제는 2019년 대비 43% 증가하여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부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다.⁴⁾

미국은 안보상 이유로 M&A를 포함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2007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2007년에는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을 통해 대통령이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인의 미국기업 매수·합병·인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신설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였다. 2018년에는 「외국인투자위협심사현대화법(FIRRMA)」을 시행하여 CFIUS의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2018년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계 통신회사인 화웨이와 ZTE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그 밖의 중국 및 러시아계 기업과의 통신 장비 및 서비스 조달·구매·연장·계약 갱신을 안보상의 이유로 금지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대중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기술이전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법(外商投資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중국기업 M&A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중국은 2020년 개정된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에 첨단 및 보안 기술 23가지를 추가하여 중국 기술의 해외이전을 제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글로벌 FDI 유치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되었다. 선진국 사례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이 보다 더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근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다. 여전히 외국인투자가 기술이전, 기술 개발, 국내 설비 투자, 고용촉진 등 효과가 크고 국내기업들의 GVC 편입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 세계 각국이 안보, 기술·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에

4) UNCTAD(2021).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선진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내산업 보호의 측면에서 현재 우리의 외국인투자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바 향후 5년간 국가 정책 방향 재설정에 있어서 변화하는 FDI 환경과 투자촉진 정책의 기초에 맞는 ‘외국인투자 유치지원 제도 개편(안)’을 적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도 본 보고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외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보다 더 유리한 환경과 혜택을 보장받으며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하에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현 정책 담당자들과 해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투정책(또는 투자환경 개선)의 방향과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내 투자환경 또는 조건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와 자국 투자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엄밀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에서 의미하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란 국내 투자유치 정책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굳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최근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도입되고 있는 투자제한 정책을 분석하여 경제안보·산업 보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외투정책의 방향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선진국 투자 촉진 및 규제 정책을 비롯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차원에서 도모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활용정책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의 외투유치 정책 수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투자 촉진과 제한 정책이 혼재되어 실시되는 현 상황 속에서 국가안보에 목적을 둔 선진국의 최신 투자제한 정책 사례를 검토하여 경제안보 차원

에서 한국의 외투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리스크가 낮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21년 글로벌 FDI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마련과 함께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스크린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2. 선행연구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수 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비슷한 선행연구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고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가장 최근의 연구로 Evenett(202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확대, 지정학적 경쟁관계 등이 2019년도 이후 30개국의 FDI 심사절차에 미친 영향과 동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Mistura and Roulet(2019)는 중력모형을 활용해 1997~2016년 60개국의 FDI 법정(法定) 규제를 분석하여 FDI 규제 자유화와 FDI 사이의 탄력성을 추산하였다. 이 연구는 선진국 사례 중심으로 경제 분야별 효과를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오탈현, 윤지현, 박나연(2020)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강화된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정책을 분석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기업의 자산 가치 하락이 전략 자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높여 기존의 투자규제 기준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KOTRA(2017)도 국내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참고할 수 있도록 25개국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간단히 정리하여 발표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미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최근 주요 선진국의 투자유치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특히 최

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 동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분석한 보고서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주요 선진국의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 및 규제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의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투자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투자유치 및 제한 정책을 투자유치, 산업 보호, GVC 편입 차원에서 분석하여 기존 선행연구들과 차별화하고자 한다. 또한 2021년 UNCTAD에서 선진국(그룹B)으로 격상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여 선진국 외투정책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일본,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동향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유지와 동시에 경제안보, GVC와 관련된 분야에는 외국인투자 제한정책을 도입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최신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내산업 보호와 GVC 재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제한 정책을 분석하여, 변화된 글로벌 투자환경에서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파악하고 우리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특별히 2022년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홍콩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표적 지역 중의 하나이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지역이며 다양한 국제기구의 경영환경 평가에 있어서도 전 세계 톱 3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가와 함께 홍콩은 지난 세기 동안 글로벌 비즈니스와 금융허브로 성장해왔다.⁵⁾ 최근 들어 중국 본토의 직접적 간섭이 증가하면서 과거와 같이 금융허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제허브로서의 지위가 다소 떨어지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여전히 내외국기업 무차별 정책과 전 세계 3위 수준의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⁶⁾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허브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첫째 정책 요인이다. 법률, 규칙 등 정부의 정책이 혁신과 기술정책, 산업진흥정책, 자유무역과 자유로운 자본 유입 환경, 비즈니스에 대한 자유방임과 무간섭 원칙, 잘 정립된 법률과 낮은 세율 및 투명한 세제 시스템 등이 정책 요인에 포함된다.

5) Jeong(2015), p. 210.

6) World Bank(2020), "Doing Business 2020: Comparing Business Regulation in 190 Economies,"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외국기업은 홍콩 회사조례 제662장 제776항에 따라 비홍콩 기업(non-Hong Kong Company)으로 등록해야 함.

둘째 내적 요인이다. 잘 갖추어진 비즈니스 및 금융 인프라, 지속적인 경제성장, 정치 사회적 안정성, 고급 전문인력과 숙련 노동자, 훌륭한 물리적 인프라를 비롯해 자유로운 언론환경 등이 그동안의 홍콩의 성장에 기여해온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언론과 자유화 운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홍콩은 과거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관행이 지켜지고 있다.

셋째 외적 요인은 홍콩의 지리적 요인이다. 중국의 거대 시장이 배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을 비롯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인접해 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요인은 홍콩이 글로벌 비즈니스 및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들로 평가되고 있다. 홍콩은 또한 중국의 쌍순환 전략 중 국제순환의 구심점으로서 본토로 외자를 유치하고, 일대일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⁷⁾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63%가 홍콩을 경유한다.⁸⁾ 이뿐만 아니라 홍콩은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다. 홍콩에는 전 세계 400여 개의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고 80여 개의 국제 선사들이 매주 500여 곳의 항구로 선박을 보내고 있다. 이렇듯 홍콩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가장 훌륭한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홍콩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인책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한다.

7) 홍콩 재무장관(2021), "The 2021-22 Budget," pp. 59-61, pp. 69-7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8) 홍콩 금융관리국, "Dominant Gateway to Chin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 조세감면제도

먼저 홍콩의 조세감면제도의 특징은 간명하고 내외국기업의 차별 없는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체결국 기업에는 항공업과 해운업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재산권 수익에 대해서도 홍콩 거주민은 세금을 공제하여 외국인도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홍콩의 조세제도는 매우 단순하다.⁹⁾ 홍콩은 사업소득세, 급여소득세, 재산세로만 이루어진 조세제도를 운영하며, 판매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상속세가 없다.

홍콩은 2단계 사업소득 세제(two-tiered rates of profits tax)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내국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구간을 2단계로 나누어 법인과 비법인의 200만 홍콩달러 이하 사업소득의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었다.

표 2-1. 홍콩의 사업소득세

(단위: %)

사업소득	법인	비법인
HKD 200만 이하	8.25	7.5
HKD 200만 초과	16.5	15

자료: 홍콩 국세청(2018),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 3) Ordinance 2018"의 Section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를 토대로 저자 작성.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수출입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네 가지 품목(주류, 담배, 탄화수소계 오일, 메틸알코올)에 물품세, 자동차에 등록세를 부과한다.¹⁰⁾

홍콩은 항공업 및 해운업의 사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홍콩에서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운영하는 이중과세방지협정(DTA) 체결국의 국적자는 관련 소득

9) InvestHK, "Tax Basic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10) 홍콩 관세국, "Dutiable Commodities"; "Motor Vehicles,"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 7).

을 면세받는다. 항공업과 해운업의 글로벌 사업의 특성상 이중과세될 가능성이 높아 홍콩은 항공업, 해운업과 관련하여 몇몇 국가와 DTA를 체결하여 항공업과 해운업을 운영하는 외국인에게 사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다.¹¹⁾ 한국과는 항공 서비스, 해운업의 면세협정과 포괄적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Double Taxation Agreement)이 발효 중이다.

홍콩은 거주자에 대한 지식재산 수익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지식재산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수익의 30%에만 과세하여 외국인이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제대상은¹²⁾ 전시, 영화, TV용 필름 또는 테이프, 음반, 관련 광고물,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공연권, 식물품종권, 노하우(secret process or formula), 기타 유사한 권리 등이다. 상기 대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홍콩 비거주자는 100%, 홍콩 거주자는 30%만 과세대상으로 책정하여 실질적으로 홍콩 거주민에게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¹³⁾

표 2-2. 홍콩 지식재산 수익의 사업소득세율

(단위: %)

과세 사업소득	홍콩 사업 영위 여부	소득 적용세율	
		법인	비법인
HKD 200만 이하	홍콩 비거주민(100%)	8.25	7.5
	홍콩 거주민(30%)	2.475	2.25
HKD 200만 초과	홍콩 비거주민(100%)	16.5	15
	홍콩 거주민(30%)	4.95	4.5

자료: 홍콩 관세국, “해석실무지침(DIPN) No.22(2020년 8월 발행)”¹⁴⁾을 토대로 저자 작성.

11) 홍콩 관세국, “Limited Double Taxation Agre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12) Section 15(1)(a) and (b) of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amended 6 November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13) *Ibid.*

14) 홍콩 관세국(2022),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22 (Revised),” paras 27-2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홍콩은 또한 2021/22 회계연도에 한시적 기업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¹⁵⁾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과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 홍콩달러 규모의 Anti-epidemic Fund를 조성하고, 그중 95억 홍콩달러를 기업지원책으로 배정했다. 주요 기업지원책으로 △사업등록비 전면 면제 △사업소득세 제한적 면제 △해외자산세 제한적 면제가 존재한다. 홍콩은 또한 1만 홍콩달러까지 사업소득세를 전면 면제한다. 아울러 해외자산세는 분기당 최대 5,000홍콩달러(1/4, 2/4분기) 또는 2,000홍콩달러(3/4, 4/4분기)까지 면제한다.

3. 현금지원제도

홍콩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하나가 현금지원제도이다. 현금지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 제도(GSF Grant Scheme)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사이버포트(Cyberport) 주관 인센티브 △스마트교통기금(Smart Traffic Fund)이다.

가.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제도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 제도(GSF Grant Scheme)¹⁶⁾는 다음과 같다.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홍콩에서 발행된 녹색채권(green and sustainable bond)의 발행인과 대출자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3년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채권발행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발행인¹⁷⁾에 대한

15) 홍콩 재무장관, "The 2021-22 Budget," pp. 25-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6) 홍콩 금융관리국, "Guideline on the 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Grant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7) 채권의 가격결정일을 기준으로 5년 동안 그린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는 채권발행자만 해당함.

HKMA의 신용평가 여부에 따라 25만 홍콩달러와 250만 홍콩달러로 나뉜다. 또한 인증된 외부 검토 비용 일체를 채권 또는 대출당 최대 80만 홍콩달러까지 채권발행인¹⁸⁾과 대출자에게 지급한다.

나. 혁신기술기금

혁신기술기금(ITF: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¹⁹⁾은 홍콩의 산업혁신과 기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현금지원제도이다. 이 제도는 총 1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지정 연구기관 외에 홍콩에 설립·등록한 회사²⁰⁾들에도 지원을 하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2020년에는 총 30억 7,500만 홍콩달러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²¹⁾ 2021년과 2022년에는 매년 47억 5,000만 홍콩달러씩 투입할 예정이다.²²⁾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 정부는 홍콩의 산업 혁신 및 기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R&D 지원 △기술 도입 활성 △기술인재 육성 △기술 스타트업 지원 △IT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총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R&D 지원

먼저 R&D에 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 7개를 소개한다.

18) 이전 그린채권 발행 이력과 무관하게 모든 채권발행인을 대상으로 함.

19)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20)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되고,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의거해 등록을 마친 회사.

21)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Annual Statistics of Approved Projects(20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22) 홍콩 재무장관(2021), "The 2021-22 Budget," p. 10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가) 혁신기술 지원 프로그램(ITSP)²³⁾

이 프로그램은 연구결과를 지역 산업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정부지정 연구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 프로젝트와 탐구적인 초기 연구를 하는 시드 프로젝트(seed project)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5개의 정부지정 연구소, 정부지정 지역 공공연구기관 등이 해당되고 플랫폼 프로젝트는 총비용의 10%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후원받는 프로젝트에 한정하고 있다. 인건비, 장비 구입 및 유지비, 기타 직접비용에 지원되고, 시드 프로젝트는 5개 정부지정 연구소에 최대 280만 홍콩달러, 그 외 기관에는 최대 140만 홍콩달러가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플랫폼 프로젝트와 시드 프로젝트가 서로 다르다. 먼저 플랫폼 프로젝트의 경우 혁신기술 요소(20%), 기술 능력(20%), 재정 능력(16%), 현실성 및 상업성(16%), 정부·지역사회 기여도(12%), 지식재산권 및 이윤 분배(8%), 관리 능력(8%)을 평가한다. 시드 프로젝트는 혁신기술 요소(36%), 기술 능력(32%), 재정 능력(8%), 현실성 및 상업성(4%), 정책 관련성·지역사회 기여도(8%), 지식재산권 및 이윤 분배(4%), 관리 능력(8%)이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이다.

나) 본토·홍콩 공동기금 정책(MHKJFS)

이 프로그램은 홍콩과 중국 본토에 대학, 연구소, 기술기업의 공동 연구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여 본토와 홍콩 기관 사이의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주요 지원자는 5개 정부지정 R&D 센터 또는 지방 공공연구소이고, 공동 지원자는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 산업 지원기관, 무역·산업협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23)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2021),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Innovation and Technology Support Programme Guide to Filling in the Application Forms,"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2021), "Funding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Successful Applicants," para. 3.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플랫폼 프로젝트는 총비용의 10% 이상, 합동 프로젝트는 50% 이상 기업후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한정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홍콩과 중국 본토에서 수행되는 연구의 인건비, 신규 장비 구입비, 기타 직접비 등이다.

다) 광둥·홍콩 기술협력기금 정책(TCFS)

이 프로그램은 홍콩과 광둥에 위치한 대학, 연구소, 기술기업의 플랫폼 프로젝트와 협동 프로젝트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하여 기관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주요 지원자는 5개 정부지정 R&D 센터 또는 지방 공공연구소이고, 공동 지원자는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 산업지원기관, 무역·산업협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다. 플랫폼 프로젝트는 총비용의 10% 이상, 합동 프로젝트는 50% 이상 기업후원을 받는 프로젝트 한정한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신규 장비 구입비, 기타 직접비가 해당된다. 선정기준은 혁신기술 요소(20%), 기술 능력(20%), 재정 능력(16%), 현실성 및 상업성(16%), 정책 관련성·지역사회 기여도(12%), 지식재산권 및 이윤 분배(8%), 관리 능력(8%)이다.

라) 파트너십 연구 프로그램(PRP)

이 프로그램은 정부지정기관이 민간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합동 프로젝트를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으로 주요 지원자의 경우 5개 정부지정 R&D 센터 또는 지방 공공연구소이고, 공동 지원자는 홍콩 회사조례 제 622장에 의거해 설립된 회사, 산업지원기관, 무역·산업협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해당된다. 또한 프로젝트 총비용의 50% 이상 기업 후원을 받는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대상은 인건비, 신규 장비 구입비, 기타 직접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마) 사업 지원 정책(ESS)

이 프로그램은 홍콩 기업의 내부 R&D를 지원하여 민간의 R&D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회사,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의거한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회사,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회사, 정부지원단체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이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신규 장비 구입비, 기타 직접비의 50%까지 최대 1,000만 홍콩달러 한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선정기준은 혁신기술 요소(25%), 현실성 및 상업성(30%), 기술·관리 능력(20%), 정책 관련성·지역사회 기여도(10%), 재정 능력(15%)이다.

바) R&D 현금 리베이트 정책(Cash Rebate Scheme)

이 프로그램은 민간과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파트너십을 독려할 목적으로 민간기업이 ITF의 프로젝트²⁴⁾에 자금을 후원하면 해당 후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어 기업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²⁵⁾

지원대상은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 또는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따라 홍콩에 등록된 회사,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회사, 정부지원단체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ITF 프로젝트와 파트너십 프로젝트²⁶⁾ 두 가지 종류의 R&D 프로젝트의 기업 부담금의 40%에 해당하는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받는다.

사) 미드스트림 연구 대학 지원 프로그램(MRP)

이 프로그램은 대학기금위원회(UGC)의 후원을 받는 대학과 세계 우수 연구소의 기술 관련 36개월 이내의 미드스트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24) ITF의 프로젝트: ITF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

25) ITF, "Research and Development Cash Rebate Scheme: Application Guide," pp. 3-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6) 파트너십 프로젝트: 전액 기업 부담으로 정부지정 지역 공공연구소와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

지원대상으로 주요 지원자는 UGC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와 공동 지원자는 제한이 없고, 주요 지원자 소속 대학의 타 연구소도 가능하다.²⁷⁾ 단독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500만 홍콩달러 지원을 받고, 합동 프로젝트의 경우 최대 1,000만 홍콩달러 지원을 받는다.

2) 기술 도입 활성화

홍콩 정부는 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3개의 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가) 공공 부문 시범 사업(PSTS)

이 프로그램은 ITF, 사이버포트의 지원을 받은 연구의 현실화 및 상업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에 따라 △PSTS-ITF △PSTS-SPC △PSTS-TC가 존재한다. 프로그램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PSTS-ITF: ITF 프로젝트를 완수한 5개 정부지정 연구소, 정부지정 지역 공공연구기관 또는 ITF 프로젝트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기업
- PSTS-SPC: HKSTPC 또는 사이버포트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졸업자
- PSTS-TC: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는 회사

- ① 홍콩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회사 중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되거나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따라 등록된 회사
- ②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는 회사
- ③ 정부지원단체의 자회사가 아닌 회사

지원 내용 역시 프로그램마다 다음과 같이 상이하다.

27) ITC,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Midstream Research Programme for Universities Guide to Filling in the Application Form,"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 PSTS-ITF: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50%(기업) 또는 100%(연구소) 24개월
- PSTS-SPC: 최대 12개월의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 홍콩달러 지원
- PSTS-TC: 최대 12개월의 프로젝트당 최대 100만 홍콩달러 지원

나) 기술 바우처 프로그램(Technology Voucher Programme)²⁸⁾

이 프로그램은 생산성 향상 또는 사업 프로세스 개선 기술을 사용하는 홍콩 기업 또는 기관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기관당 최대 6개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비용의 75%가 총 60만 홍콩달러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한한다.

- ①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 또는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따라 홍콩에 등록된 회사,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
- ② 정부지원을 받지 않거나 정부지원단체의 자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
- ③ 홍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

이 프로젝트의 선정기준은 프로그램 관련성, 예산 타당성, 실행 계획 구체성, 과거 프로젝트 부정적 기록(adverse record of consultants and/or service provider(s)) 등이 고려된다.

다) 산업부흥기금 제도(RFS)²⁹⁾

이 프로그램은 홍콩에 스마트 생산라인을 구축하려고 하는 제조회사를 지원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비용의 1/3과 1,500만 US달러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회사만 지원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신규 생산라인 구축 및 스마트 기술 도입(35%), 예산 타당성(20%), 실행가능성(15%), 기술·재정·관리 능력(15%), 경제성(15%)이다.

28) 홍콩 혁신기술 위원회, "Technology Voucher Programme (TVP): Guidance Notes for Applic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9) ITF, "Guide to Application for the Re-industrialisation Funding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기금(FBL)

이 프로그램은 일상에서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거나 특정 그룹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혁신기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90% 또는 500만 홍콩달러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이다.

- 홍콩 사회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비정부기구
- 홍콩 뇌물방지조례 제201장에 의거한 공공기관으로 정부부처, 집행위원회, 법제위원회는 제외
- 전문기관
- 무역협회
- 홍콩 세무조례(Inland Revenue Ordinance) 제112장 제88조에 의해 세금이 면제되는 사회서비스기관

동 사업의 선정기준은 공공 또는 특정 그룹 혜택(35%), 혁신기술 요소(20%), 실현·지속 가능성(15%), 예산 타당성(15%), 기술·관리 능력(15%)이다.

3) 기술인재 육성

홍콩 정부는 기술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인재허브(RTH)

이 프로그램은 홍콩 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거나 홍콩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의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홍콩 인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대상에 따라 △RTH-ITF △RTH-SPC △RTH-TC가 존재한다. 프로젝트당 4명까지 최대 36개월간 수당과 퇴직금을 지원한다.

표 2-3. 연구인재허브(RTH)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인재의 최종 학력	최대 지원 수당(월)	퇴직금 지원
학사	HKD 18,000	HKD 900
석사	HKD 21,000	HKD 1,050
박사	HKD 32,000	HKD 1,500

자료: ITF, "Research Talent Hub for Incubatees and Innovation and Technology Tenants of the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 Corporation and the Hong Kong Cyberport Management Company Limited: Application Guide,"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저자 번역.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RTH-ITF: ITF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기업과 기관
- RTH-SPC: HKSTPC 또는 사이버포트 프로그램 수혜자 또는 임차인
- RTH-TC: 다음 네 가지를 만족하는 회사
 - ① 홍콩에서 연구를 진행 또는 계획
 - ② 지원 시점에 홍콩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
 - ③ 홍콩 회사조례 제622장에 따라 홍콩에 설립 또는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따라 등록
 - ④ 어떤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거나 정부지원단체의 자회사가 아닌 곳

나) 산업 부흥과 기술 트레이닝 프로그램(RTTP)³⁰⁾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과 관련된 홍콩 기업의 직원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에 개방된 공공코스와 특정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코스가 있다. 회계연도마다 훈련비용의 2/3를 기업당 50만 홍콩달러 한도로 지급하며, 훈련받을 수 있는 직원 수는 제한이 없다. 지원대상은 홍콩 회사조례 제310장에 따라 등록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기구에서 근무하는 홍콩 영주권자이다.

30) ITF, "Reindustrialisation and Technology Training Programme: Guidance Note for Compan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다) STEM 인턴십 제도(STEM Internship Scheme)

이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근무 지역, 국적에 상관없이 혁신기술 관련 근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턴십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턴 1명당 월 1만 9,500홍콩달러 지급, 학기당 최대 3개월 근무 가능하나 대학의 자율에 따라 더 짧아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STEM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³¹⁾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국적 무관이나 외국인의 경우 홍콩에서 인턴십을 하는 경우만 지원한다.

4) 기술 스타트업 지원

홍콩 정부는 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2개의 지원사업이 있다.

가) 대학을 위한 기술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TSSSU)

이 프로그램은 6개 지정 대학³²⁾ 산하 기술 스타트업의 연구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기업당 연 150만 홍콩달러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정 대학의 학부생, 대학원생, 졸업생, 교수로 구성된 스타트업이다.

나) 혁신기술 벤처기금(ITVF)

이 프로그램은 중국 본토와 아시아 자본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민간 벤처캐피털의 홍콩 스타트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TVF가 벤처캐피털 펀드의 공동

31) 2021년에는 7개의 대학이 참가. 참여 대학: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and The Education University of Hong Kong.

32) 지정 대학: The University of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and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투자자로서 투자금의 약 1/3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³³⁾ 민간 투자를 포함하여 총투자금액 4억 홍콩달러, 기업당 최대 5,000만 홍콩달러, 펀드당 최대 투자금액의 최대 40% 또는 3,000만 홍콩달러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홍콩 IT 스타트업이다.

- 홍콩 회사조례에 따라 홍콩에 설립된 7년 미만의 회사
- 본사와 자회사가 홍콩에서 IT 분야의 연구나 생산을 진행
- 본사와 자회사의 국내외 직원이 250명 미만

5) IT 문화 조성

홍콩 정부는 IT 문화 조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가) 일반 지원 프로그램(GSP)

이 프로그램은 홍콩의 산업과 혁신기술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인건비, 기타 직접비, 활동비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민간기업이 총비용의 10% 이상을 지원하는 홍콩 내 기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원기준은 지역사회 파급력(40%), 정부정책 기여도(10%), 제출자료의 수준(20%), 관리 능력(15%), 재정평가(15%)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특허 출원 보조금(PAG)

이 프로그램은 기술적 요소나 산업에 적용 가능한 발명에 대한 특허로 홍콩 기업이 나 홍콩 거주민이 국내외 특허를 처음 출원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허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비의 90% 또는 25만 홍콩달러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홍콩에 설립된 회사, 홍콩 영주권자, 7년 이상 홍콩에 거주 가능한 자이다.

33) Finance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 "Background of ITVF((FCR2016-17)67)," paras.7 and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다. 사이버포트 주관 인센티브³⁴⁾

홍콩은 아시아의 핀테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사이버포트(Cyberport)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사업 성숙도에 따라 재정지원 및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홍콩 ID 소유자나 홍콩 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외국인에게 홍콩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것을 권장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³⁵⁾ 사이버포트 크리에이티브 마이크로 펀드(CCMF)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의 프로젝트나 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네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전문가 프로그램(PP), 홍콩 청년기업가 프로그램(HKYEP)³⁶⁾

이 프로그램은 최소기능제품(MVP) 또는 시제품을 보유한 잠재력 높은 디지털 기술 프로젝트와 초기단계 스타트업에 총 10만 홍콩달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PP의 경우 18세 이상의 홍콩 ID 소유자 또는 홍콩 등록 기업이 해당되며, HKYEP의 경우 18~30세 홍콩 ID 소유자 또는 18~30세 기업가의 홍콩 등록 기업이 해당된다. 지원대상에 홍콩 ID 소유자라고 정의되어 있으나 팀 멤버의 경우 비거주자도 가능하다. 선정기준은 팀 운영 능력(30%), 시장성(30%), 창의력 및 혁신성(30%), 사회기여도(10%)이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자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PP와 HKYEP에 중복 지원하는 경우 사이버포트는 PP의 지원서만 검토한다.³⁷⁾

34) Cyberport, <https://www.cyberport.hk/en>(검색일: 2022. 1. 7).

35) Cyberport, Professional Programme (PP), Note(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36) Cyberport,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 ("CCMF") Professional Programme & Hong Kong Young Entrepreneur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 7).

37) *Ibid.*, para. 1.8.

2) 사이버포트 만안 청년기업가 프로그램(Cyberport GBA YEP),³⁸⁾ 사이버포트 대학 파트너십 프로그램(CUPP)³⁹⁾

이 프로그램은 웨이강아오(광둥성·홍콩·마카오) 지역 인재 또는 프로그램 파트너 대학의 인재가 추진하는 핀테크 프로젝트에 100만 홍콩달러(Cyberport GBA YEP) 또는 10만 홍콩달러(CUPP)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Cyberport GBA YEP의 경우 18~30세 홍콩 ID 소유자로 홍콩, 마카오, 광둥성 내 고등교육기관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해당된다. CUPP의 경우는 18~30세 홍콩 ID 소유자로 CUPP 파트너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지원대상이다. 선정 기준은 팀 운영 능력(30%), 시장성(30%), 창의력 및 혁신성(30%), 사회기여도(10%)가 고려된다.

3) 사이버포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CIP)

이 프로그램은 사업 기반이 있는 사업자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금은 최대 50만 홍콩달러를 세 항목으로 나눠 24개월간 순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① 초기 자금 지원 10만 홍콩달러
- ② 6개월마다 실시하는 진척 사항 검토 완료 시 최대 20만 홍콩달러
- ③ 성과 기반 2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0만 홍콩달러
 - 사이버포트 내의 사무실 및 시설 무료 대여
 - 사업가, 투자자들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지원대상은 12~18개월 내로 출시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업계획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중 홍콩에 등록된 7년 미만의 기업으로 지원자들이 최소 51%의 주식을 가지거나 절대적 지배권을 가진 기업이어야 한다. CCMF와

38) Cyberport, "Cyberport Greater Bay Area Young Entrepreneurship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39) Cyberport,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 ("CCMF") - Cyberport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CIP 선정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로 CCMF와 CIP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CIP 지원서만 검토한다.⁴⁰⁾

4) 사이버포트 액셀러레이터 서포트 프로그램(Cyberport Accelerator Support Programme)⁴¹⁾

동 사업은 CCMF 또는 CIP 수혜자 및 졸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여러 기업과 함께 약 70여 개의 하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비용(75%), 임대료(75%), 인턴 인건비(50%), 여행숙박비(75%), 홍보비(75%, 최대 5만 홍콩달러), 전문 서비스비(75%) 지원이 있다.

5) 시장 진출 지원 제도(MDSS)⁴²⁾

이 프로그램은 CCMF와 CIP 졸업자의 중국 본토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4개월 동안 20만 홍콩달러 한도 내에서 출장비, 전시/회의비, 현지 전시비, 초기 정착비,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비의 7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총 1,000만 US달러 이하의 지원금을 받은 CCMF와 CIP 졸업자이다.

6) 사이버포트 매크로기금(CMF)⁴³⁾

이 기금은 사이버포트가 다른 민간/정부 투자자와 함께 사이버포트 기업이에게 공동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총 40억 홍콩달러 규모의 기금이다.

피투자자 1명당 100만~2,000만 홍콩달러 사이의 누적 투자금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사이버포트 프로그램 수혜자 및 졸업자, 사이버포트 스마트 스페이스⁴⁴⁾ 기업, 사이버포트 사무실 임차인이다.

40) Cyberport,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 ("CCMF") Professional Programme & Hong Kong Young Entrepreneur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para.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1) Cyberport, "Cyberport Accelerator Support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2) Cyberport, "Guides and Notes for Overseas/Mainland Market Development Support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3) Cyberport, "Cyberport Macro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라. 스마트교통기금(Smart Traffic Fund)⁴⁵⁾

이 기금은 홍콩 행정장관이 현지 기관과 기업의 교통 편의, 도로상황 개선, 안전운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기금이다. 민간은 프로젝트 예상 비용의 최대 50%, 공공기관은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프로젝트당 한도는 연구 적용 프로젝트에 최대 2,000만 홍콩달러, 순수 연구 프로젝트는 최대 8,000만 홍콩달러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홍콩에 등록된 기관, 기업, 전문기관, 무역협회, 비정부기구, 공공기관이다.

4. 입지지원제도

입지지원제도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효한 인센티브 중 하나이다. 투자유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재원으로 입지를 조성하고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공장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시설 투자나 기타 분야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 홍콩 역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홍콩의 입지지원제도 역시 특성화 단지를 만들어 입주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홍콩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파크(HKSTP)에서 제공하는 3단계 프로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파크는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전기전자, 바이오메디컬 기술, 데이터 및 스마트 시티, 핀테크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메디컬 △전자공학 △녹색기술 △정보통신기술 △재료공학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⁴⁶⁾ 홍콩 정부는 입주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 공간을 3단계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다.

44) 사이버포트가 18~35세 청년이 창업한 디지털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폭풀람(Fokfulam 7개소), 취안완(Tsuen Wan 1개소)에 마련한 공유오피스.

45) 홍콩 교통국, "Smart Traffic Fund: Guide to Applic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6) HKSTP, <https://www.hkstp.org/>(검색일: 2022. 1. 7).

가. 1단계: 아이디어이션 프로그램(Ideation)⁴⁷⁾

이 프로그램은 1년간 10만 홍콩달러 지원, 공유오피스, 비즈니스 멘토 코칭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R&D 및 사업계획에 기반한 혁신 아이디어를 가진 자로 다음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 18세 이상 홍콩 ID 소유자
- 홍콩에 설립된 지 2년 미만의 유한회사
- 팀을 보유한 자(프로그램 승인 시 홍콩에 유한회사를 설립 의무 부과)

나. 2단계: 인큐베이션 프로그램(Incubation programme)⁴⁸⁾

2단계 프로그램은 기술 스타트업⁴⁹⁾과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을 위해 각각 △HKSTP 인큐베이션 △인큐바이오(Icu-Bio)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HKST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은 3년간 회계전문가, 기술장비, 라이선싱 및 합작투자 기회, 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전문가(멘토, 산업 전문가, 전략 파트너, 투자자)를 소개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한다. 기술 및 사업 개발비로 최대 129만 홍콩달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한회사 형태로 홍콩에 설립 및 등록된 5년 미만의 기술 스타트업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한다.

인큐바이오 프로그램은 4년간 기술장비 지원, 전문가(멘토, 전략 파트너, 투자자) 소개, 사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재정 보조금으로 최대 400만 홍콩달러를 지원하고, 임상실험 등 행정절차 보조로 최대 200만 홍콩달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한회사 형태로 홍콩에 설립 및 등록된 2년 미만의 바이오메디컬 스타트업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한 자로 HKSTP, 사이버포트, 홍콩 디자인센터의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47) HKSTP, "Ide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8) HKSTP, "Incub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49) 기술 스타트업은 전자공학, 정보통신, 재료공학,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의미함. HKSTP, "Incubation Programme Guide," para. 2.1(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다. 3단계: 선도기업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LEAP)⁵⁰⁾

이 프로그램은 성장단계에 오른 스타트업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기회, 투자 컨설팅, 전문가 가이드(리스크 관리, 지식재산 전략, 법률 이행, 사업 운영)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홍보, 전문 서비스, 준법경영 관련 경비를 최대 480만 홍콩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은 본사가 홍콩에 있는 고용인 100명 미만의 HKSTP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이수 기업 또는 HKSTP 임차인이며, 고용인 50% 이상이 정규직으로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면 가능하다.

5. 기타 지원제도

앞서 언급한 지원제도 외에도 홍콩은 중소기업 대출보장제도(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⁵¹⁾ 홍콩 정부는 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 지원을 위해 공기업인 HKMC를 설립하여 대출금의 50~70%까지 보증해주고, 기간을 한정하여 80~100%까지도 보증해준다. 지원대상은 보증률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0%의 보증률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다.

- ①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또는 비법인단체이며, 사업등록조례(홍콩법 제310장)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며
- ② 대출업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차용 가능한 기금을 운용하지 않으며
- ③ 당해 대출보장제도의 자금을 출자한 기관의 계열사가 아니며
- ④ 홍콩 증권거래소 또는 유사한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 단 2021년 6월 1일 이전의 80% 및 90% 보증제도는 상기 조건을 완화하여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포함한다.

50) HKSTP, "Leading Enterprises Acceleration Programme(LE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51) HKMC,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표 2-4. 홍콩의 중소기업 대출보장제도

보증률	50%	60%	70%	80%	90%	100%
적용기간	2011. 1. 1부터			2012. 3. 31 ~2022. 6. 30	2019. 12. 16 ~2022. 6. 30	2020. 4. 20 ~2021. 12. 31
최대 보증 금액	HKD 12,000,000			HKD 18,000,000	HKD 9,000,000	*①, ② 중 낮은 금액 (① 18개월 치의 종업원 임금과 임대료 합계, ② HKD 6,000,000)
최대 보증 기간	5년 *2018년 11월에 발표한 80% 보증상품의 최대 보증기간은 7년이며, 2022년 6월 30일까지 접수된 건까지 적용				5년	7년 *일시정지기간 (최장 18개월)을 포함
지원대상	1.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 합명회사 또는 비법인단체이며, 사업등록조례 (홍콩법 제310장)에 따라 등록된 회사이며 2. 대출업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차용 가능한 기금을 운용하지 않으며 3. 당해 대출보장제도의 자금을 출자한 기관의 계열사가 아니며 4. 홍콩 증권거래소 또는 유사한 증권거래소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기업. (단 2021년 6월 1일 이전의 80% 및 90% 보증제도는 상기 조건을 완화하여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도 포함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				없음	·2020년 6월 30일 시점에 3개월 이상 홍콩에서 사업을 운영한 사업자 ·비교기간의 분기별 한 달 평균 매출액 중 하나와 비교하여 피해기간의 중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사업자 (피해기간: 2020년 2월~, 비교기간: 2019년 1월~ 2020년 6월)
	대출보장제도와 대출기관에 의해 중대한 채무불이행 이력이 발견되지 않은 자				60일을 초과하는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는 자	

자료: HKMC,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Factsheet(Effective date: 29 March 2021),"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 7) 일부를 발췌하여 저자 번역.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싱가포르는 홍콩과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대표적 지역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 역시 앞서 살펴본 홍콩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지역이며 국제기구의 투자환경 평가에서도 전 세계 톱 3에 항상 포함되는 지역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싱가포르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는 홍콩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투자 및 정주 여건 차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국가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비즈니스 허브 전략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혁신을 도모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내수시장이 작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이나 배후지역도 없는 작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지난 50년간 매우 역동적인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실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도시국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외국자본과 외국기술, 외국 노동자 등 자국에 없는 매우 다양한 생산자원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가 오늘날과 같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정부가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전 세계 2위의 투자환경을 바탕으로 금융, 물류,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 친환경, 지식재산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대상은 대부분 싱가포르 등록 또는 설립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기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지원제도는 국적을 불문한다. 인재 육성 프로그램 역시 싱가포르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나, 인재양성기관의 경우 외국인 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비자 발급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매우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일정 부문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국가의 개입도 있지만 두바이, 홍콩과 같이 기업들의 비즈니스에는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 최상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2. 조세감면제도

싱가포르는 국내외기업 차별 없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기업에 17%의 법인세를 부과하고 일정 부분 면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00여 개 이상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DTA: Double Taxation Avoid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체결국과 싱가포르에 이중납부된 법인세를 반환하고, DTA 미체결국가에서 이중과세된 경우에는 2009년부터 UTC(Unilateral Tax Credit) 제도를 통해 반환해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가. 일반적 법인세 인센티브⁵²⁾

싱가포르는 법인세 리베이트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납부한 법인세의 25%를 최대 1만 5,000싱가포르달러 한도로 리베이트로 돌려주고 있다. 법인세 일부 면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과세대상금액 1만 싱가포르달러까지 75%, 이후 추가 19만 싱가포르달러까지 50% 감면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규 스타트업에도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회사 설립 후 3년간 소득 일부에 면세 혜택을 제공한다. 과세대상금액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75%, 이후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50% 면세된다. 지원대상은 다음 세 가지를 만족하는 투자 또는 부동산 개발 스타트업에 한정된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
- 싱가포르 납세자
- 20명 이하의 개인 주주가 소유 또는 주주 1명이 발행된 주식의 최소 10%를 소유한 회사

나. 선도산업(PC) 및 개발확장(DEI) 인센티브⁵³⁾

싱가포르는 기업의 신규 사업 또는 사업 확장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도산업(PC)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개발확장(DEI)에 해당하는 기업들에게는 5% 또는 10%의 감경세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고용창출, 사업지출규모, 싱가포르 발전 기여도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52)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Corporate Tax Rat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53)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조업 프로젝트는 공장, 건물, 장비 중 하나 이상의 고정 자산투자가 필요하다. 선도산업의 경우 기존 수준보다 높은 선도 기술, 노하우를 도입하고 경제에 실질적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의 새롭고 선도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다. 지식재산개발 인센티브(IDI)⁵⁴⁾

이 프로그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10년간 지식재산 관련 소득에 대해 5% 또는 10% 감경세율을 적용한다. 특허권, 특허출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또는 전술 항목 2개 이상이 연계된 권리에서 발생한 로열티 또는 기타소득 중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한다. 감경세율은 싱가포르 소득세법 제43ZI장 제6조에 따라 정해진 주기마다 0.5%씩 증가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싱가포르 경제와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에 실질적인 투자를 할 준비가 된 기업에 한정된다. 선정기준으로는 준수한 실적을 보유하고 싱가포르에서 경기부양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필수적으로 [표 3-1] 수준의 경제 기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된다.

표 3-1. 지식재산개발 인센티브(IDI)의 경제기여도 기준

5년 지원기준	5% 감경세율 적용조건	10% 감경세율 적용조건
고정자산 증가 또는 연간 사업지출 증가	SGD 10,500,000	SGD 6,500,000
숙련된 직원의 추가 고용	20명	15명

자료: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IP Development Incentive," para. 2의 자료를 저자 번역.

54)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IP Development Incen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라. 재무·재정 관리본부(FTC) 인센티브⁵⁵⁾

이 프로그램은 기업의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금융·재정의 전략적 요충지로써 싱가포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FTC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5년간 8%의 감경세율을 적용하고, 외국기관에 FTC 활동과 관련한 대출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해준다. 지원대상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싱가포르에 FTC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선정기준은 고용창출, 사업지출규모, FTC 운영규모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FTC 설립에 직원 10명, 350만 싱가포르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마. 금융 부문 세금 인센티브 제도(Financial Sector Tax Incentive Scheme)⁵⁶⁾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금융 및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은행·금융투자회사와 보험회사로 구분하여 별도의 하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금융 부문 인센티브(FSI) 제도의 경우는 사업 분야에 따라 5~13.5% 감경세율을 적용한다.⁵⁷⁾ 보험사업개발(IBD) 제도의 경우는 사업 분야에 따라 5~10% 감경세율을 적용한다.⁵⁸⁾ 지원대상으로는 싱가포르통화청(MAS)의 허가를 받은 은행·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한해서 지원된다.⁵⁹⁾ 선정기준으로는 핵심 사업 부문의 고용창출, 사업 성장/확

55)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Finance and Treasury Centre Incen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56)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ncial Sector Tax Incentive Sche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57) Income Tax Act(Chapter 134) Income Tax (Concessionary Rate of Tax for Financial Sector Incentive Companies) Regulations 2017, No. S 239.

58) Income Tax Act(Chapter 134, Section 43C) Income Tax(Exemption and Concessionary Tax Rate for Income from General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s, No. S 210/1995.

59) 보험회사는 보험법(Insurance Act, Cap. 142)에 따라 등록된 보험회사를 의미.

장, 타 분야 경제기여도,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일반적으로 다음 규모의 기관을 선정한다. 먼저 FSI 제도의 경우 고용인 100명(프론트/미들 오피스 직원 70% 이상), 연간 사업지출 2억 5,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IBD 제도의 경우는 고용인 30명(보험 전문직 50% 이상), 연간 사업지출 4,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선정된다.

바. 항공기 임대제도(ALS)⁶⁰⁾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내 항공기 임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세감면제도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 임대 및 부수활동 수입에 대해 최대 5년간 8%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항공기 또는 항공기 엔진 구입을 위한 대출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를 면제해준다. 지원대상은 싱가포르에서 실질적으로 항공기/항공기 엔진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은 고용창출, 사업지출규모와 성장가능성, 싱가포르 항공기 임대 사업 기여도를 정량 및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일반적으로 항공기 임대회사 설립에는 직원 10명, 1,500만 싱가포르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

사. 해운업 인센티브(MSI)⁶¹⁾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내 국제 해운회사 유치, 선박 및 컨테이너 조달 장려, 대형 해운회사의 부차적인 활동을 장려하여 싱가포르의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운업 △선박 및 컨테이너 임대업 △해운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한다. 인가된 외국 해운사(MSI-AIS)의 경우에는 해운 소득에 대한 세금을 5년 또

60)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Aircraft Leasing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61)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aritime Sector Incen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는 10년 동안 면제해준다(갱신 가능). 선박 임대업(MSI-ML)의 경우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5년간 5% 또는 10% 감경세율을 적용해준다. 해운 관련 서비스업(MSI-SSS)의 경우는 선박 중개, 화물운임 선도거래, 선박 관리, 선박, 화물 발송 및 물류 서비스, 법인 서비스의 증가된 수익에 5년간 10%의 감경세율을 적용해주고 갱신 또한 가능하다. 원천징수세(WHT) 역시 면제 가능한데, 2011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선박, 컨테이너, 운송장비 구입 또는 건설에 지불된 비용 및 이자의 원천징수세를 증빙할 수 있으면 면제될 수 있다.⁶²⁾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⁶³⁾

- MSI-AIS: 싱가포르에 등록된 외국 국적의 해운회사
- MSI-ML: 싱가포르에 등록된 선박 또는 컨테이너 임대사업자
- MSI-SSS: 싱가포르에 등록된 해운 관련 서비스업 사업자
- WHT 면제: 상기 3개 프로그램 대상 기업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선정기준은 해당 사업을 통해 싱가포르 경제에 대한 기여(전문가 채용 정도, 총사업비용, 싱가포르 내 부가활동 등을 포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표 3-2]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3-2. 싱가포르 해운업 인센티브(MSI) 선정기준

프로그램	최소 사업지출규모	최소 전문가 고용규모	
MSI-AIS	5년간 SGD 2,750만	해당 없음.	
MSI-ML(선박)	5년간 SGD 2,500만	3명	
MSI-ML (컨테이너)	5% 감경세율	5년간 SGD 1,200만	6명
	10% 감경세율	5년간 SGD 800만	3명
MSI-SSS	5년간 SGD 600만 증가	5명 증가	

자료: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ost Popular FAQs: What are the total business spending and headcount requirements under the MS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저자 번역.

62)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Withholding Tax (WHT) Exemp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6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Shipping Compan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야. Global Trader Programme(GTP)⁶⁴⁾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를 국제무역의 지역 허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국제무역을 하는 대기업, 고성장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감소해주는 정책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무역 수입에 대해 3년 또는 5년간 5% 또는 10% 감경세율을 적용받는다. 지원대상은 싱가포르를 지역 거점으로 국제무역을 하면서 연매출 1억 US달러 이상, 싱가포르 내 사업지출 3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무역 전문인력 3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들에 한정된다.⁶⁵⁾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은 사업계획, 싱가포르 경제 및 고용창출 기여도를 고려해 결정된다.

자. Section 13H Tax Incentive(S13H) 및 Fund Management Incentive(FMI)⁶⁶⁾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비상장기업에 투자 및 벤처캐피털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의 수입에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15년간 투자 수입의 세금을 면제 받고, S13H 펀드 수익에 기반한 펀드매니저의 수입에는 5% 감경세율이 적용된다. S13H의 경우 싱가포르에 설립된 합자회사로 가변자본회사(Variable Capital Company)가 지원대상이다. FMI의 경우는 싱가포르통화청(MAS) 라이선스를 보유한 펀드매니저가 지원대상이다. 동 프로그램의 선정기준은 S13H의 경우 1,00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싱가포르 사업지출비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규모의 펀드로 싱가포르 비상장기업 투자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4) Enterprise Singapore, "Global Trader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65) GuideMeSingapore, "Guide to Singapore's Global Trader Sche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66) Enterprise Singapore, "Section 13H/Fund Management Incentive (S13H/FMI),"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다. FMI의 경우는 총시장가치(Assets under Management) 4,000싱가포르 달러의 S13H 펀드를 운용하고, 최소 1명 이상의 투자 전문가 고용이 필수적(갱신 때마다 최소 1명 이상 추가 고용을 요구)이다.

3. 현금지원제도

가. Resource Efficiency Grant for Energy(REG(E))⁶⁷⁾

이 프로그램은 제조시설과 데이터 센터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미래의 탄소중립 사회를 대비해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탄소저감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회계연도 2023년 말까지 지원하며, 지원자는 2024년 3월 31일까지 EDB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은 프로젝트를 통해 저감한 탄소량에 따라 상이하나, 프로젝트 기간 동안 장비, 재료, 소모품, 기술 소프트, 전문 서비스, 지식 재산권 등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3년간 50%까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문 비용은 발생기간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현금지원대상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등록 또는 설립된 기업이어야 하며, 싱가포르에 있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어야 한다. 아울러 그룹 연매출이 5억 싱가포르달러 이상(5억 미만은 Energy Efficiency Fund 대상)인 기업이어야 하고, 제조업은 SSIC 분류에 따라 ACRA(기업회계청)에 등록된 기업 또는 싱가포르에서 데이터 센터 활동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67) EDB, "Information on RE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나. Energy Efficiency Fund(E2F)⁶⁸⁾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원(5억 미만은 NEA의 Energy Efficiency Fund 이용 권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은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먼저 신규 시설/시설 확장 계획의 경우는 자문 비용, 자문가의 이동·숙소 비용, 워크숍 장소 및 물류 비용을 6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기존 시설의 에너지 평가의 경우는 시설당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로 50%까지 지원된다. 에너지효율기술 도입의 경우는 외부 인건비, 장비 또는 기술 비용, 전문 서비스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에너지관리정보시스템(EMIS) 도입의 경우 장비 및 재료비, 전문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에너지 집약시설은 25만 싱가포르달러, 그 외 시설은 12만 5,000싱가포르달러까지)한다.

지원대상은 싱가포르 등록 기업의 소유주 또는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산업 시설 사용자로서 EENP(Energy Efficiency National Partnership) 프로그램의 파트너이거나 구체적인 계획과 에너지 평가를 받았으나 아직 계약 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된다.

다.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LIA)

이 프로그램은 산업단지에 사업을 집중시켜 부지의 효율성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EDB가 2010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또는 구조물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빌딩이나 구조물의 건설/수리/확장비 비용의 25%를 일회성으로 지급하고, 매년 해당 비용의 5%씩 나누어 지급하여 100%에 달할 때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싱가포르 도시

68) National Environment Agency, "Energy Efficiency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개발청(URA)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비즈니스1, 비즈니스2, 공항/항구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로 제조업과 물류업에 한해서 지원된다. 선정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건물주와의 관계, LIA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상세한 선정조건은 지원 연도에 따라 상이하다.⁶⁹⁾

4. 스타트업 제도

싱가포르는 선진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Startup SG’를 설립하여 주관 기관이 다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8개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8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⁷⁰⁾ ① Startup SG Talent ② Startup SG Founder ③ Startup SG Tech ④ Startup SG Accelerator ⑤ Startup SG Equity ⑥ Startup SG infrastructure ⑦ Startup SG Loan ⑧ Startup Investor이다.

가. Startup SG Talent

이 프로그램은 사업가 유치, R&D 인적 지원, 인재 육성, 인재 교육 등 스타트업의 전반적인 인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 프로그램으로 △EnprePass △T-Up △GRT △Tech@SG △IFP를 제공한다.

1) EnprePass

이 프로그램은 혁신기술을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하고 자 하는 사업가에게 비자를 부여하여 글로벌 사업가의 싱가포르 유입을 촉진하

69) EDB,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LIA) - MAIN BROCH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70) Startup SG, “Programm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은 처음 유효기간 1년의 비자 제공 및 이후 1~2년씩 비자 갱신이며, EntrePass 보유기간에 따라 갱신조건이 상이하다.⁷¹⁾ 지원대상은 싱가포르 내 설립 6개월 미만의 유한책임회사나 설립예정 유한책임회사이며, 공공 또는 민간의 벤처 투자를 받고 있거나 혁신기술을 보유한 자이다.

2) Technology for Enterprise Capability Upgrading(T-Up)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공공 R&D 기관인 과학기술청(A*STAR) 소속의 엔지니어와 연구원을 중소기업 R&D 프로젝트에 파견하는 인적 지원제도이다. 최장 2년간 A*STAR 소속 엔지니어 및 연구원 파견, 파견 비용 최대 70%까지 보조해준다. 지원대상 자격조건은 싱가포르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 연매출 1억 싱가포르달러 이하 또는 그룹 고용규모 200명 이하의 싱가포르에 등록된 중소기업들이다. 지원 분야는 데이터 저장, 고성능 컴퓨팅, 정보통신, 재료공학,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공장자동화기술, 화학공학, 바이오이미징, 바이오프로세싱,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분자세포생물학, 의약 및 생물의학 개발, 생명공학 및 나노테크놀로지, 면역학, 의학기술 분야이다.

3) Global Ready Talent Programme(GRT)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인턴십과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인재 프로그램 △청년 인재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진출 프로그램 세 가지를 통합한 프로그램이다.

국내외 인턴십에 한해 인턴 인건비의 최대 70%까지 EGS 펀딩 지원이 가능하고, 해외 인턴은 여행비와 생계지원비를 Enterprise Singapore와 고등교육 기관(IHLs)이 공동 지원한다. 초급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관리자 1명당

71) EntrePass 보유기간별 상세 갱신조건은 다음을 참고.

Ministry of Manpower, "Renew an EntrePa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년에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 한도로 초급 관리자 인건비의 최대 70%까지 EGS 펀딩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며 싱가포르에 설립된 회사와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하다.

- ACE Startups 회원사
- 설립된 지 5년 미만의 기술 스타트업
- 싱가포르인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의 지분이 30% 이상, 타 기업의 보통주 지분이 50% 미만
- 4년제 대학생에게 월 1,000US달러 이상, 전문대 또는 싱가포르 직업훈련원(ITE) 학생에게 월 800US달러 이상 지급 가능
- 2개월 이내에 고용계획 존재
- [국내외 인턴십]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교, ITE에 재학 중인 싱가포르인 또는 싱가포르 영주권자
- [초급 관리자] 최소 1년 이상 핵심 해외시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경력 3년 미만의 직원

4) Tech@SG Programme⁷²⁾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스타트업의 빠른 성장과 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핵심 인재가 인력부(MOM: Ministry of Manpower)로부터 싱가포르 전문직 취업 비자(EP: Employment Pass)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년 동안 최대 1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EP 발행 및 1회 비자 연장 보장(최대 3년까지 가능) 혜택이 주어진다.

다음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상 조건이다.

72) EDB, "Tech@SG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기업]

- 싱가포르 기업회계청(ACRA) 등록기준에 따라 싱가포르에 설립된 기업
- 핵심 사업이 디지털 기술 상품 또는 서비스
- 지난 36개월 동안 총투자금이 1,000만 US달러 초과
- 지난 36개월 동안 지정 투자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여부(금액 무관)⁷³⁾

[근로자]

- 고정 월급은 MOM의 최소 급여 수준(현재 4,500싱가포르달러) 이상
- MOM 신원조사 및 재무실사 통과
- 핵심 사업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술직에 종사하는 관리자 이상의 직급

5) Innovation & Enterprise Fellowship Programme(IFP)

이 프로그램은 현역 연구자, 과학자, 공학자 중 산업 관련 혁신기업(I&E) 인재를 육성하고 I&E 활동과 연관된 기저기술 인재풀을 확대하기 위한 인재 교육 프로그램이다. 6~18개월의 교육기간 동안 월 5,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교육 대상자 총급여의 80%를 Enterprise Singapore가 기업에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싱가포르에 등록 또는 설립된 기업이다.

-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거나 싱가포르인의 지분이 30% 이상
-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잠재적 후보들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거나 배정된 교육 대상자를 고용 가능한 기업
- 기저기술 상업화 인재, 교육 대상자를 고용하려는 기업

73) 지정 투자기업 리스트는 EDB, "Tech@SG—Recognised investment fir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나. Startup SG Founder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멘토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 제도를 강화하여 기존의 SSGF Scheme을 Startup SG Founder Start track으로 업그레이드하고 Train track을 신설한 것이다. Start track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에게 Enterprise Singapore가 공인하는 멘토를 제공하고 기업이 1만 싱가포르달러를 출자하면 Enterprise Singapore가 5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한다. Train track은 3개월 동안 혁신기업 모색, 아이디어를 상업화, 고객의 제품 검증, 투자자 모집에 대한 지원이다.

동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기업인을 싱가포르인, 싱가포르 영주권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외국인은 지원받기 어렵다.

다. Startup SG Tech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의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단계별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디어 콘셉트화 단계에서는 Proof-of-Concept(POC) 프로젝트, 이후 시제품 개발 또는 상업화 가능성 확인 단계는 Proof-of-Value(POV) 프로젝트로 분류하여 지원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기업이 프로젝트 총액의 10%를 선결제하고 POC는 10%, POV는 20% 추가를 조건으로, 최대 POC는 25만 싱가포르달러, POV는 50만 싱가포르달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 등록된 지 5년 미만
- 싱가포르인 지분 30% 이상
- 그룹 연매출 1억 싱가포르달러 이하, 그룹 고용규모 200명 이하

- 싱가포르에서 핵심 활동을 수행

지원 분야는 선진 제조기술, 로봇공학, 생명과학 및 보건, 청정기술, 정보통신기술, 신사업 분야(가상현실, 블록체인, 우주, 스마트 패키지), 정밀기계, 수송공학, 식품공학, 농업기술에 한정한다.

라. Startup SG Accelerator

이 프로그램은 높은 잠재력을 가진 싱가포르 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국내의 스타트업 조력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각 분야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이 다르다. 먼저 스타트업 양성의 경우 스타트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자금유치, 시장 접근성 등을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의 비용을 지원한다. 반면 스타트업 모니터링의 경우는 스타트업 관리기술 관련 멘토 및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비(일부) 지원 항목은 Enterprise Singapore의 결정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혁신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한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벤처빌더
-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기반 스타트업을 지원
- 장기 운용 가능
- 스타트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 경력자로 구성된 관리팀 보유

마. Startup SG Equity

이 프로그램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싱가포르 기반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3의 투자자와 함께

스타트업 공동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기술 스타트업의 투자비율 7:3은 25만 싱가포르달러가 지원되고, 1:1은 2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된다. 반면 선진기술 스타트업 투자비율 7:3은 50만 싱가포르달러가 지원되고, 1:1은 500만 싱가포르달러, 그리고 3:7은 800만 싱가포르달러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정된다.

- 싱가포르 기반 기업으로 싱가포르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
- 설립 5년 미만의 유한책임회사
- 보유 자본 최소 5만 싱가포르달러
- 제품·서비스의 혁신적이고 지적인 내용 입증 가능
-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 잠재력 보유
- 제3의 투자자 보유

이 프로그램은 사행성 게임, 담배 관련 제품, 법으로 금지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바. Startup SG Infrastructure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퀸스타운에 위치한 one-north 상업지구 안에 연구단지인 LaunchPad@one-north를 설립하고 스타트업이 성장, 실업, 발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LaunchPad@one-north는 6만 5,000m² 규모의 연구단지로 생명공학, 정보통신, 미디어, 도시관리, 전자공학, 엔지니어링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과 조력 기업에 학제 간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사. Startup SG Loan

이 프로그램은 2019년에 Enterprise Singapore가 기존의 파이낸싱 지원 책들을 '기업 파이낸싱 제도(EFS)'로 통합하여, 스타트업 및 기업의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6개 사업 운영 분야별로 대출제도를 운영한다.

표 3-3. 싱가포르 기업 파이낸싱 제도(EFS)

대출제도명	1인당 최대 대출금액	최대 상환기간	위험 분담
SME Working Capital Loan	SGD 30만	5년	기업 부담 50% *설립 5년 미만 기업은 70%
SME Fixed Assets Loan	SGD 3,000만	15년	
Venture Debt Loan	SGD 800만	5년	
Project Loan	해외 프로젝트 SGD 5,000만 국내 프로젝트 SGD 3,000만	고정자산대출 15년 유동자금대출 5년	
Mergers & Acquisitions Loan	SGD 5,000만	5년	
Trade Loan	SGD 1,000만	1년	기업 부담 70%

자료: Enterprise Singapore, "Enterprise Financing Scheme(E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를 토대로 저자 작성.

아. Startup SG Investor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 스타트업 및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스타트업 투자자는 AITD(Angel Investors Tax Deduction), 일반 기업 투자자는 S13H 및 FMI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된다.⁷⁴⁾

AITD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한 Angel investor에게 지원된다. Angel investor는 자격 요건을 갖춘 스타트업당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74) S13H 및 FMI 프로그램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의 내용 참고.

을 투자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스타트업 투자 후 2년 뒤에 투자액의 50%를 세금 공제해준다. 평가년 기준 최대 세금 공제액은 연 25만 싱가포르달러이다.

5. 기타 지원제도

싱가포르 정부는 앞서 언급한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

글로벌 투자자 프로그램(GIP)⁷⁵⁾은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기설립·차세대 기업의 기업주, 고속 성장 기업의 창업주, 패밀리 오피스 소장으로 이민국(ICA)의 AIP편지 발행 후 6개월 내로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자로 국한한다.

먼저 패밀리 오피스 소장의 경우는 총운용자산(AUM) 2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신규·기존 싱가포르 기반의 패밀리 오피스로 250만 싱가포르달러를 투자한 경우이다. 그 외에는 15개 지정산업 분야에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⁷⁶⁾에 한해서 지원한다.

75) EDB, "Global Investor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76) 15개 지정산업: Aerospace Engineering, Chemicals, Alternative Energy/Clean Technology, Automotive, Consumer Business, Electronics, Energy, Engineering Services, Healthcare, Infocomm Products & Services, Logistics & Supply Chain Management, Marine & Offshore Engineering, Media & Entertainment, Medical Technology, Nanotechnology, Natural Resources, Safety & Security, Space, Shipping,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Precision Engineering, Professional Services, Arts Businesses, Sports Businesses, Family Office & Financial Service.

- 신생 기업 또는 사업 확장에 25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
- GIP 펀드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에 25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
- 총운용자산(AUM) 2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신규·기존 싱가포르 기반의 패밀리 오피스로 250만 싱가포르달러 투자

나. Tech.Pass

또 하나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은 Tech.Pass⁷⁷⁾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기업의 외국인 기업가, 대표, 기술 전문가가 싱가포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제 개발청(EDB)이 비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혜택 내용은 갱신 가능한 유효기간 2년의 비자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 하나 이상의 기술기업을 보유한 자
- 하나 이상의 싱가포르 기반 회사에 고용된 적이 있는 자
- 피고용인에서 고용인으로 전환하는 자
-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컨설턴트 또는 멘토
- 하나 이상의 싱가포르 기반 회사의 투자자 또는 책임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2개를 충족해야만 한다.

- 1년 이내 고정 월급이 최소 2만 싱가포르달러 이상
- 시가 총액 5억 US달러 이상 또는 3,000만 US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한 기술기업에서 최소 5년 연속으로 주요직에서 근무
- 실사용자 월 10만 이상 또는 연매출 1억 US달러 이상의 기술 제품을 개발한 개발자로 기술기업에서 최소 5년 연속 근무

77) EDB, "Tech.Pa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다. 스타트업을 위한 특수상황기금(SSFS)⁷⁸⁾

이 프로그램은 싱가포르의 정책 우선 사항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하여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지원 건별로 상이하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싱가포르에 설립된 지 10년 이하의 사기업
- 고성장 혁신기술의 개발, 생산, 상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
- 고정 고객 또는 파트너를 보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연매출 성장을 최소 20%의 상업적 사업 성장 모델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기존·신규 투자자가 컨버터블 노트의 50% 투자를 약속한 경우

라. 사내기업 론치패드(Corporate Venture Launchpad)

이 프로그램은 대기업이 싱가포르에서 벤처를 설립하는 경우, 초기 6개월간 벤처기업 전용 공간,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4개의 지정 벤처 스튜디오 및 벤처 투자금을 50만 싱가포르달러 한도로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기업들은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싱가포르 기반의 글로벌 기업, 싱가포르 대기업
- 벤처기업 관련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
- 당해 프로그램을 통해 신사업을 창출하는 기업

78) EDBI, "Guidance for Special Situation Fund for Startups (SSFS) application,"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2. 1. 7).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미국은 GDP 20조 US달러, 3억 2,500만 인구를 기반으로 전 세계 가계소비의 약 1/3을 차지하는 구매력 높은 시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자형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은 거의 매년 외국인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지원제도는 주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되는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인센티브 총 2,650개 중 연방정부 담당은 30개뿐이다.⁷⁹⁾

트럼프 정권에서 친기업 정책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인하한 바 있다. 2017년 「Tax Cuts and Jobs Act(TCJA)」⁸⁰⁾를 제정하여 기존 소득에 따라 15~39%의 법인세를 부과하던 단계적 세율표를 폐지하고 회계연도 2018년부터 법인세율을 21%로 통일하였다. 또한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2개의 시스템으로 계산된 세금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대체최저세(Alternative Minimum Tax) 적용도 폐지하였다. 2018년부터 해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에 대해 37.5%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실효세율을 13.13%로 인하였고, 2025년부터는 공제율이 감소하여 실효세율 16.41%가 적용될 예정이다.⁸¹⁾

79) DSIRE, "Find Policies & Incentives by St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80) 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s II and V of the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8, Public Law 115-97.

81) Deloitte,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미 행정부는 또한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 제도를 신설하여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을 포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었다. 미국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법에는 단독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형태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개별법이나 주정부의 법률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이 미국기업을 인수할 때는 상무성에 신고해야 하며 상장된 회사를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개입한다.

미국은 국가안전과 관련된 규정으로 앞서 언급한 1988년 종합무역법 502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도 1985년 수출관리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행법(101조), 1987년 국방비수정법(98조) 등으로 수출입과 정부조달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국가안전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의 매수·합병·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여러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외국기업에 의한 미국기업의 매수·합병·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에 상관 없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동 위원회의 의장은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다. 금융, 광산업, 방산업, 특정 에너지산업, 어업, 선박업, 통신업, 항공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 국영기업의 투자 활동 급증과 중국 투자가 전략적 목적에 일부 기반한다는 인식으로 중국 국가 보조금정책으로 발생하는 불공평한 경쟁우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룬다.

2. 조세감면제도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었고 지방세 0~12%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조세혜택보다는 주정부의 세제 혜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미국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세 혜택에 대해서만 서술한다.

먼저 에너지 투자 세액 공제(ITC: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가 있다.⁸²⁾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로써 할인세율과 환급금액은 산업 분야에 따라 상이하다. 지원 내용은 기술 분야나 건설 시작 연도에 따라 [표 4-1]과 같은 비율대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물집열 방식(Solar water heating system), 태양열 난방, 지열 발전,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지열 난방 펌프, 도시 고형 폐기물, 열병합 발전, 연료전지발전, 조력, 지열 직접 이용(Geothermal Direct-Use), 마이크로 터빈, 해상 풍력발전(Offshore Wind) 등이다.

표 4-1. ITC 건설 시작 연도별 공제율

(단위: %)

기술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물집열 방식, 태양열 냉난방, 태양열/광 난방	26	26	26	22	22	22	10
하이브리드 태양광 조명, 연료전지, 소형 풍력발전, 폐기물 에너지	26	26	26	22	N/A	N/A	N/A
지열 펌프,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 발전	10	10	10	10	N/A	N/A	N/A
지열 발전	10	10	10	10	10	10	10
대형 풍력발전	18	18	N/A	N/A	N/A	N/A	N/A
해상 풍력발전 ⁸³⁾	30	30	30	30	30	30	N/A

자료: DSIRE,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ITC)" 자료를 저자 번역.

82) DSIRE,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83) 해상 풍력발전(Offshore Wind)의 적용 연도는 2026년 1월 1일까지임. The Taxpayer Certainty

또 다른 조세 혜택에는 에너지 개발 아이디어 제안 인센티브(NETL: Unsolicited Proposals of the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가 있다.⁸⁴⁾ 미국 에너지부(DOE)가 요청한 분야 외에 에너지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 방식, 사업계획 등을 제안한 개인, 기업, 기관에 세금 공제 및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을 모두 제출한 제안서에 한해서 지원이 된다.

- DOE의 업무와 제안한 내용의 적합성
- 제안하게 된 이유
- 추구하는 방식
-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후원금액
- 가능할 경우 조사자와 기관의 자격 수준

동 조세 혜택을 위한 선정기준은 콘셉트의 희소성 및 혁신성 또는 제안자의 뛰어난 능력, 연방정부만 가능한 콘셉트나 서비스의 제안, 최근 또는 현재 진행·지연 중인 다른 제안과의 유사성 등이 고려된다.

3. 현금지원제도

가. 산업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 주관 프로그램(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s)⁸⁵⁾

전미과학재단(NSF)의 산업혁신 및 파트너십 부서는 NSF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의 시장 진출과 민관협력 기술혁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

and Disaster Tax Relief Act of 2020, SEC. 204.

84)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Unsolicited Propos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85)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s: Division of 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s (II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는 ①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 Phase I, II ②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Phase I, II ③ 혁신 파트너십(PFI) ④ 초기 공학 연구(ERI) ⑤ 산학협력 연구 센터(IUCRC) ⑥ IUSE/PFE: RED ⑦ 중기 커리어 지원(MCA) ⑧ NSF/FDA FDA 소속 학자가 존재한다. 이 중 중소기업 지원 정책인 SBIR과 STTR을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 과학 및 공학 인재 또는 미국 설립 기관의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1)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 Phase I, II⁸⁶⁾

이 프로그램은 미 행정부가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현금지원제도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 Phase I: 매년 총예산 7,000만 US달러 내에서 250~300개 프로젝트 지원
- Phase II: 매년 총예산 1억 1,000만 US달러 내에서 100~120개 프로젝트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계열사 직원을 포함하여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 NSF SBIR/STR 프로그램 관리자부터 지난 12개월 안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
- 주 연구원(PI: Principal Investigator)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51% 이상 고용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연구에 적절한 비자를 소유한 연구원으로 학위 요구 조건은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이 선호됨.

참고로 Phase I 수여 기업만 Phase II 신청이 가능하다.

86)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 중소기업 기술이전(STTR) Phase I, II⁸⁷⁾

이 프로그램은 상업화 잠재력과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연구결과를 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제품과 서비스화를 지원하는 현금지원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hase I: 매년 총예산 1,500만 US달러 내에서 60개 프로젝트 지원
- Phase II: 매년 총예산 1,000~1,500만 US달러 내에서 10~15개 프로젝트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기업들에 해당된다.

- 계열사 직원을 포함하여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
- NSF SBIR/STR 프로그램 관리자부터 지난 12개월 안에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
- 주 연구원은 당해 중소기업에서 51% 이상 고용된 미국 시민권, 영주권 또는 연구에 적절한 비자를 소유한 연구원으로 학위 요구 조건은 없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이 선호됨.

역시 Phase I 수여 기업만 Phase II 신청이 가능하다.

3) 혁신 파트너십(PFI: Partnerships for Innovation)

이 프로그램은 분야에 상관없이 상업화 가능성과 사회 영향력이 있는 유망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본 프로젝트인 Technology Translation (PFI-TT)와 복수의 연구자/연구기관의 협동 프로젝트인 Research Partnerships (PFI-RP)가 존재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FI-TT 프로젝트: 18~24개월 동안 25만 US달러

8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 PFI-TT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은 혁신 및 사업가 정신 관련 교육과 리더십 훈련도 받음.

· PFI-RP 프로젝트: 36개월 동안 55만 US달러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⁸⁸⁾

- 대학을 포함한 미국 연구 및 학문 기관
- 공공 또는 비영리이며 비학문적인 미국 기술이전 기관
- 고등교육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비영리 미국기관
- 전문한 종류의 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한 컨소시엄

4) 초기 공학 연구(ERI)⁸⁹⁾

이 US달러가 프로그램은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구자, 교육자, 혁신가로서 커리어를 시작하려는 신진 엔지니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간접비를 포함하여 최대 2년간 20만 US달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연구비, 대학(원)생 지원비, 주 연구원(PI) 급여, 제안된 연구에 사용되는 장비 비용 등에 대해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카네기 분류(Carnegie Classification)에 따라 R1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고등교육기관(기관당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 연구원(PI)은 NSF가 지원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자여야 함.

5) 산학협력 연구센터(IUCRC)⁹⁰⁾

이 프로그램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학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획기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산업계 전반의 욕구에 맞는 영향력 높은

88)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19-50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89)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7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90)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0-57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연구 △혁신기술 개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고도로 숙련된 엔지니어 노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획단계: 2만 US달러
- Phase I: 15만 US달러
- Phase II: 10만 US달러
- Phase II+: 15만 US달러
- Phase III: 5만 US달러

지원대상이 되려면 미국에 캠퍼스가 있는 고등교육기관이면서 주 연구원(PI)은 원칙적으로 종신직 직원이어야 한다.

6) IUSE/Professional Formation of Engineers: Revolutionizing Engineering Departments(IUSE/PFE: RED)⁹¹⁾

이 프로그램은 공학 연구 교육의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대 학부생을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RED 혁신 프로그램(RED Innovation)과 입증된 교육방식을 적용하고 이행하기 위한 RED 적용·이행 프로그램(RED-A&I)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프로젝트당 400만~800만 US달러가 지원되고, 기관당 RED innovation, RED-A&I를 통틀어 최대 2개의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미국에 캠퍼스를 가진 고등교육기관이다. 지원 분야는 공학, 인사교육, 컴퓨터공학에 한정되어 있다.

7) 중견 과학자 지원(MCA)⁹²⁾

이 프로그램은 경력 중단 가능성이 높은 중견 과학자(mid-career scientist)가 역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400만~1,800만 US달러

91)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19-6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92)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ocotation NSF 21-51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미국에 캠퍼스가 있는 고등교육기관, 비영리/비학문 기관에 소속된 과학자이며, 주 연구원(PI)은 부교수(Associate Professor)로 3년 이상 재직이 필수이다.

8) NSF/FDA FDA 내 연구 학자 지원 프로그램(NSF/FDA Scholar-In-Residence at FDA)⁹³⁾

이 프로그램은 의료기기 트렌드의 과학적 공학적 이슈 조사를 위해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자 과학, 공학, 컴퓨터 공학 연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총예산 75만 US달러 안에서 약 5~1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지원금과 지원기간은 프로젝트마다 상이하다. 지원대상은 고등교육기관, 비영리/비학문 기관, 영리기관, 정부기관, 외국기관(미국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연방기관에 소속된 과학자, 공학자, 교육자이다.⁹⁴⁾

나.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 프로그램⁹⁵⁾

이 프로그램은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중소기업의 연방 R&D 프로그램 참여를 장려하여 우수한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혁신 연구(SBIR)와 중소기업 기술 전수(STTR)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고, 기술 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 Phase I : SBIR은 6개월, STTR은 1년 동안 5만~25만 US달러
- Phase II: 2년간 75만 US달러
- * SBA는 매년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최대 지원금액을 조정함.

93)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 Solicitation NSF 18-55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94) National Science Foundation, "Significant Changes and Clarifications to the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 (PAPP) (NSF 20-1)," pp. I-4~I-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95) SBIR·STTR, <https://www.sbir.gov/>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 미국에 설립되고 SBIR/STTR Company Registry에 등록된 영리기관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50% 이상 지분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관
- 계열사 포함 고용인 500명 이하

4. 입지지원제도

가. 자유무역지역(FTZ: Foreign Trade Zones)⁹⁶⁾

이 프로그램은 FTZ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FTZ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구역으로 Magnet Site와 Subzones/Usage-driven sites로 분류된다. Magnet Site는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산하의 자유무역지역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으로 보통 항구나 산업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다. 현존하는 FTZ가 상업적으로 불편하다고 입증하면 Alternative Site Framework(ASF)를 통해 새로운 항만지역을 FTZ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청비는 3,200US달러이다. Subzones/Usage-driven sites는 각 주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허가 와 감독 하에 특정 회사나 특정 용도를 목적으로 FTZ 혜택을 부여한 FTZ 외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세지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혜택들이 주어진다.

- 재수출 상품에 관세 면제
-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연방 특별소비세(excise tax) 납부기한 연장
- 통관절차 간소화
- 수출용 재고에 대한 재고세(inventory tax) 면제

9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Foreign-Trade Zon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나.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⁹⁷⁾

이 프로그램은 2017년 TCJA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50개 주에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주정부 지정 및 재무부 승인으로 기회 특구로 지정하며, 해당 지역의 기업은 Qualified Opportunity Fund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본소득이 발생한 180일 이내에 특구 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하면, 투자 유지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년 이상: 투자금의 1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7년 이상: 투자금의 15%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10년 이상: 투자금 전액 비과세

다. 기타 지원제도

기타 지원제도로 에너지 관련 정부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⁹⁸⁾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Energy Policy Act of 2005를 기반으로 2007년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 Loan Programs Office(LPO)를 설치하여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정부가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LPO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① 타이틀 17 혁신 에너지 대출담보 프로그램(Title 17) ② 선진기술 차량 제조 직접 대출 프로그램(ATVM) ③ 원주민 에너지 대출 담보 프로그램(TELGP)이 있다.

97) IRS, "Opportunity Zon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98) Loan Programs Office, "PRODUCTS & SERV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 타이틀 17 혁신 에너지 대출 프로그램(Title 17)

이 프로그램은 혁신 에너지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에너지 분야로는 △화석연료 △원자력 △재생에너지 △분산 에너지(distributed energy) △전기 자동차 및 대체 연료 자동차가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⁹⁹⁾

- 미국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은행(Federal Financing Bank)이 프로젝트 비용 100% 대출 또는 미국 에너지부가 상업 대출을 부분적으로 보완
- 최대 30년 또는 프로젝트 총기간의 90%에 해당하는 장기 상환기간
- 재무, 기술, 법률,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 처리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된다.

- 신기술 또는 혁신적으로 개선된 기술을 활용
- 온실가스 미배출 또는 배출량 감소
- 미국 내 투자
- 상환 가능성 존재

2) 선진기술 차량 제조 직접 대출 프로그램(ATVM)

이 프로그램은 177억 US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에너지 관련 인프라 신규 투자 또는 개보수 프로젝트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재무부의 미국 내 차량 제조 프로젝트용 이자율에 따른 대출
* 또한 최대 0.1%의 프로젝트 종료 비용을 지불해야 함.
- 최대 25년의 장기 상환기간
- 신뢰도 높은 대출기관
- 재무, 기술, 법률,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 처리팀

99) Loan Programs Office, "LPO Title 17 Lending Reference Guid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프로젝트에 한정된다.

- 2005년 모델보다 25% 이상 에너지 효율 개선 또는 1갤런당 75마일 수준의 연료 효율을 달성한 자동차 혹은 해당 차량용 부품을 제조
- 시설을 신축, 기존 시설의 재장비/현대화/확장, 엔지니어링 통합(engineering integration) 중 한 가지를 진행 경우
- 미국 내 시설(외국인이 소유 또는 후원하는 경우도 가능)
- * 또한 지원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규모와 다른 연방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함.

3) 원주민 에너지 대출 프로그램(TELG)

이 프로그램은 최대 20억 US달러를 보장하는 부분적 대출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가 인정한 인디언 부족이나 알래스카 원주민 회사의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5. 외국인투자 규제

미국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으나, 최근 들어 중국 투자에 대한 견제방안으로 안보 관련 개별법과 주정부의 법률에 따라서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 관련 외국인투자규제법은 대표적으로 ① 엑스 플로리오 조항 ②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 ③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 ④ 국방수권법이 있다.

가. 외국인투자규제법

1) 엑슨 플로리오 조항(Exon-Florio provision)

이 법안은 1988년 일본기업이 특정 유형의 미국 회사 인수로 인해 안보상 우려가 높아졌고,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을 통과시키면서 섹션 5021에 엑슨 플로리오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이 법은 대통령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경우,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 내 주간 통상(interstate commerce)에 연관된 법인의 합병·인수·매수를 금지하거나 계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¹⁰⁰⁾ 이후 엑슨 플로리오 조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로 발전한다.

2)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¹⁰¹⁾

이 법안은 1950년 방위생산법의 섹션 721을 개정된 법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법인 포함)에 의한 미국기업의 합병·인수·매수를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미 행정부는 여러 부처로 구성된 조직인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설립하여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선정하고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인수 검토를 일임했다.¹⁰²⁾ 대통령에게 미국의 안보를 손상시키는 외국인의 인수·합병·매수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¹⁰³⁾

100)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Exon-Florio National Security Test for Foreign Investment,"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01) Public Law 110-49.

102) *Ibid.*, Sec. 3(k)(2).

103) *Ibid.*, Sec. 6(d)(1).

3)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이 법안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투자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2018년 11월 11일 발효되었다. FIRRMA는 2007년 FINSA보다 CFIUS가 심사하는 외국인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강화한 것이다.¹⁰⁴⁾ FIRRMA 법안의 제정으로 심사대상을 기존 지배권 거래에서 특정 비지배 지분 거래까지 확대하였다. 아울러 핵심기술, 주요 사회기반시설, 민감한 개인정보(TID) 관련 거래는 완료 예상 30일 전에 CFIUS에게 신고하는 의무보고 사항이 추가되었다. 수출규제대상인 제품, 기술, 디자인의 거래도 의무보고 사항에 추가하여 FIRRMA와 수출규제를 연계하였다.

4)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 법안은 국방부의 예산과 지출에 관한 법안으로 1961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회계연도마다 개정되었으며, 2018년부터 화웨이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 및 러시아 기업의 활동을 안보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다. 2018년 국방수권법을 활용하여 명시적으로 중국계 통신회사인 화웨이와 ZTE를 법안에 명기한 최초의 NDAA 개정법이며, 안보상의 이유로 국방부가 화웨이, ZTE, 중국 또는 러시아 정부가 소유·통제하거나 연관된 기업과 통신장비 및 서비스 조달·구매·연장·갱신 계약을 금지했다.¹⁰⁵⁾

104) KOTRA 해외시장뉴스, 「재무부, FIRRMA 이행 최종 규정 발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105)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uawei and U.S. Law,"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나. 심사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¹⁰⁶⁾

FIRRMA 제정 이전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미국 비즈니스의 지배권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M&A를 의미하는 지배적인 투자만이 CFIUS의 심사대상이었다. 즉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나 경영권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는 투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FIRRMA 시행으로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분야가 확대되고 권한이 강화되었다. FIRRMA 시행으로 CFIUS는 거래가 결과적으로 외국인에게 미국 비즈니스의 지배 권한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투자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FIRRMA 시행으로 신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TID)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비지배적 투자(non-controlling investments)까지 심의 대상으로 확대되었다(표 4-2 참고).

FIRRMA는 심사대상 투자(covered investment)에 대해 의무적 신고 요건을 규정하여 CFIUS의 심사 권한을 강화했다. 즉 FIRRMA 시행 전에는 대부분 투자자의 자발적 통지(신고)에 의해 CFIUS가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FIRRMA를 시행하면서 외국정부의 실질적 이해가 관련된 투자거래 및 핵심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부과되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 심사 제외국가(excepted foreign states)의 국적자가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제외 투자자(excepted investor)로 인정되는 경우에 FIRRMA에 따른 CFIUS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¹⁰⁷⁾ 2021년 11월 10일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영국 3개국이 2022년 2월 13일부터 제외국가로 인정될 것이 확정되었고, 추가 제외국가에

106) KOTRA 해외시장뉴스, 「미국 - 국가 - 지역정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김민배(2020),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과 특징」,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나수연, 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발효와 미국의 대중투자규제」.

107) White & Case(2020. 1. 22), 「CFIUS Finalizes New FIRRMA Regul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대해서는 CFIUS가 검토를 거쳐 2022년 2월 13일 결정할 예정이다.¹⁰⁸⁾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제외국가 국적만을 단독 또는 복수로 보유한 외국인
- ② 제외국가의 정부기관
- ③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기업체(entity) 및 해당 기업체의 모기업
 - 제외국가 또는 미국의 법에 의거하여 조직되었을(Organized) 것
 - 주된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이 제외국가 또는 미국에 있을 것
 - 멤버의 75% 이상과 이사회 옵서버(observer)의 70% 이상이 미국 국적자이거나 제외국가의 국적만을 보유한 외국인일 것
 - 단독 또는 그룹으로 10% 이상의 의결권, 경제적 이해(economic interest), 수익 관심(profit interest), 파산에 따른 재산분배권(asset-upon-dissolution interest)의 보유, 기업 지배권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a) 제외국가의 국적만을 소유 (b) 제외국가의 정부기관 (c) 제외국가 법에 의거하여 조직되고 주된 사업장이 제외국가 또는 미국에 있는 경우
 - 최소예외소유권(minimum excepted ownership)을 외국인이 아니거나 상기 (a), (b), (c)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할 것

최소예외소유권은 해당 기업의 의결권, 수익권, 파산에 따른 재산분배권이 제외국가 또는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거래되거나 다른 형태의 기업체일 경우 최소 80% 이상의 의결권, 수익권, 파산에 따른 재산분배권을 의미한다.

108)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act Sheet: Proposed Regulations Modifying the Definitions of Excepted Foreign State and Excepted Real Estate Foreign St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표 4-2. FIRRMA의 주요 내용

1. FIRRMA 제정 배경·취지	· 기존 CFIUS 관할권을 벗어난 외국의 비지배적 투자 및 부동산 거래(미국사업에 대한)로부터 야기되는 국가안보 우려(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FIUS의 권한을 확대
2. 적용 범위·대상 추가 확대	·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데이터)와 관련한 미국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기타 투자)거래 · 외국의 미국 부동산 거래
3. 비지배적 투자의 범위·정의	· [1개 이상] 핵심기술의 생산, 디자인, 테스트, 제조·제작, 개발 관련 투자 *핵심기술: 수출통제개혁법(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형·기반 기술을 비롯한 기타 수출통제 및 기존 관련 규정에 의거한 특정 기술도 포함 · 핵심 인프라의 소유, 운영, 제조, 공급·서비스 관련 투자 *핵심 인프라: 통신, 유틸리티·에너지, 교통 등 · 미국 시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데이터) 관리, 수집 관련 투자 *민감한 개인정보: 국방 관련 인사·국가안보 관련 연방기관 종사자대상 정보(금융, 지리 위치, 의료보건 등에 관한 정보 포함)
4. 부동산 거래의 범위·정의	· 외국인의 사적 또는 공적 부동산의 매입, 임대, 양도 거래 *심의대상 부동산 거래: 항공 또는 항만 내 위치 또는 그 일부 시설, 국방시설 또는 국가안보와 민감한 미국정부 기관 시설·재산 인근 소재 부동산
5. 심의절차 강화 (의무적 신고 요건)	·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심의는 투자 당사자들의 자발적 신고로 개시. 그러나 FIRRMA 규정에 의거, 특정 투자거래의 경우 의무적 신고(통보)절차를 적용, 특히 핵심기술 관련 투자거래 및 외국정부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거래에 대해 의무적 신고 요건 부과

자료: 나수엽, 김영선(2020), p. 6.

다.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허가 절차¹⁰⁹⁾

미국의 외국인투자는 CFIUS의 심사·승인 절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시행된다.

1) 신고서 제출(declarations)

이 단계는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로 CFIUS 잠재적 세이프하버 레터(safe harbor letter)를 받기 위해 최대 5페이지의 간이신고

109)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CFIUS Overview,"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서(short-form declaration)를 제출하여 본 심사보다 짧은 30일간 심사를 받는 단계이다. 단 FIRRMA의 의무적 심사대상 투자는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잠재적 세이프하버 레터(potential safe harbor letter)를 받게 되면,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후 단계의 CFIUS의 심사를 받지 않고 해당 투자가 가능하다. 단 외국정부가 미국 비즈니스의 실질적 이해관계를 취득하고, 중요기술을 포함한 심사대상 투자 등 FIRRMA에 의무신고대상 거래의 경우, '31 C.F.R. §800.401'에 따라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CFIUS 심사 과정

투자자로부터 신고서를 접수한 CFIUS는 최대 45일간 해당 투자를 검토하며, 필요시 45일간 조사 또는 14일간 대통령의 검토를 진행할 수 있다. 투자자의 신고서가 모든 필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CFIUS 직원은 모든 CFIUS 에이전시에 해당 신고서를 배부한다. 검토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45일간 진행된다. CFIUS 에이전시는 Department of the Treasury(chair),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Commerce,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Energy,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of Science & Technology Policy이다. 필요시에 백악관의 Office of Management & Budget,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National Security Council, National Economic Council, Homeland Security Council도 참여 가능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사는 당해 투자에 대해 재무부 장관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 등 관련법에 의거해 국가안보 관련 검토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최대 45일간 해당 투자를 조사할 수 있다.¹¹⁰⁾ 대통령의

110) 관련법: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31 C.F.R. § 800.505 and §

검토는 조사 위원회가 당해 투자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을 요청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CFIUS의 조사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¹¹¹⁾

3) 외국인투자 안보심사기준

2007년 FINSA는 CFIUS가 특정 거래의 국가안보에의 영향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11개의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다. 이 중 5개 요소는 엑스플로리오조항에서부터 명시된 바 있으며 2007년 법개정을 통해 6개의 요소가 추가되었다(표 4-3 참고). 특히 2007년 FINSA는 핵심적인 기간시설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된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사의 발동을 의무화하였다. 핵심적인 기간시설은 미국에 불가결한 물리적인 또는 가상적인 체제와 자산으로, 이의 상실이나 파괴가 국가안전을 취약하게 하는 충격을 초래할 정도로 불가결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¹¹²⁾

2013년에 발표된 미국 대통령정책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21)은 미국 중요 기간시설 분야로 화학, 정보통신 상용시설(commercial facilities), 정보통신, 핵심 제조업, 댐, 방위산업기지, 비상시공급(emergency service), 에너지, 금융 서비스, 농식품, 정부시설, 보건 및 공중보건, 정보기술, 원자로 및 연관 재료·폐기물, 운송 시스템, 용수 및 폐수 시스템 등 16개의 산업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이후 CFIUS가 고려해야 할 요소 9개가 추가되었다. 이 요소들은 특별 관심대상 국가, 시장점유율, 기술적 우위, 국방 및 국가안보 비용에 미치는 영향, 범죄 또는 사기행위 조장, 사이버보안, 외국인투자자의 법률준수, 개인 식별 정보의 보안, 기타 민감한 정보의 보안 등이다.¹¹³⁾

802.505 CFIUS.

111) 관련법: section 6(c) of Executive Order 11858, and 31 C.F.R. § 800.508 and § 802.508 CFIUS.

112) FINSA, Section 1(a)(6).

113) Mays and Whitten(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표 4-3. CFIUS 국가안보 평가 11개 기준

구분	평가요소
1988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 목적의 국내생산 필요성 2. 국방 목적에 필요한 국내산업 역량 및 능력(인재, 제품, 기술, 원자재 및 기타 공급물자와 서비스 포함) 3. 외국인의 미국 내 산업 지배가 국가안전 목적 충족을 위한 미국산업 역량과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군사물품, 장비, 기술을 위험국에 판매할 잠재력 5. 미국 국가안전 연관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잠재력
2007년 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에너지 자원 포함 미국 핵심 기간시설에 대한 잠재적 국가안보에의 영향 2. 미국 핵심기술에 대한 잠재적 국가안보에의 영향 3.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인 경우 4.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의 경우 외국정부가 반테러, 무기 비확산, 수출통제에서 미국과 공조적 입장인지 여부 5. 에너지 및 여타 핵심 자원물자에 관한 장기적 수요 요건 6. 기타 대통령,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소

4) CFIUS 심사결과

투자자는 투자신고를 CFIUS의 검토, 조사, 평가 기간 중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CFIUS의 승인을 받아야 철회되며 CFIUS는 해당 투자 상황을 CFIUS에 계속 보고하게 하는 등 조건부로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자의 신고가 형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요청한 정보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신고를 거절할 수 있다.

CFIUS가 국가안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투자가 section 721을 준수하고 있다'고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에 세이프하버가 부여된다. 만약 CFIUS가 해당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투자를 중단시키고 당해 투자자와 발견한 안보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합의를 통해 조건을 찾으면 조건부로 투자를 허가한다. 그러나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 결정으로 회부한다.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본에 등록된 국내외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을 충족한 국내외기업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일본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3주 이내에 일본에 거주하는 대표자를 정하여 외국회사로 등기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¹¹⁴⁾

2021년 6월 2일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対日直接投資推進會議)는 일본정부가 2013~30년의 누적 대일직접투자액 80조 엔을 목표로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対日直接投資促進戰略)'¹¹⁵⁾을 수립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고 발표했다.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는 2014년부터 개최된 일본 내각부 회의로 대일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치 활동, 투자 안건 발굴, 관련 규제 개혁 등을 논의하는 기관이다. 내각부 경제재정정책 특무장관이 주재하고, 구성원으로 내각부 규제개혁 특무장관, 총무장관, 외무장관, 경제산업장관, 지방창생장관이 참여하며 필요시 관련 지식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한다.¹¹⁶⁾

114) 일본 회사법(会社法) 제817조 제11항, 제818조 제1항, 제933조 제1호, 제976조 제1호.

115) 内閣府, 「対日直接投資促進戰略(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6).

116) 内閣府, 「対日直接投資推進會議の開催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2020년 일본은 2013년에 세운 대일직접투자 목표액(35조 엔)을 달성한 후,¹¹⁷⁾ 2021년 6월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에서 기존 목표치를 약 2배 증액한 80조 엔을 2013년부터 2030년까지의 대일직접투자 누적 목표액으로 설정하였다.¹¹⁸⁾

일본정부는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을 통해 향후 인구 감소 시기의 경제성장, 지방 균형 발전, 경제안보를 목적으로 △ 디지털·그린 분야의 혁신 투자환경 조성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조성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협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2018년부터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분야에 외국인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8년 12월 정부조달대상 기업에서 중국계 화웨이와 ZTE의 5G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했고, 2020년 10월 정부가 관이 드론을 조달할 때 사이버보안 리스크가 낮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중국산 드론을 조달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가안보와 안전한 투자촉진을 위해 2019년 7월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이하 외환법)’을 개정하여 경제안보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사전심사 요건을 강화하였다. 2021년 1월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이도(国境離島) 등에 관한 토지 등의 이용 상황의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요토지이용규제법)’을 제정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2022년 4월부터 외국인의 토지 구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117) 2013년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대일직접투자금액은 39.7조 엔에 달함. 財務省, 「令和2年末現在 本邦対外資産負債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6).

118) 經濟産業省 「対内直接投資促進に係る施策情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2. 조세감면제도

가. 법인세 감면

일본은 법인의 종류, 사업개시일, 소득규모에 따라 15~23.4%의 법인세를 적용한다. [표 5-1]은 일본의 법인 종류에 따라 다양한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 800만 엔의 소득을 초과하는 보통 법인은 23.4%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반면 협동조합은 동일한 조건이라도 19%의 법인세를 낸다. 공익법인 역시 그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법인세가 부과된다.

표 5-1. 일본의 법인세

(단위: %)

구분				사업개시연도			
				'16.4.1 이후	'18.4.1 이후	'19.4.1 이후	
보통 법인	자본금 1억 이하 법인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적용제외 사업자	15	15	19	
			그 외 사업자			15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23.4	23.2	23.2	
	그 외 보통법인			23.4	23.2	23.2	
협동조합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15 (16)*	15 (16)*	15 (16)*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19 (20)*	19 (20)*	19 (20)*	
공익 법인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비영리법인	수익 사업 소득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15	15	15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23.4	23.2	23.2	
	공익법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15	15	15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23.4	23.2	23.2	
			그 외 공익법인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15	15	15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19	19	19
인격이 없는 사단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15	15	15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23.4	23.2	23.2		

표 5-1. 계속

(단위: %)

구분			사업개시연도		
			'16.4.1 이후	'18.4.1 이후	'19.4.1 이후
특정의료법인	연 JPY 800만 이하 소득	적용제외 사업자	15 (16)*	15 (16)*	19 (20)*
		그 외 사업자			15 (16)*
	연 JPY 800만 초과 소득		19 (20)*	19 (20)*	19 (20)*

* 협동조합 또는 특정의료법인이 연결모법인(連結親法人)인 경우의 세율.

자료: 国税庁, 「No.5759 法人税の税率」,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6)를 저자 번역.

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¹¹⁹⁾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지원제도로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국내기업형 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통해 스타트업의 신규 발행 주식을 일정 금액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격의 25%를 소득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기간은 2020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이다. 지원 대상은 주식회사, 상호회사,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 농림중앙금고, 신용금고, 신용금고연합회와 같은 일본법인 또는 대상 법인이 주체가 되는 CVC를 통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투자대상 스타트업은 다음의 아홉 가지를 만족하는 국내외 법인이다.

① 주식회사 ② 설립 10년 미만 ③ 미상장·미등록 ④ 사업에 착수했을 것 ⑤ 대상 법인과 오픈 이노베이션¹²⁰⁾ 실행 중 또는 실행 예정일 것 ⑥ 하나의 기업체가 보유한 주식이 50% 미만일 것 ⑦ 법인 외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1/3 초과할 것 ⑧ 유흥업·성

119)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促進税制. 経済産業省,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 促進税制」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5).

120)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대상 법인이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경영자원을 활용하여 높은 생산성이 전망 되는 사업 또는 새로운 사업 개척을 목표로 하는 영업 활동.

산업 제외 ⑨ 폭력단원이 임원 또는 사업을 지배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 요건은 5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예정으로 1건당 1억 엔 이상을 투자한 경우이고, 지원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1,000만 엔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 투자대상 스타트업이 해외법인인 경우는 5억 엔 이상의 자격이 되면 기업의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선정되었을 경우 1건당 25억 엔 한도로 취득한 스타트업 주식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지방거점강화세제¹²¹⁾

이 제도는 지방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쿄 23구에 본사가 있는 외국계 회사가 본사를 도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전형) △도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일본 본사 또는 연구소 등의 본사 기능을 확충하는 경우(확충형)에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제도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로는 특정 업무시설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며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하는 시설에 국한된다.

- 조사·기획, 정보처리, 연구개발, 국제사업, 기타 관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사무소
- 사무소 외의 시설로 연구개발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소
- 인재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수원

지원 내용은 ① 고용촉진 세액 공제 ② 설비투자 감세/오피스 감세 ③ 지방세 면세 또는 감세의 혜택이 주어진다.

121) 地方拠点強化税制. JETRO, 「政府のインセンティブ」,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9).

1) 고용촉진세액 공제¹²²⁾

고용촉진세액 공제의 경우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 당해 사업연도에 특정 업무시설에서 신규로 고용한 인원 중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1명당 이전형은 50만 엔, 확충형은 30만 엔
- 당해 사업연도 법인 전체의 신규 고용자에서 특정 업무시설의 신규 고용자를 제외한 인원에게 대해 1명당 이전형은 40만 엔, 확충형은 20만 엔
- [이전형 추가 공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당해 사업연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연도의 특정 업무시설에서 신규로 고용한 모든 인원에게 대해 1명당 40만 엔(단 특정 업무시설이 준지방활력향상지역(準地方活力向上地域)¹²³⁾에 있는 경우는 30만 엔)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2) 설비투자 감세/오피스 감세(オフィス減税)¹²⁴⁾

이전형의 경우 취득가액 2,000만 엔(중소기업은 1,000만 엔) 이상의 특정 사업시설의 건물, 건물의 부속설비, 구축물의 취득가액에서 특별상각 25% 또는 세액 공제 7%를 적용해준다. 확충형의 경우는 취득가액 2,000만 엔(중소기업은 1,000만 엔) 이상의 특정 사업시설의 건물, 건물의 부속설비, 구축물의 취득가액에서 특별상각 15% 또는 세액 공제 4%를 적용해준다. 단 세액 공제를 선택하면 이전형, 확충형 모두 당기 법인세액 등의 2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122)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雇用促進計画提出の手續きバンフレット(令和2年度以降に適用年度が開始する場合)」, pp.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9).

123) 준지방활력향상지역: 킨키권(近畿圏)과 중부권(中部圏)의 중심부.

124)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 「(バンフレット 1) 地方拠点強化税制のご案内」, pp. 3~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9).

3) 지방세 면세 또는 감세

이전형의 경우는 이전 지역에 따라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 면세 또는 감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라. 연구개발세제¹²⁵⁾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업무상 실시하는 시험연구 비용의 2~14%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을 독려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국가성장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연구란 사물, 기능, 현상 등에 대해 새로운 지견을 얻거나 기존의 지견을 응용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창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수집·분석 등의 행위 중 자연과학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신제품 개발, 신기술의 개선·개발·발명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 중인 제품과 기술의 개선·개발·발명도 해당한다.¹²⁶⁾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대기업(일반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반강화형), 그리고 기관 간의 공동실험(오픈 이노베이션형)이 포함된다. 지원되는 내용은 법인세가 공제되는데, A 30%, B 10%, C 10% 합산으로 최대 법인세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표 5-2, 5-3 참고).

125) 研究開発税制. 経済産業省, 「研究開発税制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0).

126)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제10조 제8항 제1호의1.

표 5-2. 일본 연구개발세제 법인세 공제 혜택(일반형, 중소기업기반강화형)

유형	공제율 구분		기본공제 한도
	시험연구비 증감률*	공제율	
일반형	-37% 미만	2%	법인세액의 25% 또는 30%** (A) + 추가 10%*** (B)
	-37% 이상 +9.4% 이하	$10.145\% - (9.4\% - \text{시험연구비 증감률}) \times 0.175$	
	+9.4% 초과	$10.145\% + (\text{시험연구비 증감률} - 9.4\%) \times 0.35$ ※ 최대 14%까지	
중소기업 기반강화형	+9.4% 이하	12%	
	+9.4% 초과	$12\% + (\text{시험연구비 증감률} - 9.5\%) \times 0.35$ ※ 최대 17%까지	

주: * 시험연구비의 증감률: (당해 시험연구비 - 지난 3년간 개시한 시험연구비의 평균액)/지난 3년간 개시한 시험연구비의 평균액.

** 코로나19 이전(2020년 2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과 비교하여 매상이 2% 이상 감소하였으나 시험연구비가 증가한 경우.

*** 당해 사업연도 및 지난 3년의 사업연도의 매상 평균액에서 시험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중소기업은 9.4%)를 초과하는 경우.

자료: 經濟産業省 産業技術環境局,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3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pp. 10-12 자료를 저자 재구성.

표 5-3. 일본 연구개발세제 법인세 공제 혜택(오픈 이노베이션형)

유형	공제율 구분		기본공제 한도
	공동연구기관 유형	공제율	
오픈 이노베이션형	특별연구기관 등	30%	법인세액의 10% (C)
	대학 등		
	신사업개척사업자 등*	25%	
	성과활용촉진사업자		
	중소기업	20%	
	기타 민간기관 등*		
	기술연구조합**		
중소기업 (지식재산권사용료)	20%		

주: * 기초·응용연구 및 지식재산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에 한정함.

** 기술연구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수행하는 공동시험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함.

자료: 經濟産業省 産業技術環境局,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3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pp. 10-13 자료를 저자 재구성.

마. 인재 확보 등 촉진세제¹²⁷⁾

이 제도는 연구개발을 위한 인재 확보를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규 채용과 인재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원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대상의 기본 요건은 신규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도 대비 2%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신규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이란, 국내 사업소에서 새로 고용한 고용보험법상 일반피보험자에 대해서 고용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지급한 봉급, 급여, 임금, 세비(歳費), 상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피보험자란 지주회사(支配関係がある法人)에서 이동한 자로서 해외에서 이동한 자는 제외된다. 교육훈련비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다.

일본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은 법인세 및 소득세액의 20%를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준다.

- [기본 요건 충족] 신규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의 15%
- [추가 요건 충족] 신규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의 20%

바. 중소기업 소득확대촉진세제¹²⁸⁾

이 제도는 전년대비 급여 등을 인상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법인세액 또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원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 사이에 개시하는 사

127) 人材確保等促進税制. 経済産業省, 「人材確保等促進税制」,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0).

128) 中小企業向け所得拡大 促進税制. 経済産業省, 「中小企業向け所得拡大促進税制」,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2. 10).

업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에 해당되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 [기본 요건]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대비 1.5% 이상 증가한 경우이며, 여기서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은 적용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모든 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의 지급액을 의미한다.
- [추가 요건] 고용자 급여 등 지급액이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하고, 다음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 교육훈련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中小企業等經營強化法)에 의거하여 인정받은 경영력 향상 계획에 따라서 생산성이 향상된 것을 증명한 경우

상기 조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액의 20%를 한도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해준다.

- [기본 요건 충족] 고용자 급여 등의 지급금액 증가분의 15%
- [추가 요건 충족] 고용자 급여 등의 지급금액 증가분의 25%

사. DX 투자촉진세제¹²⁹⁾

이 제도는 주무대신에게 인정받은 전사적(全社的) 차원에서 수립한 디지털 전환(DX) 계획을 기반으로 DX 실현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이다. 지원기간은 2022년 말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매출액의 0.1%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의 대상 설비비용에 해당한다. 여기서 대상 설비란

① 소프트웨어 ②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에 드는 초기 비용의 감가상각충당금

129) DX投資促進税制. 經濟産業省(2020. 2. 12), 「令和3年度(2021年度) 經濟産業關係 税制改正について」, pp. 6~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經濟産業省, 「DX投資促進税制Q&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③ 기구·비품(①, ②번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경우 한정) ③ 기계·장치(그룹 외 법인과 데이터를 연계 및 공유하는 경우)에 들어가는 설비를 의미한다.

- [디지털 요건] ① 데이터 연계 및 공유 ② 클라우드 기술 활용 ③ 정보처리 추진기구가 심사하는 'DX인증'을 취득
- [기업 혁신 요건] ① 이사회 결의문 등 전사적 의사결정에 기초할 것 ② 일정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전망될 것

이 제도에서 지원되는 세액 공제대상은 300억 엔까지로 제한되며, 후술하는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의 공제금액과 합하여 법인세액의 20%까지 공제된다.

- [그룹 회사형] 세액 공제 3% 또는 특별상각 30%까지 공제되며 여기서 그룹 회사란 모회사, 자회사, 모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해당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 [외부 데이터 활용형] 세액 공제 3% 또는 특별상각 30%까지 공제되며, 여기서 외부 데이터 활용형이란 외부 센터, 고객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그룹 외 법인 연계형] 세액 공제 5% 또는 특별상각 30%

아. 탄소중립 투자촉진세제¹³⁰⁾

이 제도는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이다. 지원 기간은 2023년 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투자를 지원대상 투자금액 500억 엔을 한도로 지원한다. 단 공제한도는 전술한 DX 투자촉진세제의 공제금액과 합하여 최대 법인세액의 20%이다.

130) 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向けた投資促進税制. 経済産業省(2020. 2. 12), 「令和3年度(2021年度) 経済産業関係 税制改正について」,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탈탄소 효과가 큰 제품의 생산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소 효과가 크고 새로운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지원해준다. 지원은 최대 10% 세액 공제 또는 50% 특별상각이 된다.

생산공정 등의 탈탄소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설비 도입의 경우에는 사업소의 탄소생산성(부가가치액, 에너지에 기인한 CO₂ 배출량)을 1% 이상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장치, 기구·비품, 건물의 부속설비, 구축물에 지원된다. 탄소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된다.

- 3년 이내 10% 이상 향상: 세액 공제 10% 또는 특별상각 50%
- 3년 이내 7% 이상 향상: 세액 공제 5% 또는 특별상각 50%

3. 현금지원제도

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 보조금¹³¹⁾

이 제도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드러난 일본 공급망의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내 생산거점을 정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산거점의 집중도가 높거나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소재·부품·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22년 예산에 3차 지원이 예정되지는 않았으나 1, 2차 모두 추가경정예산¹³²⁾으로 집행되었고 지원 계기인 코로나19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추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본 자료를 작성한다. 지원 내용은 2차 지원기준이다. 대상 사업에 대한 모집 및 사업 기간은¹³³⁾ 다음과 같다.

131) サプライチェーン 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 経済産業省,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 2次公募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132) 2020년도 1차 및 2차 추경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산규모는 1차 지원 2,200억 엔, 2차 지원 2,108억 엔이었음. 財務省, 「一般会計歳出予算補正(第1号)各目明細書, 経済産業省」,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財務省, 「一般会計歳出予算補正(第3号)各目明細書, 経済産業省」,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 1차: 2020년 5월 22일~7월 22일(146건 선정, 2,478억 엔 규모)
- 2차: 2021년 3월 12일~5월 7일(151건 선정, 2,095억 엔 규모)

선정된 사업 시행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기본으로 하되, 대규모 투자의 경우 4년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공장 또는 물류 시설에서 사용하는 설비, 기계장치로 대상품 사업자(A형, B형)와 대상품 관련 사업자(중소기업특별사업형)에 따라 요건과 지원규모가 상이하다. [표 5-4]에 일본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지원 요건과 규모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표 5-4. 일본의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지원 요건 및 규모

유형	요건		대상 금액(JPY)별 보조금 지원비**
	대상 사업	필수 요건	
A형	생산거점이 집중된 물품의 공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생산거점 정비 사업	① 생산거점의 해외집중도가 국내집중도의 50% 이상인 경우	대기업 ·30억 이하: 1/2 ·30억~100억: 1/3 ·100억~200억: 1/4
		②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높은 소재·부 품·제품*	
		③ 최첨단 기계장치일 것	
B형	감염병 및 의료대응에 필수불가결한 물품의 생산거점 정비 사업	공장	중소기업 ·30억 이하: 2/3 ·30억~100억: 1/2 ·100억~200억: 1/4 ※ 한도: 100억
		물류시설	

133) 經濟産業省,「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の採択事業が決定され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經濟産業省,「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2次公募)の採択事業が決定され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표 5-4. 계속

유형	요건		대상 금액(JPY)별 보조금 지원비**
	대상 사업	필수 요건	
중소 기업 특별 사업	생산거점이 집중된 물품의 공급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생산거점 정비 사업	① 중소기업일 것	2/3 ※ 한도: 5억
		② A형의 1번 또는 2번의 요건을 갖춘 소재·부품·제품의 공급망과 관련하여 당해 대상품의 생산 등을 하는 사업자와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③ 대상품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대체 불가능한 소재·부품·제품의 생산 등을 하는 경우	
		④ 대상품 생산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⑤ 부품 등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투자일 것	

주: * 디지털 관련: 반도체 관련 물품(메모리, 파워반도체, 파워디바이스, 로직반도체, 센서, 전자회로기판, 반도체 제조 장치, 반도체 부소재 등), 차세대자동차 관련 물품(차량용 통신기기), 로봇 부품, 드론 부품, 디스플레이, 광섬유 부품 등.

녹색 산업 관련: 전동차관련 물품(차량용 전지, 모터 등), 해상 풍력발전 관련(나셀, 블레이드, 허브, 타워, 기초(foundation), 발전기 등의 부품 등), 항공기 관련(엔진 부품, 날개의 구성품 등), 고효율 가스 터빈 부품,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 금액은 JPY 기준이며, 구간별 보조금은 누적 제공됨. 예를 들어 대기업 200억 엔 규모의 경비가 지원대상으로 채택된 경우 (30억 엔 x 1/2) + (70억 엔 x 1/3) + (100억 엔 x 1/4)이 되어 총 63.3억 엔의 보조금이 지급됨.
자료: 經濟産業省,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概要説明資料(2次公募)」, p. 3 자료를 저자 번역.

나. 그린이노베이션기금¹³⁴⁾

이 제도는 일본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실현하기 위해 2020년 3차 추가 경제예산에서 2조 엔을 출원하여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에 조성한 기금으로 큰 정책 효과가 기대되나 장기 지원이 필요한 그린 성장 분야의 초기단계부터 약 10년간 지

134)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 經濟産業省,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經濟産業省(2021. 3. 3),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NEDO,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기간은 연구개발부터 사회 실현까지 최장 10년 동안이고 기금 폐지 시기는 미정이나, 지원받은 프로젝트의 실시기한은 2030년까지이다. 프로젝트 규모는 기존 연구개발 프로젝트 평균액 이상(약 200억 엔 이상)이며 벤처기업 등의 활약이 예상되는 경우 소규모 프로젝트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산업: 해양풍력·태양광·지열 산업, 수소·연료 암모니아 산업, 차세대 열에너지 산업, 원자력 산업
- 운송·제조업: 자동차·축전지 산업, 반도체·정보통신업, 선박업, 물류·인류·토목 인프라 산업, 식료품·농림수산업, 항공기 산업, 탄소 재활용·재료 산업
- 가정·오피스 산업: 주택·건축물 산업, 차세대 전력 관리 산업, 자원순환 관련 산업,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업

동 제도의 대상 사업자 선정 원칙은 기업과 수익사업 수행자이다. 예외적으로 원칙 대상자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사회 실현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술조합(단, 재위탁업체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다.

- 외국기업과의 공동 연구 제한 사항
 - ① 국내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일 것
 - ② 개발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주의할 것
 - ③ 지원을 통해 취득한 지식재산을 NEDO와 공유하고, 당해 외국기업과 NEDO의 지분 합계의 50% 이상을 NEDO에 귀속할 것

이 제도의 지원 내용은 위탁사업의 경우 위탁비 형태로 전액을 지원한다. 단 사업을 통해 취득한 설비 일체와 지원사업의 지식재산의 일부는 국가에 귀속된다. 위탁 사업의 조건은 ① 사업화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등 사업성을 예측할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② 실시자 자신의 이익이 적고 협조·기반 영역

의 연구, 평가, 분석, 조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보조 사업의 경우는 일부만 지원되며, 사업을 통해 취득한 설비, 지식재산은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보조 사업의 조건은 사업자의 예상 이익이 비사업자보다 큰 연구개발 사업이어야 한다. 지급 결정된 보조금은 분야별 실무그룹(WG)의 심의결과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맞춰 분배한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사업 중지, 위탁비 일부 반환, 국가 부담비율이 변경될 수 있다.

선정은 다음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선발한다.

- CO₂ 저감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 잠재력
- 기술적 난이도, 실용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
- 잠재적인 시장 성장성·국제경쟁력
- 우대 사항: 중소기업, 벤처기업과의 연계 여부

다. SBIR 제도¹³⁵⁾

이 제도는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따라 1999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중소기업 등이 진행하는 연구개발에 대해서 연간 약 400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해당 연구개발 결과의 상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0년 6월 24일 개정되고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창출의 활성화 관련 법률(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創出の活性化に関する法律)’에 따라서 ‘지정 보조금’을 신설하여 정부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개발과제에 대해 3단계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존 보조금의 명칭을 ‘특정 신기술 보조금’으로 변경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¹³⁶⁾

- [연구자] 다음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135)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制度.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SBI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136) 内閣府, 「指定補助金等の交付等に関する指針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 ① 활성화법 제2조 제14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 ②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려고 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연
구자 등)

· [연구개발 과제] 일본의 정책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연구개발과제로
서 다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연구

- ① 혁신적인 신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영역
- ② 미래에 실용화가 기대되는 영역
- ③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

· 연구개발을 3단계로 구분하여 Phase 1은 대상을 공개 모집하고, Phase 2
부터는 하위단계 사업 중 [표 5-5]의 조건을 기준으로 선발

표 5-5. 일본 SBIR 제도의 지정 보조금 대상 연구의 단계별 기준

(단위: JPY)

단계	내용	사업기간	사업 규모
Phase 1	과학기술적 실현가능성, 기술 또는 상업적 잠재성 판단을 위한 실증 연구로서의 개념실증(POC), 타당성 조사(FS)	1년 이내	직접경비 300만~1,500만
Phase 2	Phase 1에서 얻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약 1~2년	1,000만~수억
Phase 3	Phase 2에서 개발된 기술, 제품 등의 상업화 준비	사업에 따라 상이	미설정*

주: *정부조달, 기술조사사업, 민간기업과의 매칭 등을 통한 지원.

자료: 内閣府, 「指定補助金等の交付等に関する指針について」, p. 3 자료를 저자 번역

동 제도의 지원 내용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직접경비, 간접경비, 성과의 사업
화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된다. 간접경비는 연구개발의 관리 비용, 특히 관련 경
비 등이며, 성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시제작 비용, 시장조사 비용, 전시회 출
전 비용 등이다.

변경된 이름인 특정 신기술 보조금¹³⁷⁾은 2021년 예산에서 9개 중앙부처가 총 96개, 총 약 2,199억 엔 규모의 보조금을 계획하였고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세부 내용은 각 보조금마다 상이하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청 양식, 심사 프로세스 등의 절차를 통일하고 있다.

아래 [표 5-6]은 일본 SBIR 제도의 특정 신기술 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부처별로 지원 내용이 세분화되어 있고 지원규모도 상이하다.

표 5-6. 일본 SBIR 제도의 특정 신기술 보조금 목록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내각부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 중 · 재료 개발 시스템에 따른 재료 관련 위탁금 · IoT 사회 에너지시스템 관련 위탁비	170.1
	국립연구개발법인 의약기반·건강·영양 연구소	SIP 중 · AI 병원의 진단 고도화·치료시스템 관련 위탁비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SIP 중 · 스마트 바이오 산업·농업 기반 기술 관련 위탁비	
	국립연구개발법인 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SIP 중 ·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의 기반 기술 관련 위탁비 · 물리적 공간의 디지털 데이터 처리 기반 관련 위탁비 · IoT 사회에 대응하는 사이버·물리적·보안 관련 위탁비 · 자율주행(시스템 및 서비스 확장) 관련 위탁비	

137) 内閣府(2021. 6. 18), 「令和3年度特定新技術補助金等の支出の目標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3).

표 5-6. 계속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총무성	총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파 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 전략적 정보통신 연구개발 추진 사업 관련 위탁비 · 소방·방재 과학기술 연구추진 제도 관련 위탁비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등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 글로벌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 글로벌 양자암호 통신망 구축을 위한 위성양자암호통신의 연구개발 추진 관련 위탁비 · 다중언어 번역기술의 고도화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170.0
	국립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장벽 제거 통신·방송 의무 제공 및 개발 추진 조성금 	
문부과학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뇌와 마음 연구추진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 의료 분야 연구성과 전개 사업 중 산학연계 의료 이노베이션 창출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 의료 분야 연구성과 전개 사업 중 첨단 계측분석기술·기기개발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121.4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 전개 사업 중 연구성과 최적 전개 지원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 연구성과 전개 사업 중 대학의 신산업 창출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립 지원기기 등 개발 촉진 사업 관련 보조금 	6.5
	국립연구개발법인 의약기반·건강·영양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귀병 대응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제품 등 제품 시험 연구 조성금 · 특정 용도 의약품 시험연구 조성금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 연구추진 사업 위탁 프로젝트 연구 관련 위탁비 · 스마트 수산업 추진 사업 중 ICT를 이용한 어업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 양식업 성장 산업화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 내수면 어장·자원 관리 종합 대책 사업 중 효과적인 외래 어종 억제 관리기술 개발 사업, 첨단기술을 활용한 민물 가마우지 피해 대책 개발 사업, 환경 수용력 측정 방법 개발 사업 및 자원 회복을 위한 종자 육성·방류 방법 검토 사업과 관련한 위탁비 · 뱀장어종의 상업화를 위한 대량생산 시스템 실증 사업 관련 위탁비 	87.1

표 5-6. 계속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농림수산업성	농림수산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어, 송어 등 양식 대상 자원 대책 사업 관련 위탁비 · 어장 환경 개선 추진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농림수산업 분야의 첨단기술 전개 사업 중 연구개발 위탁 사업 및 현지 실증 연구 위탁 사업 관련 위탁비 · 농축수산물 안정 공급을 위한 포괄적 Regulatory Science* 연구추진 위탁 사업 관련 위탁비 · 환경 규제 적응형 냉동기술 개발 실증 사업 관련 보조금 · 방사능 조사 연구 위탁 사업 중 '농림 생산 환경에서 방사성 핵종의 농도 변동 요인과 동태 해명' 관련 위탁비 · 방사성 물질 측정 조사 위탁 사업 관련 위탁비 	87.1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업 가속화 실증 프로젝트 관련 위탁비 · 지식 축적과 활용의 장(場)**의 이노베이션 창출 추진 사업 중 이노베이션 창출 강화 연구추진 사업 관련 위탁비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국제표준화 가속 사업 관련 위탁비 · 무인 자동차 등 선진 MaaS 실장 가속화 추진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우주산업 기술정보 기반 정비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 · 전통공예품 생산 지원 보조금 · 전략적 기반 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 상업·서비스 경쟁력 강화 연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 지역 부흥 실용화 개발 등 촉진 사업 관련 보조금 · 차세대 소프트웨어 플랫폼 실증 사업 관련 보조금 · 장인 산업(ものづくり)·상업·서비스업 고도 연계 촉진 사업 관련 보조금 	1,485.6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의료 분야의 문샷(moon shot)형 연구개발 등 사업 관련 위탁비 · 의학·공학 연계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의료기기 등 선진 연구개발·개발체제 강화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재생의료·유전자 치료의 산업화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표 5-6. 계속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경제산업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련 위탁금 · 수송기기의 근본적 경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구조재료 등의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금 · 차세대 인공지능·로봇 핵심기술 개발 관련 위탁금 · 차세대 인공지능·로봇 핵심 통합 기술 개발 관련 위탁금 · 에너지·환경 분야 중장기적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신기술 선도 연구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 수소 에너지 제·저장·이용 등에 관한 선진적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 로봇·드론을 활용한 에너지 절약 사회 실현 프로젝트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우주산업 기술정보 기반 정비 연구개발 관련 보조금 · 시칩 개발 가속을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 사업 관련 보조금 · 고효율·고속처리 시칩·차세대 컴퓨팅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 화학연료의 배출 제로를 위한 바이오 제트 연료·연료 암모니아의 생산·이용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위탁비 및 보조금 · 태양광 발전 도입 가능성 확대 등을 위한 기술 개발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초고압 수소 기술 등을 활용한 저비용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위탁비 및 보조금 · 차세대 화력발전 기술 개발 사업에 관한 위탁비 및 보조금 · 신생산 창출을 위한 신기술 선도 연구 프로그램 관련 위탁비 · 지열발전 및 지중열 등 도입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중 차세대 지열발전 기술 개발 관련 위탁비 · 지열·지중열 등 도입 확대 기술 개발 사업 중 지열발전 도입 확대 관련 기술 개발 및 재생 에너지열 이용 비용의 저감기술 개발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자원순환 시스템 고도화 촉진 사업 관련 위탁금 · 차세대 전동항공기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의 위탁비 · Connected Industries 추진을 위한 협동 영역의 데이터 공유·AI 시스템 개발 촉진 사업 관련 보조금 · 의료기기 등에 대한 선진적 연구개발·개발체제 강화 사업 중 과제해결형 복지용 도구 실용화 개발 기술 사업 관련 보조금 	1,485.6

표 5-6. 계속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경제산업성	국립연구개발법인 에너지·산업기술중 합개발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 기술 연구개발·사회 도입 촉진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 · 풍력발전 등 기술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풍력발전 등 도입 지원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신에너지 등의 Seeds 발굴·사업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탄소순환사회에 공헌하는 셀룰로오스 섬유(Cellulose NanoFiber)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의 위탁비 및 보조금 · 차세대 복합재 창조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항공기 엔진용 재료 개발·평가 시스템 기반 정비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알루미늄 고품량 소재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보조금 · 에너지 절약 일렉트로닉스 제조 기반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 Carbon Recycling 실현을 가속하는 바이오 제품 생산 기술 개발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목질(木質) 바이오매스 연료 등의 안정적·효율적 공급 및 이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한 위탁비 및 보조금 ·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초고압 수소 기술 등을 활용한 저비용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1,485.6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열·지중열 등 도입 확대 기술 개발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전국중소기업단체 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조합 등 과제 대응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 	
국토교통성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운수 기술 개발 추진 제도 관련 위탁비 · 건설 기술 연구개발 조성 제도 관련 보조금 · 주택·건축생산성 향상 촉진 사업 중 주택생산성 기술 이노베이션 촉진 사업 관련 보조금 · 해양자원 개발 관련 기술 고도화 연구개발비 보조금 	5.1

(단위: 억 엔)

담당부처	지급처	보조금 명칭	2021년 예산
환경성	환경부	· 탄소 배출 감소 강화 유도형 기술 개발·실증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환경 연구 종합 추진비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환경 스타트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 위탁비 및 보조금	53.3
방위성	방위성	· 안전보장기술 연구추진 제도 관련 위탁비	99.4

주: * Regulatory Science: 과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결정된 행정 정책.

** 지식 축적과 활용의 장(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입하여 혁신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상품과 사업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농림수산성이 발족한 산업계·학계·정부 간 협의체를 의미함.

자료: SBIR, 「SBIR制度における特定新技術補助金等のリスト」, pp. 2~6; 内閣府, 「令和3年度特定新技術補助金等の支出の目標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 p. 8의 자료를 저자 재구성.

4. 입지지원제도

일본의 특구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지정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의 특구(구조개혁특구, 종합특구)와 중앙정부가 지정하여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암반규제(岩盤規制)¹³⁸⁾ 타파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국가전략특구로 구분된다.

가. 구조개혁특구¹³⁹⁾

구조개혁특구는 2002년 12월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정부 규제를 타파하여 지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특

138) 관련 기관 또는 업계의 거센 저항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의미함.

139)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構造改革特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2021), 「構造改革特別区域基本方針(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정 지역에 설립하였다.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방 공공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특례조치 및 관련 사업을 특구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 ① 지방 공공단체·민간사업자의 규제 완화 특례조치 제안
- ② 지방창생추진사무국과 각 중앙부처 간에 조정을 통해 특례 실시 항목 결정
- ③ 지방 공공단체가 특례를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인증 신청
- ④ 중앙정부에서 특구 계획으로 인정
- ⑤ 지방 공공단체·민간사업자가 특례를 활용하여 사업 실시
- ⑥ 중앙정부의 평가·조정위원회가 특례조치에 대해 평가(전국 확대, 특구 한정 존속, 보완, 시정, 폐지)

나. 종합특구¹⁴⁰⁾

종합특구는 2011년 6월 공포된 종합특별구역법(総合特別区域法, 이하 종합특구법)에 의거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분야를 정하여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세제·재정·금융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특구를 의미하며, '국제전략 종합특구'와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종합특구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부 간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금융기관 등 관련 민간단체로 구성된 지방협의체가 설치되어 특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계획 및 승인 등 특구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협업을 한다.

국제전략 종합특구는 일본의 경제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 기능을 집중한 특구로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7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① 홋카이도 푸드 콤플렉스 ② 츠쿠바 국제전략종합특구(과학기술 기반 라이프 및 그린 혁신) ③ 도쿄 아시아 헤드쿼터 ④ 게이힌 해안지역 라이프 이노베이션 ⑤ 아시아 No.1 항공

140)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総合特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우주생산 클러스터 ⑥ 칸사이 혁신 국제전략 종합특구 ⑦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특구가 그것이다.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는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선정한 특구로 2021년 4월 기준 총 23개 특구를 운영 중(지정된 특구 총 41개 중 18개 해제)이다.

그림 5-1. 일본의 종합특구(국제전략, 지역활성화)



주: 해제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1, 2, 4, 5, 6, 9, 10, 17, 19, 21, 22, 23, 25, 29, 31, 32, 36, 39.
 자료: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総合特区一覧」; 「総合特区制度の概要」(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8).

종합특구는 종합특구법에 따라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규제특례조치, 세제·행정·금융지원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조치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해당 지방에서만 실시하여 특구마다 특례조치가 상이하다. 예를 들면 그린아시아 국제전략 종합특구의 경우, 2011~19년 사이에 후쿠오카현이 65건(47억 엔), 기타큐슈가 194건(58억 엔), 후쿠오카시가 238건의 지원금을 지원하

였고, 당해 지자체 3곳이 지원한 부동산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건수는 총 88건에 달한다.¹⁴¹⁾

국제전략 종합특구는 ① 경제 활성화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이다. 국제전략 종합특구는 환경보호, 의료, 산업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되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다.¹⁴²⁾ 먼저 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기계·장치(취득가액 2,000만 엔 이상), 개발연구용 기구·설비(취득가액 1,000만 엔 이상), 건물·부속설비, 구축물(취득가액 1억 엔 이상) 등에 한해 지원한다. 특별상각률로 취득가액의 34%(건물은 취득가액의 17%)가 적용된다. 법인세 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 당기 법인세액의 20%를 한도로 취득가액의 10%(건물은 취득가액의 5%)까지 공제를 해준다. 특구 내 기업들이 설비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법인 지정일로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허용된다. 재정 지원은 관계부처의 예산을 기본 재원으로 사용한다. 추가적으로 종합특구추진 조달비를 활용(2021년도 예산 500만 엔)하기도 한다. 금융지원은 5년간 0.7% 이내의 이자보조금제도를¹⁴³⁾ 시행한다. 2020년도 예산은 4억 8,000만 엔이었다.

141)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総合特区ベストプラクティス事例集(2021年4月作成)」,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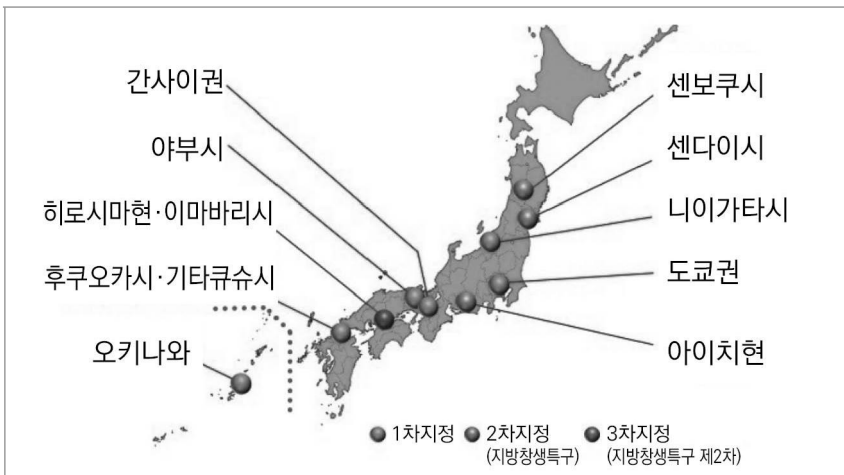
142)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総合特区税制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43) 국가전략특구 계획에 등재되고 내각총리대신이 인정한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 중소·벤처 기업 등이 국가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당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에 예산 범위 안에서 이자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다. 국가전략특구¹⁴⁴⁾

국가전략특구는 2013년 아베 정권 때 제정된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따라 설치한 특구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구조개혁특구보다 더 강력한 규제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세계 1위 수준의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전략특구에서 실시되거나 제안된 특례조치는 특구에서 영향력과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총 48건이 있다.¹⁴⁵⁾ 예를 들면 도심 공원 안에 보육원 설치 금지 완화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2021년 11월 4일 기준으로 총 10개의 국가전략특구에서 총 393개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¹⁴⁶⁾

그림 5-2. 일본의 국제전략특구 및 특구별 주요 사업



자료: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国家戦略特区の指定区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44) 首相官邸, 「国家戦略特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45)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全国措置」,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46)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区域計画の認定状況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국가전략특구의 집중 분야는 도시재생, 창업, 외국 인재, 관광, 의료, 간호, 보육, 고용, 교육, 농림수산업, 미래기술·규제 샌드박스 등이다. 국가전략특구의 지원 내용은 규제개혁조치, 세제 혜택, 이자보조금 제도 등 다양하다. 우선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특례조치제정(特例措置の創設)’ 과정을 거쳐 암반조치를 타파하고, 이를 통해 수립된 조치는 ‘개별사업인증(個別の事業認定)’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례조치 제정은 먼저 지자체 또는 사업자가 특례 제한→특구 실무그룹이 조사·검사→장관급 심의를 실시하여 특례 제정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개별사업인증의 경우는 사업자 공모→지자체, 사업자, 내각부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안 작성→장관급 심의를 거쳐 특례 활용 사업으로 총리대신이 승인한다.

세제 혜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된다.¹⁴⁷⁾

1) 설비투자촉진세제

먼저 설비투자촉진세제는 국가전략특구의 규제특례대상 사업 또는 이자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취득가액 2,000만 엔 이상), 개발연구용 기구·설비(취득가액 1,000만 엔 이상), 건물·부속설비, 구축물(취득가액 1억 엔 이상)에 지원된다. 특별상각률로 취득가액의 45%(건물 등은 23%)가 공제되고, 법인세 공제율은 취득가액의 14%(건물 등은 7%)가 적용된다.

2) 소득 공제

소득 공제의 경우는 특구 안에 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5년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으로는 국가전략특구 규제특례대상 사업 중 의료, 국제, 농업, 특정 IoT와 관련한 사업, 새로운 가치나 경제·사회 변화를 창출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지원조건으로는 특구 안에 본사 또는 주요 사무소가 있을 것, 특구 밖의 사무소 종업원 수가 법인 상근 종업원 수 총합의 20% 이하일 것만 충

147) 内閣府, 「国家戦略特区の活用事例 -令和3年版-」, p. 2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축하면 된다. 지원금액으로 소득금액의 20%를 공제해준다.

3) 엔젤 세제

엔젤 세제(エンジェル税制)는 농업, 의료, 바이오 분야의 중소기업,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상업, 서비스업은 5인 이하)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은 농업, 의료, 바이오 분야로 한정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설립 5년 미만, 영업이익률 2% 이하의 기업만 해당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종업원 2명(상업, 서비스업은 1명) 이상 증가 조건이 추가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금액(800만 엔까지)과 총소득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2,000엔을 제외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공제한다.

4) 개발사업자 토지양도 특별세제

개발사업자 토지양도 특별세제는 특구 안에서 의료 및 국제 분야와 관련된 공익 시설·건물의 정비를 500㎡ 실시하는 자를 상대로 토지를 양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양도소득세 10%(통상 15%), 주민세 4%(통상 5%) 적용, 법인 중과세(양도차액의 5%) 적용이 제외된다.

5) 국가전략 민간 도시재생사업 특별세제

국가전략 민간 도시재생사업 특별세제는 특구 안에서 민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25%¹⁴⁸⁾를 할증하여 상각, 등록면허세 0.35%(통상 0.4%), 부동산취득세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48) 특정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는 50% 할증 상각하고, 등록면허세는 0.2%를 적용함.

6) 이자보조금제도

이자보조금제도¹⁴⁹⁾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제 경제활동 거점 형성에 기여하는 의료, 국제, 농림수산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는 금융기관이 최초 대출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 이율 0.7% 이내로 지원된다.

라. 부흥특구¹⁵⁰⁾

부흥특구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기초자치단체 227개)을 특정 피해구역으로 설정하여 각 지역의 피해 상황과 재건 방향성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을 부흥시킬 각종 특례를 원스톱으로 적용하는 특구이다. 부흥특구지역에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서 특구 입주기업에 세제 혜택, 이자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¹⁵¹⁾ 부흥특구에는 선택적 고용촉진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즉 다음 세 가지 중 1개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21년 4월 1일~2024년 3월 31일이다. 세 가지 선택 옵션은 먼저 ① 특별상각과 세액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 특별상각: 기계장치 50%, 건물 등 25%
- 세액 공제: 기계장치 15%, 건물 등 5%(단 세액의 20% 상당액까지)

지원은 특정 부흥사업 집중구역(特定復興産業集積区域) 안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

② 법인세 특별공제는 특정 부흥사업 집중구역 사업소에서 피해고용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단 세액의 20% 상당액까지만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피고용자는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에 해당한다.

149)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区支援利子補給金制度の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50) 復興庁,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の改正概要」,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151) 復興庁(2021. 4),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資料」, pp. 28~3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9).

- ㉞ 2011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특정피해구역 안의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자
- ㉟ 2011년 3월 11일을 기준으로 특정피해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

③ 신규 입지 촉진제제는 지정일부터 5년간 적립한 준비금도 손금액으로 인정(소득금액의 상당액까지만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특정 부흥사업 집중구역 안에 기계 또는 건물에 재투자를 실시한 사업연도에 대해 준비금 잔고를 한도로 즉시상각 처리도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특정 부흥사업 집중구역 안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특정 금액 이상의 투자¹⁵²⁾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흥특구의 지원 내용에는 연구개발 세제특례도 포함된다. 일반 상각한도액에 추가로 특정 부흥사업 집중구역의 연구개발용 자산 취득가액의 34%(중소기업은 50%)를 특별상각할 수 있다. 법인세액의 10%를 한도로 상기 특별상각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부흥특구에서는 지방세 균일과세 보전 특례도 주어진다. 지방 공공단체가 조례에 따라 특구 사업에 지방세 면제 또는 감세를 해준 경우, 2023년까지 해당 금액을 보전해준다. 보전대상 세금은 특정 부흥산업 집중구역에 투자한 사업자의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가 해당된다.

또한 부흥특구 지원 이자보조금 혜택도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특정 부흥추진계획에 기재된 사업¹⁵³⁾의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다.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152) 대기업: 지정받은 연도에 3억 엔, 중소기업: 지정받은 연도에 3천만 엔 또는 3년 동안 5천만 엔.

153)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구역법시행규칙(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施行規則) 제2조가 정한 사업으로 2021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① 질병·장애의 새로운 치료방법의 연구개발 또는 해당 연구결과의 기업화 등 의료와 관련된 기술 수준을 향상하거나 높은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
- ② 농림수산업 및 관련 사업의 본질을 강화하거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
- ③ 에너지 사용에 따른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과의 기업화, 에너지 절약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사업
- ④ 지구온난화의 대책, 재활용 촉진, 기타 지역의 환경보존과 관련된 사업
- ⑤ 신제품 개발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타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 ⑥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 ⑦ 화물 물류의 효율화, 원활화, 적정화와 관련된 사업
- ⑧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 ⑨ 지방 공공교통기관의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이 최초 대출금을 교부한 날로부터 5년간 이율 0.7% 이내로 지원한다.

마.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도시¹⁵⁴⁾

이 특구는 세계적인 일본형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구상된 제도이다. 2020년 7월 14일 선정된 도시로 국가 보조사업,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고 있다.¹⁵⁵⁾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도시는 글로벌 거점도시와 추진 거점도시로 나뉜다.

글로벌 거점도시는 스타트업·에코시스템 도쿄 컨소시엄, Central Japan Startup Ecosystem Consortium, 오사카·도쿄·효고현 고베 컨소시엄, 후쿠오카 스타트업 컨소시엄이 있다.

추진 거점도시는 삿포로·홋카이도 스타트업·에코시스템 추진협의회, 센다이 스타트업·에코시스템 추진협의회, 히로시마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 기타큐슈시 SDGs 스타트업·에코시스템 컨소시엄이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패키지¹⁵⁶⁾는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3단계(창출, 육성, 해외시장 진출)에 맞춰 '스타트업 지원 정부기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지원 정부기관 통합 플랫폼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9개 기관¹⁵⁷⁾이 MOU를 체결해 창설한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으로, 총 1,200억 엔 규모의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윈스톱으로 제

154) 스타트업·에코시스템 거점도시 内閣府, 「世界と伍する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形成」,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155) 内閣府(2020. 7. 14),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選定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156) 内閣府, 文部科学省, 経済産業省(2020. 7),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形成に向けた支援パッケージ」,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157) 2020년 7월 16일 시점,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농연기구(NARO), AMED, IPA, JST, NEDO,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JICA, JETRO가 참여함.

공하여 스타트업의 정보 수집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표 5-7]처럼 각 기관의 지원이 윈스톱으로 진행된다.

표 5-7.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패키지 예시

단계	지원 기관	지원 내용
창출	JST	·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대학의 벤처기업 설립 지원 ↓ 사업성과, 평가결과 공유
육성	NEDO	· 연구개발형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지원 ↓ 사업 내용, 해외진출 육공 공유
해외시장 진출	JETRO	· 현지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자료: 内閣府, 文部科学省, 経済産業省(2020. 7),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形成に向けた支援パッケージ」, p. 4 자료를 저자 번역.

스타트업, 벤처캐피털 코로나 대응 자금도 지원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대출형과 자본출자형이 있다.

대출형은 일본정책금융공고와 상공중금(商工中金)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로 최장 20년간 변제 없이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초기 3년간 0.5%, 4년 차부터 적자인 경우 0.5%, 흑자인 경우 2.6~2.95%를 적용한다. 자본출자형은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코로나 리바이벌 펀드(벤처 투자, 벤처캐피털 출자), 중소기업의 벤처캐피털 펀드(LP), 산업혁신투자기구(JIC)의 벤처 펀드를 스타트업에 제공한다.

바. 지역대상 대일직접투자 서포트 프로그램¹⁵⁸⁾

이 제도는 2018년 5월 내각부 산하의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결정되어 경제산업성과 JETRO를 사무국으로 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윈스톱 지원 프로그램이다.

158) JETRO, 「自治体への外国・外資系企業誘致活動支援」; 対日直接投資推進会議(2018. 5. 17), 「地域への対日直接投資サポートプログラム」(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14).

2018년 8월 말 24개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5번의 추가 지정을 통해 2021년 3월 5일 기준으로 총 30개 지방자치단체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¹⁵⁹⁾ 지원대상은 2021년 3월 5일 기준 30개 지방자치단체이다.¹⁶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 책정
- 외국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매칭
- 외국기업 유치 등에 기여하는 관계부처의 정책의 효과적 활용
- 규제 및 행정절차에 대해서 외국기업과 지자체에게 조언 제공

사. 기타 지원제도

1) 지역미래투자촉진 특례¹⁶¹⁾

이 제도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경제 견인사업(地域經濟牽引事業)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민관 연계형은 국가의 승인)을 받은 지역 사업가의 지역경제 견인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① 세제 혜택 ② 금융 지원 ③ 규제 완화 ④ 기타 지원 등이 있다.

159) 經濟産業省, 「地域への外国企業誘致をサポートする「地域への対日直接投資サポートプログラム」支援対象自治体を追加決定しました(東広島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160) 홋카이도, 홋카이도 삿포로시, 아사히카와 지역산업 활성화 협의회, 미야기현, 미야기현 센다이시,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츠크바시, 치바현, 카나가와현, 카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가노현 고모로시, 아이치현,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에현, 미에현 마츠사카시, 미에현 이가시, 교토부, 교토부 교토시, 오사카부 오사카시, 효고현 고베시, 와카야마현,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후쿠오카현 구루메시, 사가현 카라츠시, 쿠마모토현, 오키나와현.

161) 地域未来投資促進, 經濟産業省, 「地域未来投資促進法」; 經濟産業省, 「地域未来投資促進法に基づく支援措置」(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9).

가) 세제 혜택

세제 혜택은 취득가액의 최대 80억 엔까지 다음과 같이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특별상각으로 기계, 장비, 기구, 비품 등 취득가액의 40% 또는 50%를 적용해준다. 건물과 부속설비, 구축물 등은 20%의 특별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아울러 감가상각액이 한도보다 적은 경우, 다음 사업연도로 잔액 이월이 가능하다. 세액 공제 혜택도 주어지며, 기계, 장비, 기구, 비품은 4% 또는 5%까지 세제 혜택이 있고, 건물, 부속설비, 구축물은 2%까지 인정해준다. 세액 공제 혜택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액의 20%를 한도로 공제해준다.

나) 금융지원

금융지원의 경우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의 자금을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 대상과 용도, 기한, 한도 및 이율은 다음과 같다.

- 대출 대상: 중소기업 사업자
- 대출 용도: 설비투자, 장기운용자금
- 대출 기한: 설비투자용은 20년 미만[거치기간(2년 미만) 포함],
장기운용자금용은 7년 미만[거치기간(2년 미만) 포함]
- 대출 한도: 7억 2,000만 엔[운용자금(2억 5,000만 엔 미만) 포함]
- 대출 이율: 설비투자용 기준금리보다 최대 0.9% 인하(2억 7,000만 엔 한도),
장기운용자금용은 기준금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해외사업 전개 지원은 지역경제 견인사업에 기여하는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해외 자회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단 일본 모회사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인 해외 자회사인 경우에만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현지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 일본정책금융공고가 신용장을 발행 ②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당해 해외 자회사에게 직접 대출해준다. 단 ②의 경우 다음의 제약조건이 적용된다.

- 대출 가능 국가: 태국, 베트남, 홍콩
- 대출 한도액: 해외 자회사 1곳당 14억 4,000만 엔
- 대출 이율: 4억 엔까지 특별이율 적용
- 대출 기한: 설비투자용은 20년 미만(USD인 경우는 15년 미만),
장기운용자금용은 7년 미만

신용보증협회의 채무보증 혜택도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보증한도에 신용보증협회의 보증금액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다. 보증대상은 지역경제 건인사업에 필요한 자금, M&A를 통한 사업 승계 시 자산, 주식 등의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최대 2억 8,000만 엔이다.

그 밖에도 기타 금융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지역경제 건인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① 자본금 3억 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도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로부터 대출 가능하며 ② 식품등물류합리화촉진기구의 보증 알선도 받을 수 있다.

다) 규제 완화 특례

규제 완화 특례를 통한 지원도 있다. 공통 지원조건으로는 기본 계획에 따른 중점 촉진지역이어야 한다. 공장입지법의 환경설비면적률 및 녹지면적률 특례도 있는데 특례대상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공장입지 등의 특례 구역을 설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된다. 특례는 환경설비면적률, 환경설비면적 중 녹지면적률 감소의 경우에 해당된다.

표 5-8.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에 따른 공장입지법의 특례

구분	통상기준	특례기준*		
		갑종 구역	을종 구역	병종 구역
환경설비면적률	25% 이상	15% 이상 25% 미만	10% 이상 25% 미만	1% 이상 15% 미만
녹지면적률	20% 이상	10% 이상 20% 미만	5% 이상 20% 미만	1% 이상 10% 미만

주: * 갑종 구역: 준공업지역(주거와 공장으로 병용할 수 있는 지역),
 을종 구역: 공업지역, 공업전용지역(주로 공업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구역),
 병종 구역: 을종 구역 중 일반 주민의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이 없는 구역.

자료: 經濟産業省, 「地域未来投資促進法に基づく支援措置」, p. 12 자료를 저자 번역.

농지 전용허가 등의 절차 관련 특례도 주어지는데 특례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서 중점 촉진지역으로 설정되는 경우이다. 특례 내용은 ① 사업실시장소가 농용지구역인 경우, 농용지구역을 해제 ② 사업실시장소가 제1종 농지인 경우, 용도변경을 허가 등이다.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의 개발허가 관련 특례는 도시계획법상 개발허가제도에 따라 지역경제 견인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개발도 원칙적으로 허가하는 것이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구역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당 구역의 시가화 억제를 위해 개발 금지가 원칙인 구역을 의미한다. 반면 시가화 구역은 이미 시가지를 조성하고 있거나 향후 10년 내에 우선적으로 시가화 계획을 추진해야 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동 사업의 특례대상은 교통시설인데, 자동차 전용도로(高速自動車国道), 철도의 화물역, 항만, 어항(漁港), 공항 등이 해당되며, 식품 관련 물류시설, 식물공장, 생체재료 연구시설·공장들은 공항이나 기타 물류 요충지 기능을 하는 회사자본 등에 지원된다. 원료 조달지에 대한 혜택도 부여되는데, 의약품 또는 식품의 원료 및 재료로 사용되는 농림수산물 등의 생산지 또는 현재 시험 연구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시험연구 시설 등의 근방에 입지하고 있는 연구시설 또는 공장 등이 해당된다.

라) 기타 지원

지역미래투자촉진 특례에 포함되는 지원에는 지역단체상표 등록제도가 있다. 이는 지역경제 견인사업 시설은 일반 사단법인도 지역단체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지역단체상표 등록은 농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상공회, 상공회의소, NPO법인만 가능하다.

또한 재산처분 제한해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는 경제 견인사업 신청 시에 각 주무부처에 보조금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제한해제 승인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예산사업 가점이 주어지는데, 지역경제 견인사업자는 각종 예산사업에서 가점 및 우대초치를 받는다. 여기서 예산사업이라 함은 2021년 10월 시점 해당되는 사업으로 IT도입 보조금(R1보정), IT도입 보조금(R2보정), 콘텐츠 글로벌 수요 창출 촉진·기반강화사업(J-LOD보조금), 지역기업 디지털 경영 강화 지원사업, 지역산업 디지털화 지원사업, 지역·기업 공생형 비즈니스 도입·창업 촉진 사업들이 해당된다.

특정사업자 간주조치도 보장되는바, 이는 특정사업자가 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의 종업원 수가 특정사업자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특정사업자로 간주하여 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은 특정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지원¹⁶²⁾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 아시아거점화촉진법

아시아거점화촉진법(アジア拠点化推進法)¹⁶³⁾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¹⁶⁴⁾ 이는 일본에 연구개발 또는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거점을 설립하려는 다국적 기업에 ① 자금조달 지원 ② 투자절차 간소화 ③ 체류자격 심사 단축 ④ 특허

162) p. 65의 ② 금융지원.

163) 아시아거점화촉진법의 정식 명칭은 '특정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사업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特定多国籍企業による研究開発事業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임.

164) 経済産業省, 「特定多国籍企業による研究開発事業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アジア拠点化推進法)ガイドライン」,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7).

출원심사 단축(特許出願早期審査)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⁶⁵⁾

가) 자금조달 지원

먼저 자금조달 지원은 연구개발 또는 사업총괄 거점을 일본에 설립하려는 외국계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지방 공공단체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고 일본정부가 감독하는 중소기업 투자육성 주식회사로부터 다음의 투자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장된다.

-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 증자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
- 신주예약권의 인수
- 신주예약권부 회사채의 인수

표 5-9. 일본의 아시아거점화촉진법상 중소기업 기준

업종	자본금액 또는 출자 총액	종업원 수
도매업	JPY 1억 이하	100명 이하
서비스업	JPY 5천만 이하	100명 이하
소매업	JPY 5천만 이하	50명 이하
고무제품 제조업*	JPY 3억 이하	900명 이하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JPY 3억 이하	300명 이하
숙박업	JPY 5천만 이하	200명 이하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외 업종	JPY 3억 이하	300명 이하

주: * 차량 및 항공기용 타이어 또는 튜브 제조업, 공업용 밸브 제조업은 제외.

자료: 經濟産業省, 「特定多国籍企業による研究開発事業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アジア拠点化推進法)ガイドライン」, p. 11 자료를 저자 번역.

165) 經濟産業省, 「対内直接投資の推進」,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7).

나)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절차 간소화는 연구개발 또는 사업총괄을 수행하는 일본거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이다. 지원대상자가 외환법 제27조에 따른 사전신고대상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사업부작위 기간을 신고일로부터 30일에서 2주로 단축시켜준다.

표 5-10. 일본의 외환법상 사전신고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OECD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에 따른 업종	국가안보 관련	·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과 관련한 제조업 등 · 군사전용(軍事轉用)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공공질서 관련	·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熱供給業), 통신사업, 방송사업, 수도업, 철도업, 여객운수업
	공중안전 관련	· 생물학적 제제(生物學的製劑) 제조업, 경비업
자유화 규약 유보 업종		·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피혁제품 제조업, 항공운수업, 해운업

자료: 經濟産業省, 「特定多国籍企業による研究開発事業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アジア拠点化推進法)ガイドライン」, p. 8 자료를 저자 번역.

다) 체류자격 심사 단축

체류자격 심사 단축은 아시아거점화촉진법 대상 외국기업에서 근무 예정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과 관련한 심사기간을 통상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시켜주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또는 사업총괄 거점을 설립하는 외국기업에서 근무 예정인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 투자·경영, 법률·회계업종, 연구, 인문지식·국제 업종, 기업 내부 전근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된다.

라) 특허출원 심사 단축

특허출원 심사 단축은 아시아거점화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에 출원되는 관련 특허의

출원 심사기간을 통상 22.2개월에서 약 1.9개월로 대폭 단축시켜주는 제도이다. 연구개발 거점을 설립하는 외국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이다.

3)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제도

기업 단위의 규제개혁제도¹⁶⁶⁾는 관계 주무대신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 또는 기업에 한정하여 현행 규제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거나 완화해 새로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총칭한다. 세부적으로는 ① 그레이존 해소 제도 ②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③ 신사업특례제도가 있다.

가) 그레이존 해소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는 현행 규제가 새로운 사업에 적용될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어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다.

나)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AI, IoT, 블록체인 등의 혁신적인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당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제도이다.

다) 신사업특례제도

신사업특례제도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현행 규제에 대한 특례조치를 제안하면, 안전성 등의 확보를 전제로 해당 기업에 한정하여 규제특례조치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166) 經濟産業省, 「グレーゾーン解消制度・プロジェクト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新事業特例制度」; 内閣官房 成長戦略会議事務局(2021. 6), 「新技術等実証制度(プロジェクト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15).

4) 고급 인재 포인트 제도

해외 인재 및 투자자 체류자격 지원제도로 고급 인재 포인트 제도(高度人材ポイント制)¹⁶⁷⁾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2년 5월 7일부터 시행된 고급 해외 인재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고급전문직 외국인의 활동을 분야별, 항목별로 분석하여 정해진 점수에 따라 환산한 총점이 70점을 넘으면 출입국 및 체류 관리상 우대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분야는 고급 학술 연구 활동, 고급 전문·기술 활동, 고급 경영·관리 활동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 선정 항목으로는 공통적으로 학력, 경력, 연수입이 있으며, 분야에 따라서 연령, 연구실적, 자격증, 직위 등을 고려한다. 공통 항목이라도 분야에 따라서 배점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경력의 경우, 고급 학술 연구 활동은 3~7년 이상의 경력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5~15점을 배점하나, 고급 전문·기술 활동은 3~10년 이상의 경력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5~20점을 배점하고, 고급 경영·관리 활동은 3~10년 이상 경력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10~25점을 부여한다. 지원대상은 다음 고급전문직 1호와 2호에 한정한다.

- [고급전문직 1호] 고급 인재 포인트가 70점 이상인 외국인
- [고급전문직 2호] 다음 여섯 가지를 모두 충족한 자¹⁶⁸⁾
 - ① 고급 학술 연구 활동, 고급 전문·기술 활동, 고급 경영·관리 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을 수행할 것
 - ② 고급전문직 1호로 3년 이상 활동했을 것
 - ③ 학력, 연수입 등의 포인트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 ④ 평소 행실이 바를 것
 - ⑤ 신청자가 일본에 체류하는 것이 일본 국익에 이롭다고 인정받을 것
 - ⑥ 신청자의 국적국에서의 활동이 일본의 산업 및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 것

167) 出入国在留管理庁, 「高度人材ポイント制による出入国在留管理上の優遇制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5).

168) 出入国在留管理庁, 「高度人材ポイント制 Q&A」, pp. 9~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5).

이 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대 내용은 고급전문직 1호와 2호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이 다르다.

· [고급전문직 1호]

- ① 복합적인 체류 활동 허가
- ② 체류기간 5년 부여
- ③ 체류 이력과 관련된 영주허가 요건 완화
- ④ 배우자가 학력, 경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교육’,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
- ⑤ 일정 조건하에서 고급 외국 인재와 그 배우자의 부모 초청¹⁶⁹⁾
- ⑥ 일정 조건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청¹⁷⁰⁾
- ⑦ 입국 및 체류 수속 우선 처리

169) ① 고급 외국 인재와 그 배우자가 7세 미만의 자식을 양육하는 경우 ② 고급 외국 인재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 중에 산모도우미가 필요한 경우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입국 및 체류가 가능함.

- 고급 외국 인재 세대의 연수입이 800만 엔 이상일 것
- 고급 외국 인재와 동거할 것
- 고급 외국 인재와 그 배우자 중 어느 한 쪽의 부모일 것

170) 다음 세 가지 상황 중 한 가지 상황에 해당하고 해당 상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함.

- ① 외국에서 고용했던 가사도우미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고급 외국 인재 세대의 연수입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 세대당 가사도우미는 1명만 가능
 -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20만 엔 이상을 예정할 것
 - 고급 외국 인재와 함께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는 가사도우미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1년 이상 당해 고급 외국 인재에게 고용되었던 자일 것
 - 고급 외국 인재가 먼저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는 가사도우미는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1년 이상 당해 고급 외국 인재에게 고용되었던 자이고 당해 고급 외국 인재가 일본에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서 당해 고급 외국 인재 또는 그의 가족에게 계속 고용되었던 자일 것
 - 고급 외국 인재가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동반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것
- ② ① 외의 상황에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 고급 외국 인재 세대의 연수입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 세대당 가사도우미는 1명만 가능
 -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20만 엔 이상을 예정할 것
 - 신청 시점에 13세 미만의 자식 또는 가사 활동이 불가능한 배우자가 있을 것
- ③ 투자운영사업 등에 종사하는 금융 인재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 고급 외국 인재 세대의 연수입이 1,000만 엔 이상일 것
 - 세대당 가사도우미는 2명까지 가능(단 2명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대 연수입이 3,000만 엔 이상일 것)
 - 가사도우미의 월급은 20만 엔 이상을 예정할 것

· [고급전문직 2호]

- ① 고급전문직 1호의 활동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취직 활동 가능
- ② 체류기간 무기한
- ③ 상기 고급전문직 1호 우대조치 ①~⑥을 동일하게 적용

5) 국가전략특구의 창업 외국 인재 제도

해외 인재 및 투자자 체류자격 지원제도로 국가전략특구의 창업 외국 인재 제도¹⁷¹⁾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전략특구에 외국인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류자격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① 창업 외국 인재 ② 사무소 확보 특례 ③ 유학생 자격 변경 특례가 있다.

가) 창업 외국 인재

창업 외국 인재는 국가전략특구 특례로서 통상의 경영·관리 체류 비자 취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창업가도 해당 특구가 속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6개월간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단 6개월 후 창업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 체류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치바시, 나리타시), 니가타시, 야부시,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오키나와현, 센보쿠시, 센다이시, 아이치현, 히로시마현, 이마바리시 등이다. 이 제도는 상기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창업 외국 인재의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통상 입국심사에서 확인하는 경영·관리 체류 비자의 취득자격을 입국 후 6개월 뒤에 실시한다. 입국심사 요건으로 사무소 확보 여부와 2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또는 500만 엔 이상의 출자금 등이 고려된다.

171) 国家戦略特区, 「創業人材等の多様な外国人の受入れ促進」; 国家戦略特区(2020. 3), 「創業外国人材の事業所確保要件の緩和」; 国家戦略特区(2020. 3), 「外国人留学生の創業活動の促進」(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15).

나) 사무소 확보 특례

사무소 확보 특례는 창업 외국 인재가 일본에 입국 후 6개월 내에 확보해야 하는 사무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공유오피스, 셰어오피스도 체류자격 심사 때부터 1년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다) 유학생 자격 변경 제도

유학생 자격 변경 제도는 유학생이 일시 귀국을 해야만 창업 외국 인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관리 체류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특례로서 귀국하지 않아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6) 외국인 기업(起業) 활동 촉진 사업(스타트업 비자)

외국인 기업(起業) 활동 촉진 사업(스타트업 비자)¹⁷²⁾는 경제산업성의 고시에 따라서 지방 공공단체가 창업지원을 받는 외국인 기업가를 선정하면, 지방 출입국관리소가 해당 외국인에게 최장 1년(6개월 + 6개월)의 특정 활동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국가전략특구의 ‘창업 외국 인재’ 제도보다 체류기간이 최대 6개월 더 긴 것이 특징이다. 체류기간 인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지방공공단체가 외국인 창업가의 ‘창업 준비 활동 계획’을 인정하면 지방 출입국관리소가 특정 활동 체류자격 6개월을 부여하고, 이후 해당 창업가가 갱신한 ‘기업 준비 활동 계획’을 지방 공공단체가 승인하면 지방 출입국관리소가 특정 활동 체류자격 6개월을 추가로 부여한다.

172) 經濟産業省,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5).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일본은 2019년 아베 정권 후기부터 외환법 개정, 5G 투자촉진세제 도입 등으로 중국기업을 타깃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일본정부의 경제안보 강화 기조는 2022년 경제안보 관련 예산 증액 요구, 「경제안보추진법안(가칭)」 발의 준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사전신고면제 제도¹⁷³⁾ 도입 △사전심사대상 업종 확대 등 경제안보 측면을 강화하여 법을 개정하고 2020년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¹⁷⁴⁾

일본은 사전신고면제 제도를 운영하는데, 투자자에 따라 포괄면허, 일반면허, 면허이용불가 세 가지로 구분하고 면허에 따라 신고의무 기준에 차별을 두는 것이다. 일본은 또한 사전신고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일반면허를 보유한 외국인투자자가 일본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 시, 사전신고가 필요한 기준치를 지분의 10%에서 1%로 강화하였다(표 5-11 참고). 외국인투자 기준도 강화했는데, 외국인 투자자¹⁷⁵⁾가 사전신고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73) 사전신고면제: 일정 기준을 준수하면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

174) 財務省, 「最近の外為法改正」,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7); 財務省(2020. 4. 24),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告示改正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6).

175) 외국인투자자의 정의(외환법 제26조)

- ① 비거주자 개인
- ②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외 단체, 외국에 주요 거점을 둔 법인 또는 그 외 단체
-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진 의결권 비율이 50%를 넘은 회사
- ④ 조합 및 조합유사단체의 출자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조합원 또는 관련 조합원의 과반수가 특정 외국인투자자인 경우
- ⑤ ③의 경우를 제외한 법인 및 단체에서 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 또는 대표 권한을 보유한 임원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

- ① 외국인투자자 스스로 또는 밀접 관계자가 임원으로 취직하지 않을 것
- ② 주주총회에서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양도 및 폐지를 제한하지 않을 것
- ③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근하지 않을 것

표 5-11. 일본의 외환법상 상장기업 지분 취득 사전신고면제 제도

대상 투자자	구분	내용	
외국 금융기관	포괄면허	지정업종 ³⁾	· 기준 ⁴⁾ 준수 시, 사전신고면제
		코어업종	· 사전신고기준: 지분 10% 이상 취득
과거 외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국영기업 ¹⁾	면허이용불가	지정업종 ³⁾	· 사전신고면제 불가
		코어업종	
상기 2가지 외 ²⁾	일반면허	지정업종 ³⁾	· 기준 ⁴⁾ 준수 시, 사전신고면제 · 사전신고기준: 지분 1% 이상 취득
		코어업종	· 완화 조건 ⁵⁾ 충족하고 10% 미만 주식을 취득할 경우, 사전신고면제 · 사전신고기준: 지분 1% 이상 취득

주: 1) 개별 인증을 받은 국부펀드(SWF), 공적 연기금 제외.

2) 개별 인증을 받은 국부펀드(SWF), 공적 연기금 포함.

3) 코어업종 제외.

4) 면제기준: 전술한 '외국인투자 기준 강화'의 사전신고면제 조건 세 가지를 충족한 경우.

5) 완화 조건: ① 코어업종에 속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하지 않을 것 ② 코어업종과 관련하여 이사회 등에 기한부 회답 또는 행동을 요하는 제안을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것.

자료: 財務省(2020. 4. 24),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 告示改正について」, p. 4 자료를 저자 번역.

일본은 기존 사전신고대상인 일본표준산업분류(JSIC)상의 155개 지정업종을 '코어업종'과 '코어업종 외 지정업종'으로 세분화하였다(표 5-12 참고). 이에 따라 일본의 상장기업은 ① 지정업종 이외의 사업만 영위하는 회사 ② 지정업종 중 코어업종 외의 사업만 영위하는 회사 ③ 지정업종 중 코어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 세 종류로 분류된다.

표 5-12. 일본의 대내 외국인투자 사전신고대상 업종: 코어업종

개정 전: 지정업종(155개)		개정 후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 관련, 제조업(군수전용 범용품)	
사이버보안 관련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업, 중요 인프라를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제공 관련 서비스 등	
전력업		일반 송·배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 일부(최대출력 5만 KW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가스업		일반·특정 가스도관 사업자, 가스제조 사업자, LPG가스 사업자 일부(저장소 또는 중핵충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통신업		전기통신사업자 일부(복수의 기초지방단체에 걸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상수도업		수도사업자 일부(급수인구가 5만 명 초과), 수도용 물공급 사업자 일부(2.5만 m ³ /일을 초과하는 공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철도업		철도 사업자 일부(사태대처법상 지정공공기관)	
석유업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천연가스 광업	
열공급업,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製劑)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코어업종 외	사이버보안 관련, 전력업, 가스업, 통신업, 상수도업, 철도업, 석유업의 코어업종 이외 분야
			열공급업, 방송업, 여객운송,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경비업, 농림수산업, 피혁 관련, 항공운송, 해운

자료: 財務省(2020. 4. 24),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告示改正について」, pp. 8-9, 재인용: 김규판 (2021),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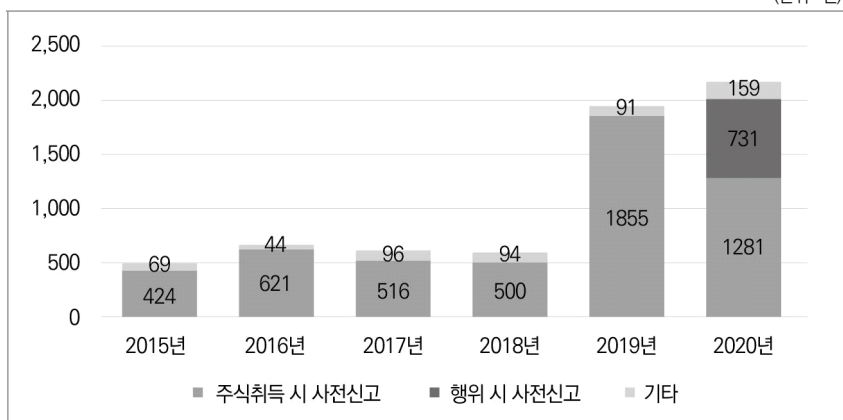
일본의 외환법에 따른 사전신고 건수는 2019년 8월 지정업종에 사이버보안 관련 업종¹⁷⁶⁾이 추가되면서 3배 넘게 대폭 증가하였고, 2019년 개정된 외환법이 2020년 6월부터 완전하게 적용되면서 2020년 사전신고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11%p 증가했다.¹⁷⁷⁾

176) 정보처리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집적회로제조업, 반도체 메모리 미디어 제조업 등.

177) 총 2,171건 중 개정된 법에 의거한 사전신고는 731건. 財務省國際局調査課投資企画審査室(2021. 7),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事前届出件数等について(令和2年度/2020年度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7).

그림 5-3. 일본의 사전신고 추이

(단위: 건)



주: * 행위 시 사전신고: 외국인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양도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하는 사전신고

** 기타: 사업목적의 변경, 금전 대출, 사채 취득, 주식 양도, 지점 개설, 사업 승계, 공동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신고

*** 회계연도 기준임(당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財務省国際局調査課投資企画審査室(2021. 7),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事前届出件数等について(令和2年度/2020年度版)」, p. 2 자료 저자 번역.

2020년 4월 아베 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 책략(economic statecraft)에 의한 일본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등 경제안전보장의 개념이 등장했고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經濟班)을 신설하였다.¹⁷⁸⁾ NSS에 경제반을 설립한 목적은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외교 또는 타국의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제 책략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주가가 저평가된 일본기업이 중국기업에 저가에 매수되어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NSS 경제반의 초기 구성원으로 경제산업성, 총무성, 외무성, 재무성, 경찰 등 주요 정부부처 출신의 인사 20명을 배치하였다.

2020년부터 일본은 5G 정보통신 시스템 및 드론과 관련한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2020년 8월 31일부터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¹⁷⁹⁾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178) 「國家安保局に「經濟班」発足・新型コロナ対応も急務」(2020. 4. 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7); 김규판(2021), p. 3.

법률」¹⁸⁰⁾을 실시하여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사이버보안성 확보가 국민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보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시스템의 개발 및 공급 계획의 인증제를 도입하였다.¹⁸¹⁾

2020년 9월 일본 수상실은 관계 부서와 합의를 거쳐 드론(無人航空機)이 수집한 데이터의 누설 가능성을 사이버보안 문제로 분류하였으며, 23개 정부기관의 공공 안전, 질서유지, 인간의 생명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하여 드론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계획에 대해 내각관방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다.¹⁸²⁾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일본정부는 대상 정부기관이 당해 시점에 사용하던 드론의 사이버안보 리스크가 높은 경우 리스크가 낮은 제품으로 교환하고, 정부기관 및 해당 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드론에서 정보유출방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또한 2020년 12월 24일 일본 총무성은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보안성, 안전성,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증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5G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발·공급 또는 도입 계획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5G 투자촉진 세제’도 창설하였다.¹⁸³⁾

2021년 5월 일본기업들은 일본정부의 보안 리스크 관련 지침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 DJI 드론의 의존도를 낮출 목적으로 드론 관련 사내 정책을 변경하였다(표 5-13 참고).¹⁸⁴⁾

179) 5G 정보통신 시스템, 드론 활용 시스템 등 고급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의미.

180) 당해 법의 제정일은 2020년 6월 3일이며, 일본어 공식 명칭은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임.

181) 일본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182) 首相官邸(2020. 9), 「政府機関等における無人航空機の調達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NISC(2020. 6. 30), 「委託先等で発生した政府機関の要保護情報に係るセキュリティインシデントの情報共有に関する申合せ」,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183) 総務省(2020. 12. 24),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導入計画」認定申請に関する申請要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184) 김승현(2021), pp. 16~17.

표 5-13. 일본기업의 중국 DJI 드론 배제 주요 내용

기업명	주요 내용
NT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통신케이블 점검에 사용하는 중국산 드론을 일본산으로 대체 (현재 사용하는 제품은 갱신 시기 때까지만 이용) · 그룹 차원에서 드론 자체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12월 별도의 회사 설립, 이후 2021년 1분기까지 150대 판매 →현재는 농약살포용으로 제조 중이나 향후 통신케이블 점검용으로도 사용할 방침
큐슈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DJI 드론 외에도 일본산, 스위스산 등을 사용 중 · 향후 보안 리스크를 감안하여 대응할 방침
ACS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하발동기 등 5개사와 공동으로 드론 개발 중이며, 비행 데이터 및 촬영 영상을 보존하는 기능을 구비(2021년 10월에 판매 개시 예정) · 국산 드론에 대한 수요 증가로 2022년에 약 1,600만 대 판매 목표
AerogLa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도 국산화한 드론을 판매
소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개발 드론인 '에어피크'를 2021년 1월 최초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엔터테인먼트용으로 개발했지만 향후 물류, 인프라점검 등으로 범위를 확장할 방침

자료: 김승현(2021) 재인용.

2021년 6월 외국인의 토지 구입으로 인한 안보상의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을 제정하였으나, 국내외 무차별 원칙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안보상 중요시설 1km 이내의 토지의 거래, 이용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예정이다.¹⁸⁵⁾

일본정부는 2021년 6월 23일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이도 등과 관련한 토지 등 이용 상황의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¹⁸⁶⁾을 공포하였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당해 법률과 관련한 2022년 예산 요구액은 약 24억 4,000만 엔이며, 2022년 6월 1일부터 일부 시행되고 2022년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 및 조사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¹⁸⁷⁾

185)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2021. 9. 10),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 新法の概要及びその解釈に係る国会答弁 -」;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2021. 10. 1),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 国会における主な議論」(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20).

186) 당해 법의 일본어 공식 명칭은 「重要施設周辺及び国境離島等における土地等の利用状況の調査及び利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案」임.

187) 産経新聞(2021. 8. 25), 「土地規制法、来年9月に区域公示・概算要求に24億円」,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0).

일본정부는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을 입법 배경으로 국경이도(国境離島), 방위시설 등 주변에 경제성이 없는 토지를 외국자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과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나가사키현 쓰시마시와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자위대 기지 주변 토지를 외국자본이 구입한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입법 배경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도 외국자본의 토지 구입이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고, 토지 소유자의 국적만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최종 법안은 안보상 리스크가 있는 토지 소유·이용자의 국적을 불문하는 방향으로 국내외 무차별 원칙에 따르기로 하였다.¹⁸⁸⁾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은 중요시설(방위관계시설, 해상안보청 시설, 생활관련 시설) 및 국경이도에서 기능 저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시구역¹⁸⁹⁾과 해당 토지 이용자에 대한 권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총리대신은 주시구역 내의 토지의 이용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데, 기존 조사대상인 부동산 등기부뿐 아니라 주민 기본대장, 호적부 등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조사를 위해 이용자에게 보고도 요구할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토지등조사규제법」은 특별주시구역¹⁹⁰⁾의 200㎡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에게 사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부는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인 경제안보상(經濟安保相) 자리를 신설하여 코바야시 타카유키(小林鷹之)를 임명하고 경제안보상 주관으로 2021년 11월 26일 제1회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내각관방 ‘경제안전보장법제준비실’을 설치하고 코바야시 장관의 주관으로 「경제안전보장법안(가칭)」 준비를 가속할 것을 지시

188) 당해 입법 배경과 관련하여 국회는 “사례로 언급된 홋카이도 치토세시의 토지는 자위대 기지 1km를 벗어난 지역에 있어서 당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언급함. 參議院常任委員會調査室·特別調査室(2021. 10. 1),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 国会における主な議論 - 」, pp. 4~5 및 각주 4번.

189) 중요시설 부지 주변 약 1km의 구역과 국경이도 등 구역 안의 토지를 의미.

190) 주시구역 중 자위대 사령부 등 특히 안보상 중요성이 높은 구역.

하였다.¹⁹¹⁾ 또한 일본정부는 비공개로 개최된 제1회 경제안전보장회의에서 기술유출 방지책 등이 포함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¹⁹²⁾

코바야시 장관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가칭)」이 다뤄야 할 핵심 분야로 중요 물자 및 원재료의 공급망 강화, 기반 인프라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민관협동을 통한 중요기술의 육성 및 지원 체제 마련, 특히 비공개화를 통한 신기술 유출 방지를 선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첨단기술 및 유망 기술(emerging technology)에 대한 연구개발과 인재 육성 등 과학기술 지원책과 연구의 공개 범위의 설정, 특히 비공개의 범위 한정, 기술·인재·데이터 등의 유출 방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따라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확대됨과 동시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2022년 경제안보 관련 예산요구액은 2021년 예산 대비 약 22%p 증가(1,482억 엔→1,685억 엔)하였다.¹⁹³⁾ 경제산업성이 경제안보 관련하여 책정한 예산 항목에는 중요기술 조사·보호·육성, 반도체·데이터 센터 지원, 바이오·의료, 희토류 등 주요 자원 확보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기술 개발 지원, 공급망 강화, 국내생산력 강화, 기술유출 방지 등에 예산을 배정하였다.

일본정부는 5G 투자촉진 세제(5G投資促進税制)¹⁹⁴⁾를 도입했다. 일본정부가 2020년 설립한 ‘일본 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설비 보급 확대’를 목

191) 内閣官房(2021. 11. 19), 「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7).

192) 内閣官房,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第1回議事要旨)」; 内閣官房(2021. 11. 26),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17).

193) 経済産業省(2021. 8), 「令和4年度 経済産業政策の重点」, pp. 11~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7).

194) 해당 제도가 중국의 5G 및 드론 장비 업체의 일본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고 설명하는 니혼게이지어신문의 기사가 있어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부분에서 소개함. 総務省, 「5G投資促進税制の創設」,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6); 総務省(2019. 12. 10), 「5G投資促進税制」,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6).

적으로 도입한 세계 지원 제도로, 일본의 5G 환경을 화웨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다.¹⁹⁵⁾ 일본의 4개 이동통신사(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라쿠텐)는 2022~23년 사이에 5G 기지국 설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조기 착수시키기 위해 2020~21년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2021년 기사다 정권에 들어서고 디지털화 촉진 측면에서 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4년까지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여당과 정부 내부적으로 다른 투자촉진 세제(통상 5~10%)에 비하여 5G 투자촉진 세제의 공제율(15%)이 높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2023년 9%, 2024년 3%).¹⁹⁶⁾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이며, 지역 5G 면허 소지자가 도입하는 다음의 5G 설비에 대해서 지원한다.

- [전국 사업자] 송수신장치, 안테나(단, 주무대신의 인정받은 계획보다 조기 설치한 기지국과 고급 장비로 한정)
- [지역 5G 면허 소지자] 송수신장치, 안테나, 통신 모듈, 코어 설비, 광섬유 지원 내용으로 대상 설비의 투자금에 대해 다음의 혜택을 제공한다.
- [국세] 법인세 또는 소득세 15% 공제 또는 특별상각 30%
(단, 세액 공제는 당기 세액의 20%까지만 가능)
- [지방세] 지역 5G 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고정자산세의 과세표준을 1/2로 설비 취득 후 3년간 낮춤.
- [금융지원] 다음 네 가지 금융지원 수혜 가능¹⁹⁷⁾

195) 「5G投資支援、減税延長へ、政府・与党、控除率15%は縮小協議、防災・過疎地導入に補助金、利用地域拡大を後押し。」(2021. 11.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6).

196) 「特集——与党税制改正大綱、5G整備、3年内、早期の投資促す。」(2021. 2.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16); 総務省(2021. 8), 「令和4年度総務省所管予算 概算要求の概要」, p. 2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6).

197) 総務省(2020. 12. 24),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pp. 4~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6).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법 특례(two step loan): 장기 저금리 대출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특례(※ 중소기업 한정): 회사 설립 또는 증자 시의 주식 인수, 신주예약권 인수, 신주예약권부 회사채 인수
- 중소기업신용보험법 특례(※ 중소기업 한정): 보통보험, 무담보보험, 특별소액보험의 부보한도를 2배 증대
-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국민, 중소기업) 대출(※ 중소기업 한정): 인 증받은 계획상의 5G 시스템 개발공급·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기 준금리 $\Delta 0.65\%$)로 대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 도입계획'을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여 선정한다.

- ① 안전성·신뢰성(보안, 벤더 업체의 신뢰성)
- ② 공급 안정성
- ③ 개방성(국제표준규격 준수, 글로벌 연계)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고용과 영국 내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FDI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세제지원을, 지방정부는 현금지원을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입지지원제도로 측면에서는 2018년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2021년에는 자유무역항을 부활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12년부터 운영해온 엔터프라이즈 존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국 역시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자국 내 생산기반 유치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 역시 기술의 발전에 따른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한 제한과 중국 자본의 핵심 인프라 사업 참여를 경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 Act)을 제정하고 투자보안국(ISU)을 신설하여 안보 목적의 M&A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영국은 2015년부터 단일 법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다.¹⁹⁸⁾ 2017년 4월

198) HM Revenue & Customs(2021. 4. 1), "Guidance Rates and allowances for Corporation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7).

1일부터 법인세율을 19%로 소폭 낮춰 2022년까지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리고 2023년 4월 1일부터는 연매출에 따라 3단계 법인세율(19%)을 적용할 예정이다.²⁰⁰⁾

표 6-1. 영국의 법인세율(링펜스 법인세대상 제외)

연매출 구간	2017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2023년 4월 1일부터
GBP 5만 이하	19%	19%
GBP 5만 초과 GBP 25만 이하		19~25% 점진적 증가*
GBP 25만 초과		25%

주: * standard marginal relief fraction 3/200 적용. Finance Act 2021, s 7(2)(b).

자료: HM Revenue & Customs(2021. 3. 3), "Policy paper Corporation Tax charge and rates from 1 April 2022 and Small Profits Rate and Marginal Relief from 1 April 2023" 자료를 저자 정리.

영국은 링펜스 법인세²⁰¹⁾라는 세금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창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영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석유 및 가스 산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인세 체계로 영국 내륙과 영국 대륙붕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 인프라 시설의 조기 철거율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영국에서 석유 또는 가스 사업 인가를 받은 기업들이다. 동 세제를 통해서 지원받는 혜택은 다음 두 가지 금액을 석유 또는 가스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공제받는다.

199) 단 링펜스 법인세(RFCT: Ring Fence Corporation Tax) 적용대상은 별도의 법인세 체계를 적용함.

200) HM Revenue & Customs(2021. 3. 3), "Policy paper Corporation Tax charge and rates from 1 April 2022 and Small Profits Rate and Marginal Relief from 1 April 20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7).

201) GOV.UK(2015. 7. 31), "Guidance Oil and gas: Ring Fence Corporation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7).

- ① 다른 사업 활동이나 과도한 이자 지급으로 발생한 손실금액
- ② 석유수입세(Petroleum Revenue Tax) 납부액²⁰²⁾

적용 세율은 연매출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 연매출 30만 파운드 미만: 19%
- 연매출 30만 파운드 초과: 30%
- Ring fence fraction: 11/400

연매출 30만(하한) 파운드 초과 150만(상한) 파운드 미만의 연매출에 대해서는 Ring fence fraction을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Marginal Relief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매출 50만 파운드의 경우, 30%의 법인세를 부과하되 Marginal Relief 상한에서 연매출을 제외한 만큼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12만 2,500파운드²⁰³⁾의 세금이 부과된다.

영국정부는 △ 벤처캐피털 제도 △ R&D 세금 감면 제도 △ 특허박스 △ 영업권 및 관련 자산 법인세 감면 제도 △ 소득 감소 상쇄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 감면 또는 세액 공제를 제공하여 영국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벤처캐피털 제도²⁰⁴⁾

영국정부가 제공하는 벤처캐피털 제도의 종류에는 △기업투자제도(EIS) △초기 기업투자제도(SEIS)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ITR) △벤처캐피털 신탁(VCT)이 있다. 벤처캐피털 제도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제도 전체를 통합하여 연간 최대 500만 파운드, 총합 최대 1,200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특별히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식집약형 기업(knowledge intensive

202) 2016년 1월 1일부터 석유수입세율이 0%가 되었으나, 0% 적용 이전에 세금을 납부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함. GOV.UK(2017. 3. 17), "Guidance Petroleum Revenue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7).

203) $(\text{GBP } 500,000 * 30\%) - ((\text{GBP } 1,500,000 - \text{GBP } 500,000) * 11/400) = \text{GBP } 122,500.$

204) GOV.UK, "Guidance Use a venture capital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company)이 연구, 개발, 혁신을 위해 EIS와 VCT를 활용하는 경우, 자금 조달 한도가 연간 500만→1,000만 파운드, 누적 1,200만→2,000만 파운드로 증가한다.²⁰⁵⁾

- 최초의 상업적 판매일로부터 또는 연매출 20만 파운드 초과일로부터 경과일이 10년 이하인 경우
- 전체 운영비에서 연구, 개발, 혁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3년간 매년 10% 이상 또는 3년 동안 총 15% 이상인 경우²⁰⁶⁾
- 신청 기업과 신청 기업의 자회사의 정규직(full-time) 직원 수의 총합이 500명 미만이고,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①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있거나 10년 이내 이런 사업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 ②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간 20% 이상의 직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단 해당 직원들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일 것

각 벤처캐피털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표 6-2. 영국 벤처캐피털 제도의 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명	연간 세금 감면 한도	수혜 한도 (투자금 대비 비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유무
EIS	GBP 100만 또는 GBP 200만*	30%	불가
SEIS	GBP 10만	50%	불가
SITR	GBP 100만	30%	불가
VCT	GBP 20만	30%	가능

주: *지식집약형 기업에 100만 파운드 이상 투자한 경우 200만 파운드까지 가능.

자료: GOV.UK(2021. 7. 7), "Guidance 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 capital schemes" 자료를 저자 번역.

205) GOV.UK, "Guidance Use a venture capital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knowledge intensive comp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206) 설립 3년 이상 기업은 지난 3년간 실적 기준이며,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향후 3년간 실적 기준임.

표 6-3. 영국 벤처캐피탈 제도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명	최초 투자에서		주식 매매 시의 양도소득세	소득에서 손실금 제외 여부
	개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세금 감면 유형		
EIS	투자금의 100%	이월 가능	소득세 감면	가능
SEIS	투자금의 50%*	부과되는 세금에서 제외	혜택을 받는 경우	가능
SITR	투자금의 100%	이월 가능	가능	대출형 투자만 가능
VCT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능	불가

주: *최대 5만 파운드까지.

자료: GOV.UK(2021. 7. 7), "Guidance 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 capital schemes" 자료를 저자 번역.

가) 기업투자제도(EIS: Enterprise Investment Scheme)²⁰⁷⁾

기업투자제도는 기업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신주를 매입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영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할 것
- 공인 주식 거래소(recognised stock exchange) 비상장기업이면서 상장 계획이 없을 것
-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다른 기업이 주식을 50%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
- 프로젝트 또는 연계된 복수의 프로젝트(series of projects)를 완료한 후 기업을 청산하지 않을 것
- 최초의 상업적 판매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자회사가 있을 경우에는 각 그룹사의 최초의 상업적 판매일 중 가장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함.

207) GOV.UK(2019. 7. 11), "Guidance Use the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 적격 자회사(qualifying subsidiary) 외에 지배하고 있는 기업이 없을 것.
여기서 적격 자회사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 ① 자회사의 주식을 지원대상 기업이 50% 이상 보유
- ② 지원대상 기업 또는 다른 적격 자회사를 제외한 다른 기업이 해당 자회사의 통제권을 미보유
- ③ 해당 자회사의 통제권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종류의 협의도 없을 것

신주 발행으로 획득한 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 적격 거래(qualifying trade)
- 적격 거래를 위한 준비(투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
- 적격 거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R&D

여기서 적격 거래란 기업의 전체 거래에서 다음의 11가지 거래가 2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① 석탄 또는 석유 생산 ② 농업 또는 시장원예(market gardening) ③ 임대업 ④ 법률 및 금융 서비스 ⑤ 부동산 개발 ⑥ 호텔 경영 ⑦ 요양원 경영 ⑧ 에너지 발전 ⑨ 가스 및 기타 연료 생산 ⑩ 전기 수출(exporting electricity) ⑪ 은행·보험·대부·자금 대출(financing services)

-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이후 거래를 시작한 날까지 사용할 것
- 다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매입에 사용되지 않을 것
- 지원대상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상용될 것
- 투자자의 자본금이 손실될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허용

나) 초기 기업투자제도(SEIS: The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²⁰⁸⁾

소규모 및 초기 스타트업 투자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국의 소규모 및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한다.

[대상 기업 조건]

- 새로운 적격 거래를 진행할 것
- 영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보유할 것
- 주식 발행 시점에 공인 주식 거래소(recognised stock exchange) 비상장기업이고 상장 계획 및 어떤 기업의 자회사가 될 계획이 없을 것
- 적격 자회사 외에는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도 지배권이 없을 것
- 설립 이래 다른 기업에 의해 지배된 적이 없을 것

[대상 기업 및 해당 기업 자회사 공통 조건]

- 주식을 발행할 때 총자산이 20만 파운드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식을 발행할 때 고용한 정규직(full-time) 직원이 25명 미만일 것
- 파트너십의 멤버가 아닐 것

다)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ITR: Social Investment Tax Relief)

초기 기업투자제도의 하나로서 사회적 투자 세금 감면(SITR)²⁰⁹⁾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높은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투자자가 사회적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사회적 기업에 대출해주는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사회적 기업에 한한다.

208) GOV.UK(2018. 10. 12), "Guidance Use the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209) GOV.UK(2019. 1. 25), "Guidance Use SITR to raise money for your social enterpri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 지역공동체 이익 기업(community interest company)
- 보유 자산의 용도 제한(asset lock)이 있는 지역공동체 기여 단체(community benefit society)
- 자선단체
 - (지원금 용도 제한) SITR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용도는 다음처럼 제한됨.
- 적격 거래(qualifying trade)
- 적격 거래 준비(투자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착수)
 - (기업 활동 제한) SITR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음.
- 투자를 받기 직전의 자산 총액이 150만 파운드 미만일 것
- 투자를 받은 직후의 자산 총액이 160만 파운드 미만일 것
- 투자를 받을 당시에 정규직 직원이 250명 미만일 것
- 다른 기업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
- 투자를 받고 3년 동안은 ① 타 기업이 지원대상 기업 지배 불가 ② 공인 주식 거래소에 상장 불가 ③ 파트너십 불가 ④ 대상 기업이 타 기업 지배 불가 (단 적격 자회사는 제외)

라) 벤처캐피털 신탁(VCT: Venture Capital Trusts)²¹⁰⁾

이 제도는 영국 국세청(HMRC)로부터 승인받은 VCT가 비상장 소기업에 주식을 청약하거나 자금을 제공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승인받은 VCT와 해당 VCT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에 한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VCT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개인 투자자가 청약한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주식청약금의 최대 20만 파운드까지 세금 감면

210) GOV.UK(2021. 9. 7), "HMRC internal manual 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VCM5000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 개인 투자자가 허용 상한(20만 파운드) 이내의 보통주에서 얻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개인 투자자가 허용 상한(20만 파운드) 이내의 보통주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2) R&D 세금 감면(R&D Tax Relief)²¹¹⁾

이 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들의 R&D를 지원하기 위하여 R&D 프로젝트의 성패와 상관없이 적격 R&D를 수행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신규 프로세스·상품·서비스 연구개발, 기존 기술 개선 등 과학기술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이다. 경제 등 사회과학, 순수수학(pure maths) 등 이론 분야는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존 또는 신규 사업과 연계한 상업성 여부
- 프로젝트가 속한 분야 전체의 과학기술적 진보(advance) 추구 여부
- 불확실성(uncertainty)의 입증 여부
예) 타인의 실패 사례 공유, 해당 분야 전문가의 난점(uncertainty) 설명
- 불확실성 극복 계획 및 극복 여부
예) 연구, 실험, 분석의 필요성 입증, 난점을 극복을 위한 성공 및 실패 보고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 직원 500명 미만, 연매출 1억 유로 미만 또는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balance sheet total) 8,600만 유로 미만인 기업
 - 연간 수익에서 적격 비용 230% 공제(기본공제 100% + 추가공제 130%)

211) GOV.UK(2020. 3. 20), "Guidance Claim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8).

- 기업이 적자인 경우, 포기가능손실(surrenderable loss)*의 14.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 포기가능손실: 공제되지 않은 사업결손금과 적격 연구개발 비용의 230% (2015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인 경우) 중 적은 금액을 의미한다.

- [대기업] 기존의 대기업 지원 내용은 2016년 4월부터 연구개발 비용 크레디트(RDEC: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 Credit)로 대체되었으며, 상기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²¹²⁾도 RDEC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2020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출 기준, 적격 R&D 비용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

3) 특허박스(Patent Box)²¹³⁾

이 제도는 영국 내 지식재산(IP) 등록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로 IP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에 적용 신청을 해야만 혜택 수혜가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갖춘 기업에 한한다.

-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
- 특허 상품을 활용한 수익 창출
- 특허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ce) 소유 또는 보유
- 당해 특허에 대한 적격 개발(qualifying development)을 수행한 경우

적격 개발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 ① 특허 제품을 발명하거나 발명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 ② 특허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 혹은 제품 공정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

212) RDEC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예로는 대기업 R&D 하청기업, 자사 R&D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있음.

213) GOV.UK(2020. 5. 7), "Guidance Use the Patent Box to reduce your Corporation Tax on profi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지원조건은 다음의 기관 또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특허권 또는 특허 전용실시권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관] 영국특허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국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지원 내용은 상기 조건을 갖춘 특허 관련 수익에 대해 법인세율 10% 적용한다.²¹⁴⁾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은 세금 감면을 신청할 특허를 선정하여 관련 수익이 발생한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국국세청에 신청한다. 법인세 신고시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창조산업 세금 감면(CITR: Creative Industry Tax Relief)²¹⁵⁾

이 제도는 8개 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 사업의 지출 비용에서 공제대상 금액(allowable expenditure) 범위를 확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다음 종류의 영국 문화상품을 직접적으로 생산 또는 개발하는 기업이다.

- 영화, 하이엔드(high-end) TV 프로그램, 어린이 TV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TV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극장 공연(theatrical productions),²¹⁶⁾ 오케스트라 콘서트, 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상기 8가지 문화상품은 문화 테스트(cultural test) 또는 공동제작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로부터 영국 상품으로 인정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¹⁷⁾

214) 2021년 12월 30일 시점, 영국의 법인세율은 19%임. [표 6-1] 참고

215) GOV.UK(2018. 2. 15), "Guidance Creative Industry tax reliefs for Corporation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216) 극장 공연: 연극, 뮤지컬 등 극장에서 상연하는 공연의 총칭.

217) British Film Institute, "About UK creative industry tax relief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GOV.UK(2021. 1. 26), "Guidance Claiming Theatre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 [영화] 적격 영화 제작비의 25%만큼 법인세 감면
- [TV 프로그램] 핵심 제작비 총액의 80% 또는 영국 핵심 제작비 100% 중 낮은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
- [비디오 게임] 핵심 제작비 총액의 80% 또는 영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핵심 제작비 100% 중 낮은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
- [극장 공연, 박물관, 미술관] 핵심 비용 총액의 80% 또는 EEA에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핵심 비용 100% 중 낮은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
- [오케스트라 콘서트] 핵심 비용 총액의 80% 또는 영국 핵심 비용 100% 중 낮은 금액만큼 법인세 감면

5) 영업권(goodwill) 및 관련 자산 법인세 감면²¹⁸⁾

이 제도는 무형자산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영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가을 예산에서 도입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제3자로부터 사업을 인수할 때 지식재산(IP)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사업 인수 시 적격 IP도 함께 인수하는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의 6.5%만큼 세금을 감면해 준다.

- 관련 자산의 비용
- 사업 인수 시의 적격 IP 자산의 비용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GOV.UK(2020. 2. 10), "Guidance Claiming Orchestra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GOV.UK(2020. 2. 10), "Guidance Claiming Museums and Galleries Exhibition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218) GOV.UK(2019. 6. 4), "Guidance Corporation Tax relief on goodwill and relevant asse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Goodman(2019. 5. 22), "GOODWILL TAX RELIEF CHANGES FROM APRIL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6) 소득 감소 상쇄 세제 혜택(Corporation Tax: terminal, capital and property income losses)²¹⁹⁾

이 제도는 최종 손실(terminal loss), 자본 손실(capital loss), 재산소득 손실(property income loss), 거래 손실(trading loss)이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손실을 상쇄시키는 기업지원제도이다. 손실 종류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종 손실] 기업 또는 단체(organization)가 거래를 중단한 경우, 최종 거래일 이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손해를 손해 발생이 시작 또는 끝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상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지막 회계기간 및 최종 거래일 이전 12개월이 2025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2025년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가정하면, 상계되는 3년의 수익기간은 ①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또는 ②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이 된다. 거래가 중단된 날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안에 세제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3년 동안 발생한 수익은 가장 최근 것부터 순차적으로 상쇄된다. 단 최종 손실 감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거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 손실] 자본 자산(capital asset)을 매각하거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손실과는 별도로 취급되며, 자동으로 손실이 상계 처리된다.

[재산소득 손실] 사업장, 부지 등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기 두 가지 손실과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수익금을 상계한다.

- ① 손실이 발생한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익.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익도 상계가 가능하다.
- ② 그룹사의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 발생한 다른 계열사의 수익을 상계시키

219) GOV.UK(2020. 6. 22), "Guidance Corporation Tax: terminal, capital and property income los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는 것도 가능하다.

[상쇄 한도] 과세대상 수익의 50% 한도에서 최대 500만 파운드까지 상쇄가 가능하다.

[외국기업 지원] 2020년 4월 6일부터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 영국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회사(non-resident company)의 경우도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4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재산소득 손실도 상술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래 손실]²²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손실금을 의미하며 고정자산, 사업부지 개발 등에 대한 상각비도 거래 손실에 포함한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수익금을 상계한다.

- ① 손실 발생일 이후의 동일 회계기간에 발생한 수익으로 상계 한도는 소득 공제 후 과세대상 거래 수익의 50% 한도에서 최대 500만 파운드까지 가능하다.
- ②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수익금 및 잔여 손실금으로 이전 회계연도의 수익금(당해 회계연도 수익금이 손실금보다 많은 경우)을 상계한다. 원칙적으로 거래 손실에서의 이전 회계연도는 손실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전 12개월 안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단 2021년 예산에서 이전 회계연도 3년까지도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 회계연도 안의 손실금을 연간 최대 200만 파운드를 한도로 이전 3년간의 수익에 대해 상계 가능하다.
- ③ 그룹사의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 발생한 다른 계열사의 수익을 상쇄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220) GOV.UK(2021. 7. 5), "Guidance Work out and claim relief from Corporation Tax trading los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9); GOV.UK(2021. 12. 17), "HMRC internal manual Company Taxation Manual,"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0).

[지원대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은 모두 지원대상이다. 따라서 외국 기업의 경우, 영국에 resident company로 등록한 날 또는 해당 기업의 거래에 과세 가능한 날부터의 손실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²²¹⁾

영국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제공하는 현금지원책이 더 다양하다. 기존에 지역성장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은 현재 더 이상 신청 불가능하여 본문에서는 제외를 한다. ²²²⁾

2022년 3월 8일 기준,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약 70개로 중소기업 지원, 창업·이전 지원, 탄소배출 감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²³⁾ 예를 들어 레스터셔(Leicestershire)는 12개월 이상 영업을 한 중소기업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우 2,000~2만 5,000 파운드 사이의 금액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영국 연구·혁신(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 산하의 영국혁신(Innovate UK)이 영국 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R&D 지원제도이다.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까지 다양한 단계의 연구를 지원하고 지원 프로그램마다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식 및 지원한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현금지원, 대출지원을 제공한다.

221) GOV.UK, “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0).

222) GOV.UK, “Guidance Regional Growth Fu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0).

223) GOV.UK, “Finance and support for your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3. 8).

세부 프로그램은 UKRI의 funding finder에서 funding council을 ‘Innovate UK’로 설정하여 찾을 수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56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²²⁴⁾ 지원규모는 세부 프로그램마다 상이하나 현금지원 규모는 2만 5,000~1,000만 파운드, 대출지원 규모는 10만~100만 파운드 사이이다. 지원대상은 인공지능·데이터, 고령사회, 녹색성장(clean growth), 미래 이동 수단(future of mobility)을 포함한 혁신기술 관련 프로젝트이다. 단 대출지원은 영국 중소기업이 진행하는 마지막 단계의 R&D 프로젝트만 가능하다.

4. 입지지원제도

영국정부가 운영하는 입지지원제도로는 2012년부터 각 구성국²²⁵⁾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인 △엔터프라이즈 존, 창조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창조산업 클러스터, 국제 무역 및 투자 허브인 △자유무역항이 있다.

가. 엔터프라이즈 존(Enterprise Zone)

이 제도는 영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2012년부터 설치한 산업단지로 영국의 각 구성국이 각각 세제 혜택과 정부지원을 제공하나 일반적으로 설립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공제 또는 비거주용 부동산, 기업용 자산, 사업용 건물 및 공공빌딩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2022년 3월 현재 영국 전역에 운영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존은 총 73개(잉

224) UK Research and Innovation, “Funding find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0).

225) 영국의 구성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글랜드 48개, 스코틀랜드 16개, 웨일스 8개, 북아일랜드 1개)로 확인된다. 다수의 엔터프라이즈 존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웨일스 보수당은 2012~17년 웨일스의 엔터프라이즈 존에 투입된 공적 투자금(2억 2,100만 파운드)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엔터프라이즈 존의 성과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²²⁶⁾ 또한 2019년 BBC뉴스는 엔터프라이즈 존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잉글랜드 정부 발표(약 1억 파운드)보다 3배 이상(3억 1,000만 파운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실제로 2012~17년 사이 험버(Humber)와 랭커셔(Lancashire)는 각각 320개, 2,347개의 일자리가 감소되었다.²²⁷⁾ 북아일랜드의 유일한 엔터프라이즈 존인 Atlantic Link는 2015년부터 아일랜드 정부가 30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2017년에 개장하였으나 지금까지 1개 기업만 입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²²⁸⁾

엔터프라이즈 존에 대한 지원 내용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²²⁹⁾의 경우는 다음 2개 중 하나의 지원이 주어진다. 엔터프라이즈 존 내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지출 비용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고 초기 5년간 비거주레이트 최대 100% 감면이 가능하다. 단 최대 27만 5,000파운드까지만 보장된다. 두 번째로는 기타 서비스로 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

[스코틀랜드]²³⁰⁾의 경우도 다음 2개의 혜택 중에 하나가 주어진다. 첫 번째 비거주레이트 할인(회계연도 기준 3년 동안 최대 20만 유로까지 제공)과 엔터프라이즈 존 내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지출 비용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226) 같은 기간 웨일스 엔터프라이즈 존 전체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1만 700개였음. “Enterprise zones to be scrutinised after £221m investment”(2018. 1.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31).

227) “Enterprise zones ‘failed to deliver’ jobs boost in England”(2019. 7.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31).

228) “NI enterprise zone cost £3m and has one tenant”(2021. 10.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12. 31).

229) HM Government, “Enterprise Zon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230) Scottish Government, “Enterprise Area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두 번째 기타 서비스로 설립절차 간소화, 초고속 브로드밴드, 국제적인 홍보·마케팅, 트레이닝 지원이 가능하다.

[웨일스]²³¹⁾는 재정지원, 설립절차 간소화, 맞춤형 근무 환경, 숙련된 직원, 차세대 브로드밴드 등을 지원한다.²³²⁾

[북아일랜드]²³³⁾는 엔터프라이즈 존 내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지출 비용 10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서비스로 설립절차 간소화와 초고속 브로드밴드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나.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Creative Industries Clusters Programme)²³⁴⁾

2018년 영국정부는 UKRI 산하의 예술·인문학 연구 위원회(AHRC: Arts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를 통해 영국 창조산업 발전을 위하여 8,000만 파운드 규모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창조산업 클러스터 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9개 지역에 주력 분야를 지정하여 창조산업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지역대학 및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그림 6-1 참고). 지원규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 시기,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프로그램마다 상이하나, 대부분 10만~100만 파운드까지 다양한 금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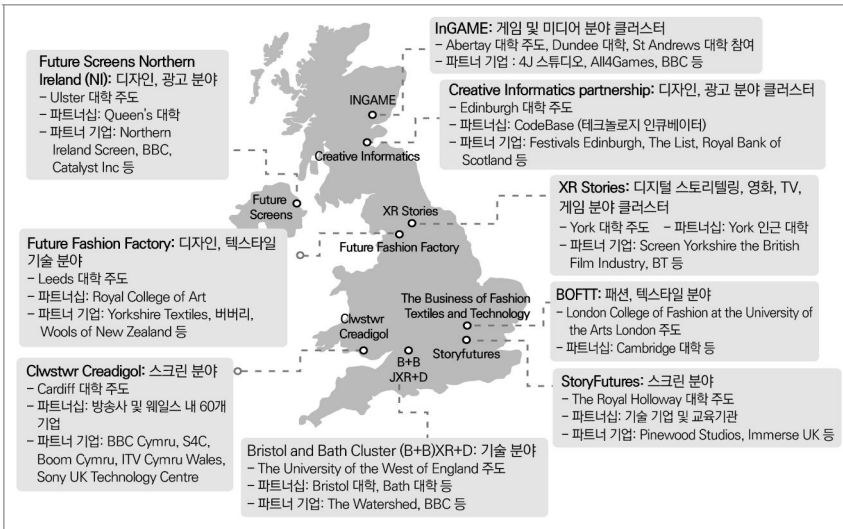
231) Trade & Invest Wales, "ENTERPRISE ZON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232) Welsh Government(2021. 3. 24), "Ein cyf/Our ref ATISN 15007." 웨일스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라 Business Wales 방문을 시도하였으나 사이트 접근이 되지 않아서 추가 상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 <https://gov.wales/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21-03/atishn15007.pdf> (검색일: 2021. 12. 31).

233) Atlantic Link, "Atlantic Link Brochure,"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234) Creative Industries Cluster Programm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그림 6-1. 영국의 창조 클러스터 현황



자료: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KOTRA(2021. 6. 27), 「영국 창조 산업」,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번역 재인용.

다. 자유무역항(free port)

자유무역항은 잉글랜드 정부가 9년 만에 부활시킨 항구 및 공항 인근의 정부 주도 경제특구로 이전 자유무역항 제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국제 무역 및 투자를 유인하는 국내 허브로서 도약하고자 하는 지역이다.²³⁵⁾ 영국은 경제 불황 시기였던 1984년 마저릿대처가 영국 전역의 6개 지역(북아일랜드 벨파스트, 잉글랜드 버밍엄·리버풀·사우스햄턴,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프레스트윅 공항, 웨일스 카디프)을 지정하여 자유무역항을 개시하였으나 2012년 영국정부는 모든 자유항의 라이선스를 만료시켰다.

235) House of Commons Library, "Government policy on freepor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UK Parliament, "Freeports Volume 647: debated on Thursday 11 October 2018," pp. 6-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2018년 잉글랜드는 자유무역항의 재개를 논의하면서 관세 철폐 외의 세계 혜택이 없었던 것을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보아, 2021년 잉글랜드 정부는 세계 혜택과 규제 완화를 강화한 새로운 자유무역항 8곳(이스트 미들랜즈 공항, 펠릭스토우 & 해리치, 험버, 리버풀 도심부, 플리머스 & 사우스 데번, 솔렌트, 티스사이드, 템즈)을 발표하였다. 신규 자유무역항 8곳 중 2곳(티스사이드, 템즈)은 각각 2021년 11,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잉글랜드의 자유무역항 개념을 스코틀랜드의 가치관과 경제적 상황에 접목시킨 녹색항(green port)을 2군데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웨일스 정부 및 북아일랜드 정부도 영국정부(The UK government)와 자유무역항 도입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²³⁶⁾

자유무역항에 대한 지원 내용은 잉글랜드 자유무역항 기준²³⁷⁾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무역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SDLT: Stamp Duty Land Tax)를 전면 면제해준다. 지원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둘째, 고용주의 국민보험 분담금(NIC: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지원이다. 근무시간의 60% 이상을 자유무역항에서 보내는 직원의 NIC를 직원 1명당 연간 최대 2만 5,000파운드까지 36개월 동안 지원한다.

셋째, 자유무역항 내의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적격 지출 비용 100%를 소득 공제해준다. 지원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이다.

넷째, 자유무역항 내 비거주용 건물 개보수 및 신규 건설 비용에 특별 공제율(10%, 정액법)을 적용해준다. 일반 공제율(3%) 적용 시 33.3년 소요되는 상각 기간이 특별 공제율(10%)을 적용하면 10년으로 단축된다. 지원기간은 2026년 9월 29일까지 사용 개시한 건물 및 각 자유무역항이 정하는 기간까지이다.

236) UK Parliament, "Freeports Volume 647: debated on Thursday 11 October 2018," pp. 17-20.

237) GOV.UK(2021.10.27.), "Guidance Freepor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31).

다섯째, 비거주레이트(Business rates)로 25년간 100% 유보해준다.

여섯째,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된다.

일곱째, 관세 납부가 유보된다.

여덟째, Freeport Regulation Engagement Network를 통한 관련 규제 담당자와 직통 연락망 사용이 가능하다.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가.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영국은 2021년 4월 29일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국가안보 및 투자법(이하 NSI법)」²³⁸⁾을 제정, 안보 리스크가 있는 17개 분야의 기업 인수에 의무신고제를 도입하고 관할 부서를 신설하였다. 영국정부는 8주 동안(2020년 11월 11일~2021년 1월 6일) 투자자, 법무법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안보 리스크가 높은 17개 의무신고 분야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정의(definition)를 구체화했다.²³⁹⁾ 17개 의무신고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군용·이중용도 기술 ②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③ 양자기술 ④ 인공지능 ⑤ 암호화 인증기술 ⑥ 첨단소재 ⑦ 첨단 로봇공학 ⑧ 민간 핵(Civil Nuclear) ⑨ 통신 ⑩ 정부 주요 공급업체 ⑪ 응급서비스 주요 공급업체 ⑫ 데이터 인프라 ⑬ 방위 ⑭ 에너지 ⑮ 수송 ⑯ 합성 생물학 ⑰ 위성 및 우주기술

신고대상 인수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인수를 완료하는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238) NSI Act,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EXPLANATORY NOTES: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239)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Sectors in Scope of the Mandatory Regime," pp. 5-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5).

받게 되며, 벌금으로 당해 그룹 전 세계 매출액의 5% 또는 1,000만 파운드 중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NSI」법과 의무신고제도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0년 11월 12일 이전에 인수를 완료한 회사는 기업인수 신고제도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²⁴⁰⁾

「NSI」법 도입으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산하에 투자심사를 전담하는 ‘투자보안국(ISU: Investment Security Unit)’이 기존의 투자심사기관인 경쟁시장처(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와 별도 기관으로 신설되었다.²⁴¹⁾

「NSI」법 도입 이전, 영국정부는 「기업법(Enterprise Act 2002)」에 의거하여 CMA를 통해 반독점심사의 일환으로 공익심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진행하였으나, 「NSI」법의 도입으로 국가안보 관련 M&A 심사는 ISU에서 담당한다.²⁴²⁾

나.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범위: 「NSI」법의 적용대상

ISU는 적격 인수 요건, 적격 인수대상, 심사개시 요건이 갖춰진 M&A 투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적격 인수를 위해서는 ① 적격 기업체·자산 또는 해당 자산의 권리와 관련 있는 인수일 것 ② 인수 예정인 기업체·자산이 영국과 관련 될 것 ③ 적격 기업체·자산의 인수 지배 정도가 특정 임계치를 초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격 인수대상은 이하와 같은 기업체, 법인 및 재산 등이다.²⁴³⁾

240) GOV.UK(2021. 11. 15), “Guidanc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prepare for new rules about acquisi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6).

241) GOV.UK(2021. 3. 3), “Overview of the Investment Security Unit factshe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7).

242) GOV.UK(2021. 7. 20), “Guidance Th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alongside regulatory requireme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8); NS Energy, “Hinkley Point C Nuclear Power St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8).

243) NSI Act, S. 7.

기업체의 경우 외국에서 설립되어 영국에서 활동하거나 영국에 있는 사람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및 비법인으로, 다음의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회사, 유한책임 파트너십(a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그 외 기타 법인체, 파트너십, 비법인협회(uncorporated association), 신탁이 포함되고 자산은 토지, 이동 가능한 유형재산(tangible moveable property), 지식재산이 포함된다.²⁴⁴⁾

심사개시 요건(trigger events)은 기존 기업법의 경우 연매출,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은 M&A에 대해서만 심사하였으나, 「NSI」는 안보 관점에서 ① 영국 연매출 7,000만 파운드 이상 ② 합병·인수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 심사개시 요건을 설정한다.

기업 인수의 경우 보유 주식 또는 의결권이 증가하거나(25% 이하→25% 초과, 50% 이하→50% 초과, 75% 이하→75% 이상), 기타 기업의 정책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의 경우, 업무 관장 결의안을 통과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의 경우 심사를 개시한다. 자산 인수 시 적격 자산의 사용권 획득 또는 그 사용권의 범위가 인수 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확대된 경우, 적격 자산의 이용 방법을 지시 혹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그 권한의 범위가 인수 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확대된 경우 심사를 개시한다. 「NSI」법상 자발적 신고가 원칙이나 17개 분야의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부과하였고, 신고 의무대상 투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ISU는 자체적 판단하에 심사를 개시할 수 있다.²⁴⁵⁾

투자자가 소급 유효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ISU는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경우 해당 인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최대 5년

244) 「NSI」법상 지식재산으로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소스코드, 알고리즘, 공식(formula), 디자인, 계획·도면·사양,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함.

245) GOV.UK(2021. 7. 20).

또는 그 인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자체적으로 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call-in power)이 있다.

다. 신고 및 허가 절차

「NSI」상 신고 및 허가는 투자자의 심사 신청으로 개시되며, ISU는 해당 신고의 수리 또는 거절을 통보한다. 투자자의 신청이 접수되면 ISU는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투자의 적격 여부와 신고 형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신고의 수리 또는 거절을 통보한다. 신고가 수리된 모든 투자는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의 검토 기간(review period)을 거치며, 검토 기간 동안 ISU는 다음을 수행한다.

- 투자 진행 가능 여부 판단
- 국가안보 목적의 평가 진행 여부(call-in 여부) 판단
- 추가 정보 요청
- 투자자 혹은 관계자 소환 요청²⁴⁶⁾

ISU가 평가 진행(call-in)한 투자의 경우는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의 평가 기간(assessment period)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최대 45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 기간 동안 ISU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가처분 명령(interim order) 투자 조건을 훼손하는 투자자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은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가처분 명령이 없다면 투자자는 해당 투자를 계속할 수 있다.

ISU는 정보 통지 평가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자와 관련된 관계자를 소환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거나, 일정 조건하에서 투자가 가능하거나, 또는 심사에서 탈락하여 투자가 허용되

246) 추가 정보 또는 소환 요청기간은 검토기간 30일에 영향을 주지 않음.

지 않을 수 있다. 국가안보 평가를 통과한 투자는 재심사되지 않으나, 심사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misleading) 정보가 제공된 경우는 제외한다. 영국정부는 심사에서 탈락한 투자를 계속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탈락한 투자에 대해 해당 투자자와 논의를 통해 해당 투자를 변경하거나 폐지한다.

표 6-4. 「NSI」법 도입에 따른 국가안보적 측면의 투자심사제도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근거 법령	기업법 2002	국가안보 및 투자법 2021
주관부처	경쟁시장처(CMA)	투자보안국(ISU)
신고 유형	자발적 신고	의무신고, 자발적 신고
규제 분야 및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개 분야 - 군용·이중용도 기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 양자기술, 인공지능, 암호화 인증기술, 첨단소재 ※ 동 분야는 강화된 심사개시 요건 (연매출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7개 분야 - 기존 분야(6개) + 추가 11개 분야* *첨단로봇공학, 민간 핵, 통신, 정부 주요 공급업체, 응급서비스 주요 공급업체, 데이터 인프라, 방위, 에너지, 수송, 합성 생물학, 위성 및 우주기술 ※ 동 분야는 의무신고 대상
심사개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심사 사유 1. 합병·인수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될 경우 2. 영국 연매출 7,000만 파운드 이상 (단 상기 6개 분야는 연매출 100만 파운드 이상) + 국가안보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지배력 심사 사유와 무관하게 국가안보 사유로서, · 적격 법인의 주식 또는 의결권이 25% 이상 · 위의 임계값(25%)을 초과하는 법인의 추가 통제(50%, 75% 이상 취득) · 업무 관장 결의안의 통과를 확보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의결권 취득 · 법인에 대한 중대한 영향 또는 통제 · 토지 및 지식재산 등을 포함한 적격 자산에 대한 통제
심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국가안보 문제 판단 시 개입 통지 → 해당 기업이 관련 정보 제공 후 CMA 조사 및 소관부처 검토 → 조치 여부 결정 등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또는 의무 신고 → 조사개시 여부 검토 → 국가안보 평가 → 결과발표

자료: 전략물자관리원(2021. 7. 16),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동향」,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2. 8).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앞서 분석한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 규제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특정 산업의 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의 입장에서 특정 산업의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홍콩과 선진국의 사례가 가장 대표적 사례가 되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러 지원제도 중에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한 점이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내외국 기업 차별이 없는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홍콩의 경우 비즈니스 허브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업과 해운업의 소득에 대해서 면세를 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조세제도가 매우 단순하다. 홍콩의 경우 사업소득세, 재산세, 급여소득세만 있고, 판매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상속세가 없다.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수출입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홍콩은 또한 매우 방대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문에서 살

퍼본 바와 같이 홍콩은 ① 녹색 및 지속성장 보조금 제도 ② 혁신·기술기금 ③ 사이버포트 주관 인센티브 ④ 스마트교통기금 등으로 운영하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는 하나 운영 면에서 제약이 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폭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홍콩의 입지지원 제도는 특성화 단지를 만들어 기업을 지원하는데, 홍콩 사이언스 & 테크놀로지 파크가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홍콩은 도시 특성상 산업단지를 입지로 제공할 수는 없고, 주로 건물에 첨단과학기술 등에 특화된 스타트업 등을 지원하거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공간도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도 현재 다양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나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공간을 제공하는 입지 지원형 지원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투자 인센티브는 조세감면제도이다. 싱가포르의 조세감면제도는 매우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인 법인세 감면 제도를 비롯해서 선도 산업이나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식재산, 금융이나 재무관련 기능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콩과 마찬가지로 자유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임대제도, 해운업 인센티브와 같은 제도를 운영한다. 이러한 제도는 싱가포르를 물류 허브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경쟁력을 보다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금융 허브, 중개무역 중심지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이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다양하게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현금지원은 그 규모와 익명성으로 유명하다. 공식적으로 현금지원제도로 명시하고 있는 분야는 앞서 언급한 에너지 효율 증대기금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고, 아울러 건물 또는 구조물의 수리 및 확장에도 현금이 지원된다. 그 밖에도 스타트업 지원에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 역시 본질적으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다. 단 싱가포르의 현금지원은 대

부분 기업이 먼저 지출을 하고 이후 지출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통해 합법적이고 지원 규칙에 맞을 경우에만 현금 지원분이 지급된다. 기타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추고 싱가포르에 투자한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있고, 싱가포르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등이 싱가포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이에게 비자를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다.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말 그대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것이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화, 가치사슬의 고도화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자국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각 국가별로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업종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디지털전환(DX)으로 인해 파급되는 분야와 함께 AI, 빅데이터, 미래 모빌리티 등 다양한 첨단 및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직접 투자를 활용하고자 한다.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 산업을 선정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이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자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영국은 특히 보유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한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등의 지역에서 기업투자지역(Enterprise Zone)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영국 전역에 운영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존은 총 73개를 지정해서 개별 지역별로 유망한 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자에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투자형태에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주마다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트

럼프 행정부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친기업적 정책을 추진했고 이는 외투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도 조세감면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되는 인센티브이다. 현금지원제도도 산업혁신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혁신 파트너십, 초기 공학연구를 비롯해서 산학협력 연구 등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입지지원제도는 주로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과 같이 특구제도로 이용된다. 자유무역지역이나 기회특구 등이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지원 정책과 함께 지역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기업에 특화된 각종 우대조치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 역시 조세제도를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법인세 역시 인하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가 다르게 적용되고 오픈이노베이션, 지방 활성화를 위한 지방거점강화세제, 연구개발세제, 인재확보와 중소기업의 소득확대를 위한 세제, DX투자촉진 세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보다도 법인세의 활용에 있어서 그 범위가 훨씬 다양하고 넓다. 일본은 현금지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국내 투자에 우선적으로 현금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린이노베이션과 같은 미래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도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한다. 일본의 입지지원제도 역시 미국과 같이 특구 형태로 운영된다. 구조개혁신특구, 종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부흥특구, 스타트업 에코시티 거점도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도 고용창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먼저 조세감면제도로 세금을 소폭이나마 낮추고 있고 2023년

부터는 3단계로 나누어 법인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 감면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법인세율 혜택이 다양하다. 벤처캐피털제도, 기업투자제도, 초기기업투자제도 등이 대표적 사례이나 특히 기업투자제도 중에서도 특허박스제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국 내 지식 재산 등록을 독려하고 특허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특허를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영국 역시 현금지원제도를 외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주어진다. 입지지원제도로는 역시 특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앞서도 언급했듯이 엔터프라이즈 존이 있다. 창조산업클러스터, 자유무역항 등도 입지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이다.

공통적으로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현상 중의 하나는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을 높이는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자국 내에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엔젤사업이나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앞의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보았다. 우리 역시 여전히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①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②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 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

를,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③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의 하나가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사례에서 살펴본 다른 국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우리나라의 현금지원제도를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한도가 현재 교부형의 경우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지원 가능하므로 대여형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 등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그냥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의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FIRRTA)이 제정되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분석한바, 이하에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의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가. 우리의 외국인투자 규제법안 현황 비교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 수출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는 현행 법안으로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다. 「대외무역법」은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시행령 제32~35조에서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기술보호법」)은 제11조의 2(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대상 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 시행령 제18조의2~18조의7에 근거하여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방위사업법」은 제57조(수출 허가 등)에 근거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과 증개를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제4조(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6조(외국인투자 허가

등), 시행령 제5조 제1항(외국인투자 제한업종)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를 규제한다.

앞의 네 개의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안은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며, 경제안보 심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 한국의 안보심사대상 기술은 전략기술, 국가 핵심기술로 열거되어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법」은 특별법으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만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밖의 업종이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성을 포함한 경제안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미흡하다. 아울러 선진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인프라, 민감정보, 부동산 등을 규제할 제도적 공백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관련 주무부처가 산업부에 심사요청을 하지 않는 한 외투 심사가 불가능한 구조로, 경제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사대상과 신고절차에 있어서도 선진국은 직권조사 개시 등 실효적으로 안보를 심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취약해 직접적인 조사가 어렵고 안보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도 취약하다.

표 7-1. 미·일·영·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제도 비교

구분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주요 외국인 투자 규제법안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국방수권법(NDAA)	외국환 및 외국 무역법 경제안보추진법안 (가칭, 발의 중)	국가안보 및 투자법(NSI)	대외무역법 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주요 심사대상	FINSA에 명시된 11개 요소 중요기간시설 16개 분야 외국정부가 지원하는 거래	면허종류에 따라 상장 기업의 지분 취득 사전신고 면제 수준 차별화 및 투자 기준 강화	17개 의무신고 분야 지정 보유 주식 또는 의결권 증가, 기업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현행 투자제한 29개 업종 ※ 국가안보 위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선진 사례와 같이

표 7-1. 계속

구분	미국	일본	영국	한국
주요 심사대상	미국 비즈니스 지배권한 확보 핵심기술 관련 이전, 합작 투자, 지재권 거래, 국가안보시설 인근 부동산 특별 관심대상국의 핵심기술·재료 관련 모든 거래 신기술, 핵심인프라, 민감한 개인정보 27개 중요기술과 중요 사회기반시설, 중요기술에 대한 투자는 신고의무 부과	일반면허 보유 외투는 지분 10%에서 1%로 사전신고기준 강화 사전신고대상 155개 업종 지정 해외주주가 일본 기업의 경쟁력 저하, 기술유출 관련 요구 시 일본정부가 저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 중	영국 연매출 7,000만 파운드 이상, 합병·인수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이 25% 이상이 될 경우 국가안보 위험 소지로 의심되는 경우 ISU에서 심사	심사대상 확대가 필요하고 외국인투자 지분 요건도 낮출 필요
신고 및 허가 절차	의무심사대상 투자는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나 잠재적 세이프하버 레터를 받으면 심사 면제 CFIUS가 최대 45일간 투자심사, 대통령 결정 필요시 조사 완료 후 15일 이내 결정 국가안보 위험 시 투자 불허,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나 조정 불가 시 대통령 결정으로 회부	사전신고 업종 또는 신고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은행을 통해 신고 신고대상이며 주식 1% 이상 매매 시 심사의무 사전신고 면제는 포괄면제와 일반면제로 분류 시행 30일 이내 조사 평가 및 결과 통보	투자자의 신고 및 심사 신청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 내 조사 필요에 따라 최대 45일까지 연장 국가안보 평가 및 통보	투자자가 KOTRA 또는 은행에 신고 주무부처와 정보수사 기관장의 의견을 토대로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 ※ 외국인투자촉진법 도입 이후 외국인투자 심사사례 전무
투자 심사기관	CFIUS	대일직접투자 추진회의*	투자보안국(ISU)	산업부

주: * 일본은 현재 재무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처가 참여하는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가 외국 자본의 일본기업 출자 사전심사 및 출자 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미국의 CFIUS와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 중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음.
자료: 저자 작성.

나. 외국인투자 안보심사 강화 필요

앞서 선진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외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우리 역시 우리 기술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서, 일단 제도적으로라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특정 국가의 투자가 대폭 증가 추세여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이 국가는 2015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 투자였으나,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M&A에 집중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으로 이 나라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1억 달러를 넘는 투자가 18건으로, 총 119억 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2019년에는 이 나라의 철강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자 했으나, 국내 철강시장 교란을 비롯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 법률은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간접투자를 규제할 방법도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사모펀드로 들어오는 투자는 실제 원투자자를 확인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일부 국가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한 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국제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외직접투자를 보고 있는 이 나라는 최근 제3국을 거쳐 EU로 투자해 M&A를 성사시킨 사례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36건이나 된다.²⁴⁷⁾ 이 나라의 경우 주요 경유국으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131건(55%)과 29건(12%)으로 활용했다. 즉 이 나라의 경우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를 활용해 M&A를 추진한 것이다. 그 밖에도 스위스 20건(8%), 미국 20건(8%),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6건(2.5%), 호주 2건(1%)을 경유국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47) 양평섭 외(2020)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치를 업데이트하였으며, EU 회원국에 영국을 포함함.

우리나라의 경우 제3국 자본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해외로 진출하여 회사를 인수한 사례도 있다. 2012년에는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게임회사가 독일의 게임회사를 인수한 사례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한 여러 사례로 인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일본, 영국 역시 자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동맹국가로부터 안보적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를 권고받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강화가 요구된다.

앞서 언급한 선진국의 외투 안보심사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측면에서 외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들은 기업 인수자의 배경과 인수의도, 기업인수자의 시장지배력, 대체기업의 존재, 기술 및 지식재산권 수준, 최종소비자 등 종합적인 영향 평가 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피인수기업의 국내시장 구조와 시장지배력,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수준 등 향후 발생하게 될 경제·산업적 영향 평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로 인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국내 생산업체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투자자의 배후 등이 외국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거래인지 등에 대해 평가하고, 피인수자의 취약성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기업인수자나 이해관계자가 향후 확보하게 될 기업에 대한 통제권, 접근권, 영향력 등 직·간접 투자자에 대한 통제와 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일·영은 핵심기술에 대한 확대와 신고의무제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우리 역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신기술·핵심 인프라·민감한 개인정보(TID)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데이터 보안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며 모바일 네트

워크, 라우팅, 신기술, 데이터 저장 및 처리를 포함하는 업종의 경우 경제안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규제해야 한다.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침입, 무단 모니터링 및 정보 탈취, 물리적 파괴를 비롯해 시스템 내 기술 손상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 측면에서도 통신 네트워크 분야의 외국인투자 규제가 필요하다.

다. 외국인투자 심사대상 범위 확대²⁴⁸⁾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주력산업과 성장동력 산업의 핵심기술만 열거하고 있고 최근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산업 분야는 부재하므로, 향후 대상을 산업 및 업종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일·영은 AI, 양자컴퓨팅, 나노로봇, 빅데이터, 첨단소재, 합성생물학, 데이터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고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해 외투심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 현행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사모펀드의 사전신고, 사후관리, 재투자 시에 대한 대응방안도 보완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지분 취득) 심사대상 강화 및 사전심사 면제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사전심사대상 기업과 비심사대상 기업으로 분류하고, 이후 심사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앞서 일본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포괄면허, 일반면허, 면허이용불가 세 종류로 분류하고 면허 종류에 따라서 심사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까지 면허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제도의 단순 명료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248)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 여부 검토대상 4개의 심사요소: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 등 취득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①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③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전신고대상 업종 선별에 있어서는 일본과 같이 사전신고 지정업종을 정하고 신고 지정업종에서도 핵심업종과 비핵심업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전신고 지정업종 선정에 있어서는 현행 투자제한 29개 업종과 함께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신규 24개 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즉 ① 화학(현행 화학물질·화학제조) ② 정보통신 상용시설(commercial facilities) ③ 정보통신 ④ 핵심제조업 ⑤ 댐 ⑥ 방위산업기지 ⑦ 비상사공급(emergency service) ⑧ 정보기술 ⑨ 항공·우주 ⑩ 플랫폼 사업 분야(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 등) ⑪ 양자기술 ⑫ AI ⑬ 양자컴퓨팅 ⑭ 나노로봇 ⑮ 빅데이터 ⑯ 첨단소재 ⑰ 합성생물학 ⑱ SW ⑲ 민간핵(Civil Nuclear) ⑳ 배터리 ㉑ 바이오·생명공학 ㉒ 나노공학 ㉓ 반도체 ㉔ 신생 기초기술 등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전심사 업종을 지나치게 기술 위주로 지정할 경우 보호의 폭을 좁히고 오히려 기술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는바, 지정업종은 전략적으로 포괄적이고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사전신고 및 안보심사 기준

사전신고 기준은 현재 제한업종(본문에서는 핵심업종)의 경우 외국인투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투자 허가 분야의 경우 50% 미만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25% 미만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 현행 외투 제한업종 29개 중 외투 허용 비율이 가장 낮은 정보서비스업 분야(뉴스제공업) 25%에 기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사전신고 지정업종 중 핵심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25% 이상 지분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반면 사전신고 지정업종 중 비핵심업종은 50% 이상 지분 취득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안보심사 기준은 외국인투자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경제안보적 시각에서 평가 요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심사항목을 ① 위협요인 ② 취약요인 ③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되, 아래 내용과 같이 미국의 심사항

목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미국 CFIUS를 모델로 9개 요소를 심사항목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다음과 같이 ① 특별 관심대상 국가 ② 시장점유율 ③ 기술적 우위 ④ 국방 및 국가안보 비용에 미치는 영향 ⑤ 범죄 또는 사기행위 조장 ⑥ 사이버보안 ⑦ 외국인투자자의 법률 준수 ⑧ 개인 식별 정보의 보안 ⑨ 기타 민감한 정보의 보안²⁴⁹⁾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평가 방식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누어 평가기준을 만들고, 비계량 평가요소는 시대적 상황(경제 및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배점과 가중치를 조정해야 한다.

심사 고려사항으로, 사전심사가 의무화된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며 비핵심 분야는 자발적으로 거래를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영국 사례를 원용하여 자발적 신고절차에 따라 통지되지 않은 거래이지만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거래²⁵⁰⁾의 경우 거래 완료 후 5년 내에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개념 정의와 관련하여 영국의 「NSI」법도 국가안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사례별로 대상, 취득인(적대적인 국가 또는 조직인지 여부), 통제 유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다.²⁵¹⁾ 심사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외투심사 시 공공질서, 국가안보 목적 등을 감안한 12가지 고려요인을 발표한바,²⁵²⁾ 우리나라도 이를 감안하여 심사 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49) Mays and Whitten(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50) Scargill(2022. 1. 5), "The UK's new national security review regime goes l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51) BEIS(2021, 7. 20),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Draft state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252) 財務省(2020. 5. 28),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等の事前届出について財務省及び事業所管省庁が審査に際して考慮する要素」,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마. 신고·허가·관리 과정 개선

외국인투자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제출 요구권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실효적 안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국인투자자는 은행이나 KOTRA에 투자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바, 이 수탁기관이 포괄적 정보를 수집하여 외국인투자 소관부처인 산업부에 통보하고 산업부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통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0. 공포, 2020.2.21. 시행: 이하 개정법)」이 이루어졌으나,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법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센티브 제공에 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기능을 안보심의의 기능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분산된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의 안보적 의미가 보다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자 유치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다. 집행 조직이 있어야 현재의 계획을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는바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외투 전체를 면밀히 상시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책은 행동의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1월 중국 가전업체인 메이디(MEIDI)는 독일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쿠카(KUKA)를 인수, 쿠카 지분의 94.55%(약 49억 달러)를 소유한 바 있다. 인수 과정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자국기업 인수에 대한 독일 내 반발이 컸으나, 인수 이후 경영 독립성 보장 및 고용승계 등을 조건으로 인수가 이루어졌다. 이 사례는 독일은 물론 EU 회원국

사이에 중국을 비롯한 제3국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접근에 대한 우려와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중국 국가전망공사(SGCC: State Grid Corporation of China)가 독일의 50Hertz(독일 송전시스템 운용사)를 인수하고자 했으나, 독일정부가 경제안보를 근거로 인수를 저지한 바 있다. SGCC는 50Hertz 지분의 20%를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독일 국영은행인 KfW(독일재건은행)가 50Hertz의 지분 20%를 선매입함으로써 인수를 차단했다. 상기 독일의 사례와 같이 독일의 국책은행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현명하게 처리한 사례를 교훈 삼아 우리 국책은행이나 국민연금 등에 적극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규판. 2021.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승현. 2021. 「일본 기업들의 중국산 드론 배제 추진 동향과 전망. 제9호 지역연구 공동동향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나수엽, 김영선. 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투자규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평섭, 이철원, 나수엽, 오탈현, 김영선, 윤형준, 강유덕. 2020.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전략지역심층연구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탈현, 윤지현, 박나연. 2020.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 經濟産業省 産業技術環境局. 「研究開発税制の概要と令和3年度税制改正について」.
- 經濟産業省.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概要説明資料(2次公募)」.
- SBIR. 「SBIR制度における特定新技術補助金等のリスト」.

[영문자료]

- Evenett, Simon J. 2021. “What Caused The Resurgence In FDI Screening?”
- Jeong, Hyung-gon. 2015. “Promoting Dynamic & Innovative Growth in Asia.” KIEP Policy Analysis 16-01.
- Mistura, Fernando and Caroline Roulet. 2019.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o Statutory Restrictions Matter?” OECD.
- OECD. 2021. “Corporate Tax Statistics.”
- _____. 2021. “Statement on a Two-Pillar Solution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UNCTAD. 2021. “World Investment Report 2021.”

[온라인 자료]

김민배. 2020.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과 특징」.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628137#none(검색일: 2021. 12. 22).

전략물자관리원. 2021. 「영국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동향」. (7월 16일). <https://www.kosti.or.kr/web/contents/issReport.do?schM=view&page=1&viewCount=8&id=3787&schBdcode=&schGroupCode=#none>(검색일: 2022. 2. 8).

홍콩 관세국. 2020.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22 (Revised).” <https://www.ird.gov.hk/eng/pdf/dipn22.pdf>(검색일: 2022. 1. 7).

_____. 2022. “Dutiable Commoditi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dutiable/index.html(검색일: 2022. 1. 7).

_____. “Motor Vehicles.” https://www.customs.gov.hk/en/trade_facilitation/vehicles/index.html(검색일: 2022. 1. 7).

_____. “Limited Double Taxation Agreements.” https://www.ird.gov.hk/eng/tax/dta_ldta.htm(검색일: 2022. 1. 7).

홍콩 교통국. “Smart Traffic Fund: Guide to Application.” https://www.hkpc.org/sites/default/files/2021-03/stf_guide_en.pdf(검색일: 2022. 1. 7).

홍콩 국세청. “The Inland Revenue (Amendment) (No. 3) Ordinance 2018.” <https://www.gld.gov.hk/egazette/pdf/20182213/es12018221313.pdf>(검색일: 2022. 1. 7).

홍콩 금융관리국. “Guideline on the Green and Sustainable Finance Grant Scheme.” <https://www.hkma.gov.hk/media/eng/doc/key-information/press-release/2021/20210504e4a1.pdf>(검색일: 2022. 1. 7).

_____. “Dominant Gateway to China.” <https://www.hkma.gov.hk/eng/key-functions/international-financial-centre/hong-kong-as-an-international-financial-centre/dominant-gateway-to-china/>(검색일: 2022. 1. 7).

- 홍콩 재무장관. 2021. “The 2021-22 Budget.” https://www.budget.gov.hk/2021/eng/pdf/e_budget_speech_2021-22.pdf(검색일: 2022. 1. 7).
- 홍콩 혁신기술 위원회. “Technology Voucher Programme(TVP): Guidance Notes for Applications.” https://www.itf.gov.hk/filemanager/publication/en/upload/1215/TVP-guide-e_202006.pdf(검색일: 2022. 1. 7).
- 경제산업성. 2021.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 (3月 3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12003/20210312003-1.pdf> (검색일: 2021. 12. 14).
- _____.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の基本方針(概要)」.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12003/20210312003-2.pdf>(검색일: 2021. 12. 14).
- _____. 「グリーゾーン解消制度・プロジェクト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新事業特例制度」. https://www.meti.go.jp/policy/jigyousaisei/kyousouryoku_kyousouka/shinjigyo-kaitakuseidosuishin/(검색일: 2021. 12. 15).
- _____. 「対内直接投資の推進」. 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5references/siryu_07.html(검색일: 2021. 12. 7).
- _____. 「対内直接投資促進に係る施策情報」. 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5references/siryu_06.html(검색일: 2021. 11. 5).
- _____. 「DX投資促進税制Q&A」.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yosoryoku_kyoka/jigyo-tekio.html(검색일: 2021. 12. 14).
- _____.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 2次公募について」. <https://www.meti.go.jp/covid-19/supplychain/index.html>(검색일: 2021. 12. 13).
- _____.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の採択事業が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0/11/20201120005/20201120005.html>(검색일: 2021. 12. 13).
- _____.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2次公募)の採択事業が決定されました」. <https://www.meti.go.jp/press/2021/07/20210702003/20210702003.html>(검색일: 2021. 12. 13).
- _____. 「研究開発税制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tech_promotion/tax/about_tax.html(검색일: 2021. 12. 10).
- _____. 2020. 「令和3年度(2021年度)経済産業関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月 12日). https://www.meti.go.jp/main/yosan/yosan_fy2021/pdf/zeisei.

- pdf(검색일: 2021. 12. 14).
- _____. 「「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促進税制」について」.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keiei_innovation/open_innovation/open_innovation_zei.html(검색일: 2021. 11. 5).
- _____. 「外国人起業活動促進事業に関する告示」. <https://www.meti.go.jp/policy/newbusiness/startupvisa/index.html>(검색일: 2021. 12. 15).
- _____. 「人材確保等促進税制」.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syotokukakudaisokushin/syotokukakudai.html>(검색일: 2021. 12. 10).
- _____. 「中小企業向け所得拡大促進税制」. <https://www.chusho.meti.go.jp/zaimu/zeisei/syotokukakudai03guidebook.pdf>(검색일: 2021. 12. 10).
- _____. 「地域未来投資促進法」. https://www.meti.go.jp/policy/sme_chiiki/chiikimiraitoushi.html(검색일: 2021. 12. 9).
- _____. 「地域未来投資促進法に基づく支援措置」. https://www.meti.go.jp/policy/sme_chiiki/miraitoushi/file/miraihou_shiensochi2104.pdf(검색일: 2021. 12. 9).
- _____. 「地域への外国企業誘致をサポートする「地域への対日直接投資サポートプログラム」支援対象自治体を追加決定しました(東広島市)」.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5002/20210305002.html>(검색일: 2021. 12. 14).
- _____. 「特定多国籍企業による研究開発事業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アジア拠点化推進法)ガイドライン」. <https://www.meti.go.jp/policy/investment/pdf/01guidline.pdf>(검색일: 2021. 12. 7).
- _____. 2021. 「令和4年度 経済産業政策の重点」. (8月). <https://www.meti.go.jp/main/yosangaisan/fy2022/pdf/01.pdf>(검색일: 2021. 12. 17).
- 国家戦略特区. 「創業人材等の多様な外国人の受入れ促進」.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punch/y3-2.pdf>(검색일: 2021. 12. 15).
- _____. 2020. 「創業外国人材の事業所確保要件の緩和」. (3月).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punch/y3-8.pdf>(검색일: 2021. 12. 15).
- _____. 2020. 「外国人留学生の創業活動の促進」. (3月).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punch/y3-9.pdf>(검색일: 2021. 12. 15).
- 国税庁. 「No.5759・法人税の税率」.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hojin/5759.htm> (검색일: 2021. 12. 6).
- 内閣官房. 2021. 「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 (11月 19日).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actions/202111/19keizaiampo.html(검색일: 2021. 12. 17).

- _____.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第1回)議事要旨. https://www.cas.go.jp/jp/seisaku/keizai_anzen_hosyohousei/dai1/gijiyousi.pdf (검색일: 2021. 12. 17).
- _____. 2021. 「経済安全保障法制に関する有識者会議」. (11月 26日). https://www.cas.go.jp/jp/seisaku/keizai_anzen_hosyohousei/dai1/siryousi.pdf(검색일: 2021. 12. 17).
- 内閣官房 成長戦略会議事務局. 2021. 「新技術等実証制度(プロジェクト型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について」. (6月).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pdf/underlyinglaw/sandboximage827.pdf>(검색일: 2021. 12. 15).
- 内閣府. 「国家戦略特区の活用事例 -令和3年版-」.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katsuyoujirei.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対日直接投資促進戦略(案)」. http://www.invest-japan.go.jp/committee/council_09/shiryosyo_01.pdf(검색일: 2021. 12. 6).
- _____. 「対日直接投資推進会議の開催について」. http://www.invest-japan.go.jp/committee/about_council.pdf(검색일: 2021. 11. 5).
- _____. 「世界と伍する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形成」. <https://www8.cao.go.jp/cstp/openinnovation/ecosystem/index.html>(검색일: 2021. 12. 14).
- _____. 2020.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拠点都市の選定について」. (7月 14日). <https://www8.cao.go.jp/cstp/stmain/20200714.html>(검색일: 2021. 12. 14).
- _____. 2021. 「令和3年度特定新技術補助金等の支出の目標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 (6月 18日). https://sbir.smrj.go.jp/about/idgab700000007s7-att/R3tokuteisinkijutu_hoshin.pdf(검색일: 2021. 12. 13).
- _____. 「指定補助金等の交付等に関する指針について」. https://sbir.smrj.go.jp/about/idgab700000007s7-att/siteihojokin_shishin.pdf(검색일: 2021. 12. 13).
-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index.html> (검색일: 2021. 12. 8).
- _____. 「区域計画の認定状況について」.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jigyosyo_all.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国家戦略特区の指定区域」.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shiteikuiki.html>(검색일: 2021. 12. 8).

- _____. 「全国措置」.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menu/zenkoku.html>(검색일: 2021. 12. 8).
- 内閣府 地方創生推進事務局. 「(パンフレット 1)地方拠点強化税制のご案内」. <https://www.chisou.go.jp/tiiki/tiikisaisei/pdf/03pamphlet.pdf>(검색일: 2021. 12. 9).
- 内閣府, 文部科学省, 経済産業省. 2020. 「スタートアップ・エコシステム形成に向けた支援パッケージ」. (7月). <https://www8.cao.go.jp/cstp/siryu/haihuio50/siryu2-1.pdf>(검색일: 2021. 12. 14).
- 内閣府地方創生推進事務局. 「国家戦略特区支援利子補給金制度の概要」. https://www.chisou.go.jp/tiiki/kokusentoc/pdf/kokka_gaiyou_r3.9.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構造改革特区」. <https://www.chisou.go.jp/tiiki/kouzou2/index.html>(검색일: 2021. 12. 8).
- _____. 2021. 「構造改革特別区域基本方針(抄)」. https://www.chisou.go.jp/tiiki/kouzou2/housin_k/210706_hyouka_kihon.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総合特区」. <https://www.chisou.go.jp/tiiki/sogotoc/index.html>(검색일: 2021. 12. 8).
- _____. 「総合特区一覧」. https://www.chisou.go.jp/tiiki/sogotoc/pdf/sogotoc_gaiyo_2104.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総合特区制度の概要」. https://www.chisou.go.jp/tiiki/sogotoc/toc_ichiran/index.html(검색일: 2021. 12. 8).
- _____. 「総合特区ベストプラクティス事例集(2021年4月作成)」. https://www.chisou.go.jp/tiiki/sogotoc/jigo_hyouka/bestpractice.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総合特区税制の概要」. https://www.chisou.go.jp/tiiki/sogotoc/siryu/r02sougouzeisei_gaiyou.pdf(검색일: 2021. 12. 8).
- 対日直接投資推進会議. 2018. 「地域への対日直接投資サポートプログラム」. (5月17日). http://www.invest-japan.go.jp/committee/support_program_jp.pdf(검색일: 2021. 12. 14).
- 独立行政法人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SBIR」. <https://sbir.smrj.go.jp/index.html>(검색일: 2021. 12. 13).
- 復興庁.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の改正概要」.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sub-cat1-13/210401setsumeisiryu.pdf>(검색일: 2021. 12. 8).

- _____. 2021. 「東日本大震災復興特別区域法資料」. (4月).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main-cat1/sub-cat1-13/210401setsumeisiryou.pdf>(검색일: 2021. 12. 9).
- 首相官邸. 「国家戦略特区」. https://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iryaku_tokku2013.html(검색일: 2021. 12. 8).
- _____. 2020. 「政府機関等における無人航空機の調達等に関する方針について(案)」. (9月). <https://www.kantei.go.jp/jp/singi/kogatamujinki/dai10/siryou2.pdf>(검색일: 2021. 12. 20).
- 財務省. 「令和2年末現在本邦対外資産負債残」.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reference/iip/data/2020.htm(검색일: 2021. 12. 6).
- _____. 「一般会計歳出予算補正(第1号)各目明細書, 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main/yosan/yosan_fy2020/hosei/pdf/meisai_ippan.pdf(검색일: 2021. 12. 13).
- _____. 「一般会計歳出予算補正(第3号)各目明細書, 経済産業省」. https://www.meti.go.jp/main/yosan/yosan_fy2020/hosei/pdf/hosei3_meisai_ip.pdf(검색일: 2021. 12. 13).
- _____. 「最近の外為法改正」.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index.html(검색일: 2021. 12. 17).
- _____. 2020.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関連政省令·告示改正について」. (4月24日).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kanrenshiryoku01_20200424.pdf(검색일: 2021. 12. 16).
- _____. 2020. 「外為法に基づく対内直接投資等の事前届出について財務省及び事業所管省庁が審査に際して考慮する要素」. (5月28日).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200508.htm(검색일: 2022. 1. 7).
- 財務省国際局調査課投資企画審査室. 2021. 「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事前届出件数等について(令和2年度/2020年度版)」. (7月).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20210707-2.pdf(검색일: 2021. 12. 17).
- 参議院常任委員会調査室·特別調査室. 2021.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 新法の概要及びその解釈に係る国会答弁 - 」. (9月10日).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1pdf/2

- 0210910016.pdf(검색일: 2021. 12. 20).
- _____. 2021. 「重要土地等調査規制法 - 国会における主な議論 -」. (10月 1日).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1pdf/20211001003s.pdf(검색일: 2021. 12. 20).
- 総務省. 「5G投資促進税制の創設」. <https://www.soumu.go.jp/johotsusintokei/whitepaper/ja/r02/html/nd112340.html>(검색일: 2021. 12. 16).
- _____. 2019. 「5G投資促進税制」. (12月 10日).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60106.pdf(검색일: 2021. 12. 16).
- _____. 2020.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導入計画」認定申請に関する申請要領. (12月 24日).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29097.pdf(검색일: 2021. 12. 20).
- _____. 2020. 「- 特定高度情報通信技術活用システムの開発供給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12月 24日).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29096.pdf(검색일: 2021. 12. 16).
- _____. 2021. 「令和4年度総務省所管予算 概算要求の概要」. (8月).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68755.pdf(검색일: 2021. 12. 16).
- 経済産業省. 2020. 「令和3年度(2021年度) 経済産業関係 税制改正について」. (2月 12日). <https://www.meti.go.jp/main/yosan/yosanfy2021/pdf/zeisei.pdf>(검색일: 2021. 12. 14).
- 出入国在留管理庁. 「高度人材ポイント制による出入国在留管理上の優遇制度」. https://www.moj.go.jp/isa/publications/materials/newimmiact_3_index.html
(검색일: 2021. 12. 15).
- _____. 「高度人材ポイント制 Q&A」. <https://www.moj.go.jp/isa/content/930001663.pdf>(검색일: 2021. 12. 15).
- 厚生労働省 都道府県労働局. 「雇用促進計画提出の手続きパンフレット(令和2年度以降に適用年度が開始する場合)」. <https://www.mhlw.go.jp/content/000617646.pdf>(검색일: 2021. 12. 9).
- JETRO. 「自治体への外国・外資系企業誘致活動支援」. https://www.jetro.go.jp/invest/jetros_support/localgovernments/(검색일: 2021. 12. 14).
- _____. 「政府のインセンティブ」. https://www.jetro.go.jp/invest/support_programs/incentive/(검색일: 2021. 12. 9).
- NEDO.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 <https://www.nedo.go.jp/activities/green-innovation.html>(검색일: 2021. 12. 14).
- NISC. 2020. 「委託先等で発生した政府機関の要保護情報に係るセキュリティイン

- シデンツの情報共有に関する申合せ」. (6月 30日). https://www.nisc.go.jp/active/general/pdf/itakusaki_moshiawase.pdf(검색일: 2021. 12. 20).
- Atlantic Link. “Atlantic Link Brochure.” <http://atlanticlinkcampus.com/wp-content/uploads/atlantic-link-210x210-brochure.pdf>(검색일: 2021. 12. 31).
- BEIS. 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Draft statement for the purposes of Section 3.” (July 20).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004026/draft-section-3-statement.pdf(검색일: 2022. 1. 7).
- British Film Institute. “About UK creative industry tax reliefs.” <https://www.bfi.org.uk/apply-british-certification-tax-relief/about-uk-creative-industry-tax-reliefs>(검색일: 2021. 12. 29).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Exon-Florio National Security Test for Foreign Investment.” <https://sgp.fas.org/crs/natsec/RL33312.pdf>(검색일: 2022. 1. 7).
- _____. “Huawei and U.S. Law.”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693>(검색일: 2022. 1. 7).
- Creative Industries Cluster Programme. <https://creativeindustriesclusters.com/>(검색일: 2021. 12. 31).
- Cyberport. <https://www.cyberport.hk/en>(검색일: 2022. 1. 7).
- _____. “Professional Programme (PP), Note(1).” <https://www.cyberport.hk/en/professional-programme>(검색일: 2022. 1. 7).
- _____.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 (“CCMF”) Professional Programme & Hong Kong Young Entrepreneur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https://www.cyberport.hk/2021ccmf/doc/ENC-RF-015a.pdf>(검색일: 2022. 1. 7).
- _____. “Cyberport Greater Bay Area Young Entrepreneurship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https://www.cyberport.hk/2021ccmf/doc/ENC-RF-015b.pdf>(검색일: 2022. 1. 7).
- _____. “Cyberport Creative Micro Fund (“CCMF”) – Cyberport University Partnership Programme: Guides and Notes for the Applicants.” <https://www.cyberport.hk/2021ccmf/doc/ENC-RF-015c.pdf>(검색일: 2022. 1. 7).
- _____. “Cyberport Accelerator Support Programme.” <https://www.cyber>

- port.hk/en/about_cyberport/cyberport_partners/cyberport_accelerator_support_programme(검색일: 2022. 1. 7).
- _____. “Guides and Notes for Overseas/Mainland Market Development Support Scheme.” <https://www.cyberport.hk/download/mdss/Guides-and-Notes-for-Overseas-Mainland-Market-Development-Support-Scheme-MDSS.pdf>(검색일: 2022. 1. 7).
- _____. “Cyberport Macro Fund.” https://www.cyberport.hk/en/cyberport_macro_fund(검색일: 2022. 1. 7).
- Deloitte.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https://www2.deloitt.com/content/dam/Deloitte/us/Documents/Tax/us-tax-foreign-derived-intangible-income-brochure.pdf>(검색일: 2022. 1. 7).
-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Sectors in Scope of the Mandatory Regim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65784/ansi-scope-of-mandatory-regime-gov-response.pdf(검색일: 2022. 2. 5).
- DSIRE. “Find Policies & Incentives by State.” <https://www.dsireusa.org/>(검색일: 2022. 1. 7).
- _____. “Business Energy Investment Tax Credit (ITC).” <https://programs.dsireusa.org/system/program/detail/658>(검색일: 2022. 1. 7).
- EDB. “Information on REG(E).”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html>(검색일: 2022. 1. 7).
- _____.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 (LIA) - MAIN BROCHUR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LIA%20Brochure.pdf>(검색일: 2022. 1. 7).
- _____. “Tech@SG Programme.”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tech-sg.html>(검색일: 2022. 1. 7).
- _____. “Tech@SG—Recognised investment firms.”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and-schemes/tech-sg/tech-sg-recognised-investment-firms.html>(검색일: 2022. 1. 7).
- _____. “Global Investor Programm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global-investor-programme/GIP%20Factsheet%20\(English\)%2016%20August%202021.pdf](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global-investor-programme/GIP%20Factsheet%20(English)%2016%20August%202021.pdf)(검색일: 2022. 1. 7).
- _____. “Tech.Pass.” <https://www.edb.gov.sg/en/how-we-help/incentives>

- and-schemes/tech-pass.html#how-to-apply(검색일: 2022. 1. 7).
- EDBI. “Guidance for Special Situation Fund for Startups (SSFS) application.” [https://www.edbi.com/news-room/latest-news/guidance-for-special-situation-fund-for-startups-\(ssfs\)-application](https://www.edbi.com/news-room/latest-news/guidance-for-special-situation-fund-for-startups-(ssfs)-application)(검색일: 2022. 1. 7).
- Enterprise Singapore. “Enterprise Financing Scheme(EFS).”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loans-and-insurance/loans-and-insurance/enterprise-financing-scheme/overview>(검색일: 2022. 1. 7).
- _____. “Global Trader Programme.” <https://www.enterprisesg.gov.sg/financial-assistance/tax-incentives/tax-incentives/global-trader-programme>(검색일: 2022. 1. 7).
- _____. “Section 13H/Fund Management Incentive (S13H/FMI).”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4893/startup-sg-investor/section-13h-fund-management-incentive-s13h-fmi>(검색일: 2022. 1. 7).
- Finance Committee of the Legislative Council. “Background of ITVF ((FCR2016-17)67).”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43/FCR-2016-17-67.pdf(검색일: 2022. 1. 7).
- Global Trade Alert(검색일: 2021. 11. 4).
- Goodman, Albert. 2019. “GOODWILL TAX RELIEF CHANGES FROM APRIL 2019.” (May 22). <https://albertgoodman.co.uk/insights/goodwill-tax-relief-changes-from-april-2019>(검색일: 2021. 12. 29).
- GOV.UK. 2015. “Guidance Oil and gas: Ring Fence Corporation Tax.” (July 31). <https://www.gov.uk/guidance/oil-gas-and-mining-ring-fence-corporation-tax>(검색일: 2021. 12. 27).
- _____. 2017. “Guidance Petroleum Revenue Tax.” (March 17). <https://www.gov.uk/guidance/oil-gas-and-mining-petroleum-revenue-tax>(검색일: 2021. 12. 27).
- _____. “Guidance Use a venture capital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raise-money-by-offering-tax-reliefs-to-investors>(검색일: 2021. 12. 28).
- _____. “Guidance Use a venture capital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knowledge intensive company.” <https://www.gov.uk/guidance/use-the-enterprise-investment-scheme-eis-to-raise-money-for-research-development-or-innovation>(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21. “Guidance Tax relief for investors using venture capital schemes.” (July 7).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tax-relief-for-investors>(검색일: 2022. 1. 7).
- _____. 2019. “Guidance Use the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EIS)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July 11).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apply-for-the-enterprise-investment-scheme> (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18. “Guidance Use the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to raise money for your company.” (October 12).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apply-to-use-the-seed-enterprise-investment-scheme>(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19. “Guidance Use SITR to raise money for your social enterprise.” (January 25). <https://www.gov.uk/guidance/venture-capital-schemes-apply-to-use-social-investment-tax-relief>(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21. “HMRC internal manual Venture Capital Schemes Manual: VCM50000.” (September 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venture-capital-schemes-manual/vcm50010>(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20. “Guidance Claiming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reliefs.” (March 20).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search-and-development-rd-relief>(검색일: 2021. 12. 28).
- _____. 2020. “Guidance Use the Patent Box to reduce your Corporation Tax on profits.” (May 7).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the-patent-box>(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18. “Guidance Creative Industry tax reliefs for Corporation Tax.” (February 15).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creative-industry-tax-reliefs#state-aid>(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1. “Guidance Claiming Theatre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January 26). <https://www.gov.uk/guidance/claiming-theatre-tax-relief-for-corporation-tax>(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0. “Guidance Claiming Orchestra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February 10). <https://www.gov.uk/guidance/claiming-orchestra-tax-relief-for-corporation-tax>(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0. “Guidance Claiming Museums and Galleries Exhibition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February 10). <https://www.gov.uk/guidance/claiming-museums-and-galleries-exhibition-tax-relief-for-corporation-tax>(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19. “Guidance Corporation Tax relief on goodwill and relevant assets.” (June 4).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relief-on-goodwill-and-relevant-assets>(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0. “Guidance Corporation Tax: terminal, capital and property income losses.” (June 22).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terminal-capital-and-property-income-losses>(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1. “Guidance Work out and claim relief from Corporation Tax trading losses.” (July 5). <https://www.gov.uk/guidance/corporation-tax-calculating-and-claiming-a-loss>(검색일: 2021. 12. 29).
- _____. 2021. “HMRC internal manual Company Taxation Manual.” (December 1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mpany-taxation-manual/ctm04000>(검색일: 2021. 12. 30).
- _____. “Guidance Regional Growth Fund.” <https://www.gov.uk/guidance/understanding-the-regional-growth-fund>(검색일: 2021. 12. 30).
- _____. “Finance and support for your business.” https://www.gov.uk/business-finance-support?page=1&types_of_support%5B%5D=grant (검색일: 2022. 3. 8).
- _____. “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https://www.gov.uk/business-finance-support/innovate-uk-grant-funding-innovation-loans-and-expert-support>(검색일: 2021. 12. 30).
- _____. 2021. “Guidance Freeports.” (October 27). <https://www.gov.uk/guidance/freeports>(검색일: 2021. 12. 31).
- _____. 2021. “Guidanc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prepare for new rules about acquisitions.” (November 15). <https://www.gov.uk/guidanc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guidance-on-acquisitions>(검색일: 2022. 2. 6).
- _____. 2021. “Overview of the Investment Security Unit factsheet.” (March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national-security-and-investment-bill-2020-factsheets/overview-of-the->

- investment-security-unit-factsheet(검색일: 2022. 2. 7).
- _____. 2021. “Guidance The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alongside regulatory requirements.” (July 2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th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alongside-regulatory-requirements/the-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alongside-regulatory-requirements>(검색일: 2022. 2. 8).
- GuideMeSingapore. “Guide to Singapore’s Global Trader Scheme.” <https://www.guidemesingapore.com/business-guides/industry-guides/trade-industry/guide-to-singapores-global-trader-scheme> (검색일: 2022. 1. 7).
- HKMC.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https://www.hkmc.com.hk/eng/our_business/sme_financing_guarantee_scheme.html(검색일: 2022. 1. 7).
- _____. “SME Financing Guarantee Scheme Factsheet(Effective date: 29 March 2021).” https://www.hkmc.com.hk/files/product_shortcut/6/74/eng/SFGS%20Factsheet%20202103_Eng_final.pdf(검색일: 2022. 1. 7).
- HKSTP. <https://www.hkstp.org/>(검색일: 2022. 1. 7).
- _____. “Ideation.” <https://www.hkstp.org/innovate-with-us/pre-incubation/ideation/>(검색일: 2022. 1. 7).
- _____. “Incubation.” <https://www.hkstp.org/innovate-with-us/incubation/>(검색일: 2022. 1. 7).
- _____. “Incubation Programme Guide.” https://www.hkstp.org/media/6093/incubation_programme_guide_20210715_ver_1_cc_jc.pdf (검색일: 2022. 1. 7).
- _____. “Leading Enterprises Acceleration Programme(LEAP).” <https://www.hkstp.org/innovate-with-us/acceleration/leading-enterprises-acceleration-programme-leap/>(검색일: 2022. 1. 7).
- HM Government. “Enterprise Zones.” <https://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검색일: 2021. 12. 31).
- HM Revenue & Customs. 2021. “Guidance Rates and allowances for Corporation Tax.” (April 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ates-and-allowances-corporation-tax/rates-and-allowances-corporation>

- tax#ring-fence-companies(검색일: 2021. 12. 27).
- _____. 2021. “Policy paper Corporation Tax charge and rates from 1 April 2022 and Small Profits Rate and Marginal Relief from 1 April 2023.” (March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charge-and-rates-from-1-april-2022-and-small-profits-rate-and-marginal-relief-from-1-april-2023/corporation-tax-charge-and-rates-from-1-april-2022-and-small-profits-rate-and-marginal-relief-from-1-april-2023>(검색일: 2021. 12. 27).
- House of Commons Library. “Government policy on freeports.”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8823/CBP-8823.pdf>(검색일: 2021. 12. 31).
- IRS. “Opportunity Zones.”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businesses/opportunity-zones>(검색일: 2022. 1. 7).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Corporate Tax Rates.” <https://www.iras.gov.sg/irashome/Quick-Links/Tax-Rates/Corporate-Tax-Rates/#title3>(검색일: 2022. 1. 7).
- _____. “Shipping Companies.”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Working-out-Corporate-Income-Taxes/Specific-industries/Shipping-Companies/>(검색일: 2022. 1. 7).
- Innovation and Technology Commission. <https://www.itf.gov.hk/en/home/index.html>(검색일: 2022. 1. 7).
- _____. “Annual Statistics of Approved Projects(2020).” <https://www.itf.gov.hk/en/itf-statistics/index-4.html>(검색일: 2022. 1. 5).
- _____.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Innovation and Technology Support Programme Guide to Filling in the Application Forms.”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26/itsp-guide-e-202102.pdf(검색일: 2022. 1. 7).
- _____. “Funding and Administrative Guidelines for Successful Applicants.”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26/itsp-success-202102.pdf(검색일: 2022. 1. 7).
-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Foreign-Trade Zones.” <https://www.trade.gov/about-ftzs>(검색일: 2022. 1. 7).

- InvestHK. “Tax Basics.” <https://www.investhk.gov.hk/en/setting-hong-kong/tax-basics.html>(검색일: 2022. 1. 5).
- ITF. “Research and Development Cash Rebate Scheme: Application Guide.”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31/Research%20and%20Development-Cash-Rebate-Scheme-e_202108.pdf (검색일: 2022. 1. 7).
- ITC.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Midstream Research Programme for Universities Guide to Filling in the Application Form.”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32/mrp-guide-e_2021_01.pdf(검색일: 2022. 1. 7).
- ITF. “Guide to Application for the Re-industrialisation Funding Scheme.”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39/rfs-guide-e_202007.pdf(검색일: 2022. 1. 7).
- _____. “Research Talent Hub for Incubatees and Innovation and Technology Tenants of the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s Corporation and the Hong Kong Cyberport Management Company Limited: Application Guide.” https://www.itf.gov.hk/filemanager/en/content_88/RTH-SPC%20Guide_en_Mar%202021.pdf(검색일: 2022. 1. 7).
- _____. “Reindustrialisation and Technology Training Programme: Guidance Note for Companies.” https://rttp.vtc.edu.hk/f/upload/54/RTTP_Guidance_Notes_for_Companies__Eng_.pdf(검색일: 2022. 1. 7).
- Loan Programs Office. “PRODUCTS & SERVICES.” <https://www.energy.gov/lpo/products-services>(검색일: 2022. 1. 7).
- _____. “LPO Title 17 Lending Reference Guide.” https://www.energy.gov/sites/default/files/2021-04/DOE-LPO_T17_Lending_Reference_Guide_April2021.pdf(검색일: 2022. 1. 7).
-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 “Maritime Sector Incentive.” <https://www.mpa.gov.sg/web/portal/home/maritime-companies/setting-up-in-singapore/programmes-to-support-your-maritime-business/maritime-sector-incentive>(검색일: 2022. 1. 7).
- _____. “Withholding Tax (WHT) Exemption.” <https://www.mpa.gov.sg/web/portal/home/maritime-companies/setting-up-in-singapore>

- /programmes-to-support-your-maritime-business/withholding-tax-exemption(검색일: 2022. 1. 7).
- _____. “Most Popular FAQs: What are the total business spending and headcount requirements under the MSI?” https://www.ifaq.gov.sg/mpa/apps/fcd_faqmain.aspx?qst=hRhkP9BzcBKnt75r%2B11bopmAANxUYJsZ1XtCavhh%2Bg8uifs%2FSSJBsKm1jG1vLMfswInxpkCTswtrGIBYmVtEm4jLUrghMnH%2B9npOF0eYH%2Bgij839pVEBnO4qR3YwcOI%2BaPS4AYd4l3%2Ffk%2FRMW8xh657KF%2FYOpWbr#FAQ_221263(검색일: 2022. 1. 7).
- Mays and Whitten. 2017. <https://www.uslegalinsightforkorea.com/wp-content/uploads/sites/249/2017/12/The-Future-of-CFIUS-Korean-translated.pdf>(검색일: 2022. 1. 7).
- Ministry of Manpower. “Renew an EntrePass.” <https://www.mom.gov.sg/passes-and-permits/entrepass/renew-a-pass#renewal-criteria>(검색일: 2022. 1. 7).
-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Financial Sector Tax Incentive Schemes.” <https://www.mas.gov.sg/schemes-and-initiatives/financial-sector-tax-incentive-schemes>(검색일: 2022. 1. 7).
-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Unsolicited Proposals.” <https://netl.doe.gov/business/unsolicited-proposals>(검색일: 2022. 1. 7).
- National Environment Agency. “Energy Efficiency Fund.” <https://www.nea.gov.sg/programmes-grants/grants-and-awards/energy-efficiency-fund>(검색일: 2022. 1. 7).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Programs: Division of Industrial Innovation and Partnerships (IIP).” <https://www.nsf.gov/funding/programs.jsp?org=IIP>(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2.” <https://www.nsf.gov/pubs/2021/nsf21562/nsf21562.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5.” <https://www.nsf.gov/pubs/2021/nsf21565/nsf21565.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3.” <https://www.nsf.gov/pubs/2021/nsf21563/nsf21563.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66.” <https://www.nsf.gov/pubs/2021/nsf21566/nsf21566.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19-506.” <https://www.nsf.gov/pubs/2019/nsf19506/nsf19506.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74.” <https://www.nsf.gov/pubs/2021/nsf21574/nsf21574.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0-570.” <https://www.nsf.gov/pubs/2020/nsf20570/nsf20570.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19-614.” <https://www.nsf.gov/pubs/2019/nsf19614/nsf19614.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21-516.” <https://www.nsf.gov/pubs/2021/nsf21516/nsf21516.pdf>(검색일: 2022. 1. 7).
- _____. “Program Solocotation NSF 18-556.” <https://www.nsf.gov/pubs/2018/nsf18556/nsf18556.pdf>(검색일: 2022. 1. 7).
- _____. “Significant Changes and Clarifications to the Proposal & Award Policies & Procedures Guide(PAPPG)(NSF 20-1).” https://www.nsf.gov/pubs/policydocs/pappg20_1/nsf20_1.pdf(검색일: 2022. 1. 7).
- NS Energy. “Hinkley Point C Nuclear Power Station.” <https://www.nsenergybusiness.com/projects/hinkley-point-c-nuclear-power-station-uk/>(검색일: 2022. 2. 8).
- SBIR·STTR. <https://www.sbir.gov/>(검색일: 2022. 1. 7).
- Scargill, Michael. 2022. “The UK’s new national security review regime goes live.” (January 5). <https://perspectives.shearman.com/post/102hfgs/the-uks-new-national-security-review-regime-goes-live>(검색일: 2022. 1. 7).
- Section 15(1)(a) and (b) of “Cap. 112 Inland Revenue Ordinance.” (amended 6 November 2021). https://www.elegislation.gov.hk/hk/cap112?xid=ID_1438402579488_001(검색일: 2022. 1. 7).
- Scottish Government. “Enterprise Areas.” <https://www.gov.scot/policies/supporting-business/enterprise-areas/>(검색일: 2021. 12. 31).
-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Pioneer Certificate Incentive and Development and Expansion Incentiv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PC%20and%20DEI%20Brochure.pdf>(검색일: 2022. 1. 7).

- _____. “IP Development Incentiv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IDI%20Circular%20\(Jan2020\).pdf](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IDI%20Circular%20(Jan2020).pdf)(검색일: 2022. 1. 7).
- _____. “Finance and Treasury Centre Incentiv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FTC%20Brochure.pdf>(검색일: 2022. 1. 7).
- _____. “Aircraft Leasing Scheme.” <https://www.edb.gov.sg/content/dam/edb-en/how-we-help/incentive-and-schemes/ALS%20Brochure.pdf>(검색일: 2022. 1. 7).
- Startup SG. “Programmes.” <https://www.startupsg.gov.sg/programmes>(검색일: 2022. 1. 7).
- Trade & Invest Wales. “ENTERPRISE ZONES.” <https://tradeandinvest.wales/business-wales/why-wales/enterprise-zones>(검색일: 2021. 12. 31).
- UK Parliament. “Freeports Volume 647: debated on Thursday 11 October 2018.”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18-10-11/debates/95BAE0F2-0F29-4F5C-8C2E-82D0D61DF65D/Freeports>(검색일: 2021. 12. 31).
- UK Research and Innovation. “Funding finder.” https://www.ukri.org/opportunity/page/3/?filter_council%5B0%5D=822&filter_funding_type%5B0%5D=18&filter_funding_type%5B1%5D=16&filter_funding_type%5B2%5D=34&filter_funding_type%5B3%5D=82&filter_status%5B0%5D=open&filter_status%5B1%5D=closed&filter_status%5B2%5D=upcoming&filter_submitted=true&filter_order=opening_date(검색일: 2021. 12. 30).
- UKRI. “Creative industries clusters.” <https://www.ukri.org/our-work/our-main-funds/industrial-strategy-challenge-fund/artificial-intelligence-and-data-economy/creative-industries-clusters/>(검색일: 2021. 12. 31).
- UNCTAD. FDI/MNE database. www.unctad.org/fdistatistics(검색일: 2022. 1. 4).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act Sheet: Proposed Regulations Modifying the Definitions of Excepted Foreign State and Excepted Real Estate Foreign State.”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Fact-Sheet-Proposed-Rule-Revising-EFS-Definitions.pdf>(검색일: 2021. 12. 22).

- _____. “CFIUS Overview.”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cfius/cfius-overview>(검색일: 2021. 12. 22).
- White & Case. 2020. “CFIUS Finalizes New FIRRMA Regulations.” (January 22). <https://www.whitecase.com/publications/alert/cfius-finalizes-new-firrma-regulations>(검색일: 2021. 12. 22).
- World Bank. 2020. “Doing business 2020: Comparing Business Regulation in 190 Economies.”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2436/9781464814402.pdf>(검색일: 2022. 1. 5).

[언론/보도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재무부, FIRRMA 이행 최종 규정 발표」.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84857>(검색일: 2022. 1. 7).
- _____. 「미국 - 국가·지역정보」,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DetailView.do?natnSn=52&commItemSn=414&area=1#area1>(검색일: 2021. 12. 22).
- _____. 2021. 「영국 창조 산업」. (6월 27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9064>(검색일: 2021. 12. 31).
- 「国家安保局に「経済班」発足・新型コロナ対応も急務」. 2020. 『日本経済新聞』. (4월 1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7510630R00C20A4PP8000/>(검색일: 2021. 12. 17).
- 「土地規制法、来年9月に区域公示・概算要求に24億円」. 2021. 『産経新聞』. (8월 25일). <https://www.sankei.com/article/20210825-EP4RCYSLGJMCDIJOEZJFO27JM/>(검색일: 2021. 12. 20).
- 「特集——与党税制改正大綱、5G整備、3年内、早期の投資促す。」. 2021. 『日本経済新聞』. (2월 11일)(검색일: 2021. 12. 16).
- 「5G投資支援、減税延長へ、政府・与党、控除率15%は縮小協議、防災・過疎地導入に補助金、利用地域拡大を後押し。」. 2021. 『日本経済新聞』. (11월 26일).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7892800V21C21A1EP0000/>(검색일: 2021. 12. 16).

“Enterprise zones ‘failed to deliver’ jobs boost in England.” 2019. *BBC*. (July 11). <https://www.bbc.com/news/uk-england-48856440>(검색일: 2021. 12. 31).

“Enterprise zones to be scrutinised after £221m investment.” 2018. *BBC*. (January 31). <https://www.bbc.com/news/uk-wales-42647801>(검색일: 2021. 12. 31).

“NI enterprise zone cost £3m and has one tenant.” 2021. *BBC*. (October 26). <https://www.bbc.com/news/uk-northern-ireland-foyle-west-59034314>(검색일: 2021. 12. 31).

[법령]

일본 「회사법(会社法)」.

일본 「조세특별조치법(租税特別措置法)」.

일본 「특정 고급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s II and V of the concurrent resolution on the budget for fiscal year 2018. Public Law 115 - 97.

FINSA. Section 1(a)(6).

Income Tax Act (Chapter 134) Income Tax (Concessionary Rate of Tax for Financial Sector Incentive Companies) Regulations 2017, No. S 239.

Income Tax Act (Chapter 134, Section 43C) Income Tax (Exemption and Concessionary Tax Rate for Income from General Insurance Business) Regulations, No. S 210/1995.

NSI Act.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EXPLANATORY NOTES: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NSI Act. S. 7.

Public Law 110-49.

Section 721 of the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31 C.F.R.§ 800.505 and § 802.505 CFIUS.

Section 6(c) of Executive Order 11858. and 31 C.F.R. § 800.508 and § 802.508 CFIUS.

The Taxpayer Certainty and Disaster Tax Relief Act of 2020, SEC. 204.

[관련자료 목록]

Barro, R. J. 1996.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Country Empirical Study.” *NBER Working Paper*, No. 5698.

Deloitte. 2021. “Global Minimum Tax: Frequently Asked Questions(FAQ).” https://www.theglobaleconomy.com/Germany/trade_openness/(검색일: 2022. 1. 17).

Changes and Implications of FDI Polici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Hyung-Gon Jeong and Ara Lee

Due to COVID-19, global FDI has decreased rapidly, and the trade environmen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s rapidly changing. Amid the decreasing inflow of FDI worldwide, the trend of corporate tax cuts continues as competition among major countr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tensifies. The global average corporate tax in 2000 was 28.3%, but fell to 20% in 2021. The OECD average fell from 32.3% in 2000 to 22.9% in 2021. Along with the trend of corporate tax cuts to attract investment, there is also a movement to set the so-called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aiming to prevent excessive corporate tax cuts. On July 1, 2021, following negotiations at the OECD, 130 countries which account for 90% of the world's GDP agreed to apply the global minimum corporate tax rate of 15% from 2023. Subject to the application are multinational companies with total annual sales of EUR 750 million or more. In recent years, active reshoring policie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nd create jobs in developed countries have made it more difficult to attract FDI to Korea.

On his fifth day in office, President Biden announced Executive Order 14005, which prioritizes the federal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nd procurement, laying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revival of U.S. manufacturing and job creation through the "Made in America" and "Buy

American” initiatives. In addition,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H.R. 3684), which legislated federal support for domest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assed both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he 117th Congress.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re pursuing active industrial policies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build their own supply chains, which are also expected to pose difficulties in attracting domestic investment. Developed countries are providing investment support for the purpose of stabilizing the supply of semiconductors and integrating into the GVCs of key material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 Innovative Competition Act (USICA), which passed the U.S. Senate, established a semiconductor support program centered on the Department of Commerce, which invests USD 52 bill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U.S. semiconductor industry.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lso decided to provide 19 billion yen (KRW 200 billion) worth of subsidies to joint R&D between Taiwan’s TSMC and Japanese companies in 2021 to enhance semiconductor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 GVC linkage.

Developed countries are active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reshape their own supply chains, and are also expanding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echnological supremacy and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Investment regulations introduced in 52 countries in 2020 increased by 43% compared to 2019, the highest level since 2003, and most of them have been introduced for national security purposes.

This report was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reorganize the domestic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changes in the global FDI environment.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policies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re being promoted more actively, and Korea lies in a disadvantageous environmen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such as withdrawing tax breaks for foreign investment. This is because foreign investment is still effective in technology transfer, technology development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presents a good opportunity and means to promote the incorporation of domestic companies into GVC.

In addi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security, technology, and intellectual rights prot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review our current foreign investment policy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advanced countries. Also, with the inauguration of a new administration in Korea in 2022,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timely reform (draft) of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support system in line with the changing FDI environ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policies for the next five years. And at the same time, the report can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on overseas investment environments to Korean companie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by dividing them into foreign investment regulatory policies to provide investment attraction incentives and those to protect high-tech sectors, and summarizes the implications for Korea's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First, in the case of Hong Kong and Singapore,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omoted to establish business hubs for specific industries while providing various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s, these policies are the best examples and are the targets we should benchmark.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systems in Hong Kong and Singapore is that among the various support systems, cash grants are very diverse. Hong Kong and Singapore operate a tax system that does not discriminat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 particular, Hong Kong exempts tax

on income from the aviation and shipping industries as a way to support business hubs. In addition, Hong Kong and Singapore have simple tax systems. In the case of Hong Kong, there are only business income tax, property tax, and salary income tax, sales tax, capital gains tax, dividend income tax, value-added tax, withholding tax, and inheritance tax. As a free trade port, Hong Kong does not impose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Hong Kong also runs a very large cash grant program. It operates a green and sustainable growth subsidy system, an 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an incentive organized by Cyberport, and a smart transportation fund, and each program operates a wide variety of systems. In Korea, although a cash grant program has been introduced, there are limitations in operation, and it is not widely used like Hong Kong and Singapore. Hong Kong's location supports companies by creating specialized complexes, Hong Kong Science & Technology Park being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Due to the nature of the city, Hong Kong cannot provide industrial complexes as locations, and mainly supports startups specialized in high-tech technologies in building locations. In addition, acceleration programs simultaneously incorporate space support programs. In the case of Korea, various incubation programs or systems are currently being created to support startups. However,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vitalize the location support system, which provides space to startups along with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s.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most representative investment incentive is the tax reduction system. Singapore's tax reduction system is widely operated. Various incentives including the general corporate tax reduction are provided to establish leading industr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at increases added value. Like Hong Kong, it operates systems such as aircraft rental and shipping incentives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 free city. This is interpreted as a system to strengthen Singapore's function as a logistics hub and further strengthen its current competitiveness.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its function as a financial hub and intermediary trade center, it operates various specialized support programs for corporat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for companies in this industry.

Singapore's cash grants are well known for their scale and anonymity. The Energy Efficiency Enhancement Fund is an official cash aid program. In addition, cash is also provided for the repair and expansion of buildings. Various types of programs are operated to support startups, and these programs are also essentially cash support programs. However, most of the cash support in Singapore is paid only if the company spends first, and is supported legally and in accordance with the support rules through evidentiary documents for subsequent expenditures. Other support programs include granting permanent residency to those who have invested in Singapore with certain conditions, and guaranteeing visas to those who have certain qualifications, so that necessary technicians and experts can work in Singapore.

As seen above, the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Hong Kong and Singapore literally institutionalized various investment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On the other hand, the U.S., Japan, and the UK are activel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industrial policy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upgrade the value chai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industries, while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protect their high-tech industries.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foreign investment concentration industries in each country,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intended to be used as a way to foster various high-tech and future industries such as AI, big data, and future mobility, along with areas that are spread by digital transformation (DX). Strategic industries to be fostered are selected and

these are intended to attract technologies and capital that the country lacks by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case of Singapore, companies wit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or start-up support programs are promoted, and the UK also implements policies to attract patent-holding companies.

Meanwhil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are using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as a policy tool to support underdeveloped regions in term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the case of the UK, enterprise zones are operated in areas such as England, Wales, and Scotland, and as of 2022, a total of 73 enterprise zones have been designated to actively attract investment in promising industries by individual region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is very active and open to foreign investment, and there are basically no restrictions on the type of investment.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operates various systems in each stat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t the state level rather than the federal govern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pushed for a pro-business policy through corporate tax cuts, which seems to have had a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tax cuts are also the most prioritized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Various cash support systems are also being used very actively for industrial innovation. Active support is provided for technology transfer to SMEs, innovation partnerships, early engineering research, and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research. Various programs to provide office locations are mainly used, such as in the special zone systems in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Free trade areas and special opportunity zones are in operation, as well as various loan programs.

In the case of Japan, polici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 are operated along with a wide variety of support policies. Foreign investment is used as a mean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to this end, the central government not only offers various subsidies but also guarantees various preferential measures specialized for foreign compan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Japan also actively uses its tax system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corporate tax is also being lowered. Various tax benefits are granted to foreign corporations. Depending on the type of corporation, corporate tax is applied differently, and it is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open innovation, local base strengthening tax system for local revitalization, R&D tax system, tax system for securing talent and expanding income of SMEs, and DX investment promotion tax system. Japan has a much more diverse and wider scope in the use of corporate tax than Korea. Japan also operates various cash grant programs. Most importantly, cash grants are used first for domestic investment to stabilize supply chains. Cash grants are also used in areas that are essential for fostering future industries, such as green innovation. Japan's location support system is also operated in the form of a special zone like the United States. These special zones are operated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a special structural reform zone, comprehensive special zone, special national strategic zone, special revival zone, and a startup eco-city hub city.

The UK is also using various method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o create jobs and expand domestic investment. First, the tax was lowered slightly, and from 2023, corporate tax will be applied in three stages. In terms of corporat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rporate tax rate benefits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reduction program. Venture capital, corporate investment, and early corporate investment are representative examples, but patent boxes are also well-known instruments, especially for corporate investments. This is a system to encourage the regis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K and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of patents, with the profits generated by these patents becoming eligible for corporate tax reduction or exemption. The

UK is also actively using cash grants for foreign investment, most of these being given to companies that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There are systems in place to support office locations in special zones, which also incorporate enterprise zones. Creative industrial clusters and free trade ports are also examples of such location support systems.

One of the notable phenomena in the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discussed above is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along with support for venture investment. The support system for angel businesses or venture investment is being strengthened so that innovative technologies and ideas can grow into industries in the country.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previous cases of advanced countries. Korea still has a low proportion of foreign investment compared to the size of its economy. ① Korea lacks exceptional incentive means to attract large-scale foreign investment, an issue which needs to be addressed. In the case of Singapore, as previously discussed, pioneer status can be granted, suggesting unconventional conditions such as tax exemption for up to 15 years. ② Another lesson that can be learned from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s that these countries are using cash grants very activel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conomic ripple effect that can be obtained from foreign investment in cash grants, and seek methods to support it accordingl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centives are comprehensively supported by evaluating the economic backwardness of the location. In our case, corporate support is uniformly divided into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but in the case of the UK,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local unemployment rate, GRDP, financial independence, industrial structure, and infrastructure a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evaluating regional economic backwardness.

③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is that

rent reduction systems are used. In the case of Japan, locational support is provided for various types of special zones, and other countries surveyed in this study also use industrial complex support systems. In our case, the rent reduction or exemption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s 1% of the land price (Article 19, Paragraph 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Investment Act),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5% rent applied to ordinary industrial complexes. In particular, only foreign investments exceeding \$1 million which involve high-tech projects are eligible for 100% rent reduction, which greatly reduces efficiency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incentives. It would be desirable to switch to a system where the reduced rent is returned in the form of reinvestment.

④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current issuance-type cash support system by introducing a loan-type cash support system and a fund-type cash support system like the UK and Japan. Since the cash support limit can be supported up to 30% of the total investment in the case of the current grant type, it is necessary to expand it to a higher 50% level for the loan type. As in the cases of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t is necessary to benchmark loan-type cash support and cash support through fund creation.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loan-type cash support system, a method of combining and operating a part of investment funds using domestic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can als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ash support.

⑤ Final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various cash support measures under names such as the Investment Effect Adjustment Fund or the “000 Adjustment Fund,” as the term “cash grant” gives the impression of giving to investors for free. Obviously, as mentioned earlier,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is is not a means of inducing preferential treatment or tax obligations because cash support is given depending on the degree of economic ripple effect. Unlike tax cuts, cash support programs are a

means of generating financial losses from the government, meaning they require delicate operation.

Another important trend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ed countries is regulation on foreign investment. Most of the sanctions on foreign investment are imposed on the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but this is to prevent the outflow of technology such as high-tech industries from the host country. To this end, various means and systems are being created to strengthen the screening function for foreign investment and to prevent investment in certain cases. The United States basically had no restrictions on foreign investment, but recently strengthened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through individual laws or state laws. The U.S.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extends to all cases in which a company has the authority to determine major matters and to cases where the U.S. party does not have corporate control in acquisition of minority shares, acquisition of foreign companies in the U.S. and joint ventures. In addition, it imposes a high level of monitoring and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investments for “all transactions related to core industries including important technologies and materials” with countries of special interest, such as China, but exempts companies that receive potential safe harbor letters.

For national security, Japan is tightening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by strengthening regulations on foreign investment in designated industries (155 companies) and lowering the standard for pre-report ownership from 10% to 1%. Japan classifies three types of licenses for foreign investors and differentiates the criteria for reporting obliga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license. Pre-reporting industries and reporting conditions are being strengthened, but reporting exemptions are also being classified into comprehensive exemption and general exemp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investor.

The UK will introduce a mandatory reporting system in 17 high-tech

industries with security risks and implement it from April 1, 2022. Acquisitions subject to report fall under the scope of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and fines if acquired without reporting, and even acquisitions not subject to report can be reviewed for up to five years after the acquisition.

Since current Korean law has a weak legal basis for screening national security risk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foreign investment screening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security. New technologies, core infrastructure,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screening targets need to be expanded from the perspective of stabilizing the supply chain, and countermeasures for pre-reporting, follow-up management, and reinvestment of private equity funds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need to be supplemented. Foreign investment in listed companies in Korea needs to be classified into companies subject to pre-examination and non-examination,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criteria for economic and industrial impact assessment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such as domestic market structure, market dominance, and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level.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submitting information and data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of foreign investment, and to strengthen functions so that an effective security examination can be conducted by enabling integrated management and ex officio investigation. In addition,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of foreign investment, preemptive responses from state-run banks and others are necessary even before problems occur, and the functions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need to be expanded and strengthened as in the case of advanced countries.

<책임>

정형곤

독일 쾰른대학교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現, E-mail: hg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공저, 2021)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공저, 2021) 외

<공동>

이아라

에든버러대학교 국제경제법 석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연구원

저서 및 논문

『2022년 세계경제전망』(공저, 2022)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 2021년
 -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택현·이현진
 -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 이재호

- 2020년
 -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Changes and Implications of FDI Policies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Hyung-Gon Jeong and Ara Lee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미국, 일본, 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유지와 함께 경제안보, GVC 관련 분야에 외국인투자 제한정책을 도입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요 선진국의 최신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내산업 보호와 GVC 재편 차원에서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